

번역자료집

입법평가 자료 07-07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성 홍 재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지원의 집행과 효과성에 관한
연방법무부의 연방정부 제출용
3차 보고서(1993-1998)

(베른, 2000년 5월)

번역 : 성홍재(경찰대학교 교수)
Sung, Hong-Jae

2007. 10. 31.

약어 표

AB	Amtliches Bulletin der Bundesversammlung
aBV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vom 29. Mai. 1874.
AHV	Alters- und Hinterlassenenversicherung
BB1	Bundesblatt
BFS	Bundesamt für Statistik
BGE	Entscheid des Schweizerischen Bundesgerichts
BJ	Bundesamt für Justiz
BStp	Bundesgesetz vom 15. Juni 1934 über die Bundesstrafrechtspflege, SR 312.0
BSV	Bundesamt für Sozialversicherung
BV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vom 18. April 1999, SR 101.
CEFOC	Centre d'études et de formation continue pour travailleurs sociaux
CETEL	Centre d'études, de technique et d'évaluation législatives der Universität Genf.
ELG	Bundesgesetz vom 19. März 1965 über Ergänzungsleistungen zur Alters-, Hinterlassenen- und Invalidenversicherung, SR 831.30
FDK	Konferenz der Schweizer Psychologinnen und Psychologen
IV	Invalienversicherung
KKJPD	Konferenz der kantonalen Justiz- und Polizeidirektorinnen und -direktoren.

MO	Bundesgesetz vom 12. April 1907 über die Militärorganisation (Miltärorganisation), SR 510.10
MStP	Militärstrafprozess vom 23. März 1979, SR 322.1
N	Nationalrat
OG	Bundesgesetz vom 16. Dezember 1943 über die Organisation der Bundesrechtspflege (Bundesrechtspflegegesetz), SR 173.110.
OHG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gtaten(Operhilfegesetz), SR 312.5
OHV	Verordnung vom 18. November 1992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Opferhileverordnung), SR 312.51.
S	Ständerat
SASSA	Schweizerische Arbeitsgemeinschaft der höheren Fachschulen für soziale Arbeit.
SKöF	Schweizerische Konferenz für öffentliche Fürsorge
SODK	Konferenz der kantonalen Sozialdirektorinnen und -direktoren
SPIN	Schweizerisches Polizei-Institut
SR	Systematische Sammlung des Bundesrechts
StGB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vom 21. Dezember 1937, SR 311.0
SuG	Bundesgesetz vom 5. Oktober 1990 über die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Subventionsgesetz), SR 616.1
SUVA	Schweizerische Unfallversicherungsanstalt
VPB	Verwaltungspraxis des Bundes

목 차

약어표	3
0. 요 약	11
1. 도 입	15
1.1. 법적 근거들	15
1.2. 1차 및 2차 보고	16
1.3. 3차 보고(최종보고)	17
1.4. 2000년 이후의 통계	17
▣ 첫째 부분 1993-1998년간 Kanton들의 세부보고서의 결과들과 기타 경험들	19
2. 피해자와 가족의 자문	19
2.1. 도 입	19
2.2. 자문 받은 사람들의 수	20
2.3. 자문의 종류	22
2.4. 자문 받은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	22
2.5. 자문 받은 사람들의 주거지	24
2.6. 범죄행위의 종류	25
2.7. 경찰과의 관계	28
2.8. 자문기구를 통한 지원활동 요청의 빈도와 범위	28
2.9. 자문기구들의 조직	29
2.10. 자문기구의 인력	32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권리	33
4. 보상과 원상회복	35
4.1. 도입	35
4.2. 신규 요청건수의 변화	35
4.3. 요청의 처리	38
4.4. 지불활동	41
4.5. 활동을 수용한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	43
4.6. 범죄행위의 종류	44
5. 연방과 Kanton의 재정활동들	45
5.1. 현황	45
5.2. 개괄: 1993-1998년간 피해자지원을 위한 연방의 증대지원과 Kanton의 지출	45
5.3. 1998년 말 증대지원 사용 현황	47
5.4. Kanton의 활동과 피해자지원의 쟁점들	49
5.5.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54
5.6. 부가적 재정지원	55
6. 부가적 경험들	57
6.1. 1997/98년 Kanton의 공표와 집행조치들	57
6.2. 1993-1998년 법률에 의한 Kanton의 경험들	59
6.3. 지역적 협력	61
6.4. 전체 스위스의 협력	62
6.5. 연방차원에서의 피해자지원	63
6.6. 국제적 측면	64
6.7. Luxor에서의 범죄행위	65

7. 판 결	71
7.1. 피해자지원법에 대한 연방법원의 공개된 판결의 변화 (1997-1999)	71
7.2. 1993-1998년 판결을 평가하기 위한 Kunz/Keller의 연구	80
8. 피해자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87
8.1. 연방법무부의 위탁으로 행해진 연구에 대한 개괄	87
8.2. 즉시지원에 대한 DAB의 연구	87
▣ 두 번째 부분 1993-1998년간 경험의 평가	95
9. 연방의 증대지원	95
9.1. 증대지원의 컨셉트	95
9.2. 자문기구들의 급속한 설치	95
9.3. 만족스럽지 못한 사회부조시스템	96
10. 자문 영역	99
10.1. 자문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증가수치	99
10.2. 자문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있어서의 일관성	99
10.3. 경찰을 통한 자문기구로의 전달	100
10.4. 자문기구의 상이한 요구사항	101
10.5. 즉시적 지원 조직	102
10.6. 자문기구들을 통한 재정지원의 의미	102
10.7. 운영시각에서의 변화	103
10.8. 비밀엄수의무	104
11.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	105

11.1. 미결사건의 증가 수치	105
11.2. 빈약한 예비비들	105
11.3. 활동수령자의 특징에 있어서의 일관성	106
11.4. 보상의 기대수치	106
11.5. 원상회복: 시스템의 회귀	107
11.6. 짧은 고소기간	108
12. 그 외 측면들	111
12.1. 재정지원의 다양한 가능성간의 불명확한 관계	111
12.2.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의 진행 과정	111
12.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112
12.4. 교통사고 피해자	112
12.5. 판례	113
13. 발전의 평가	115
13.1. 달성 목표	115
13.2. 불완전성	116
13.3. 기대하지 못한 발전	117
14. 장래 집행을 위한 결론들	119
14.1. Kanton 차원에서의 조치들	119
14.2. Kanton간 차원에서의 조치들	120
14.3. 연방차원에서의 조치들	120
▣ 셋째 부분 법률 수정	123
15. Kanton들의 시각	123

15.1. Kanton에 의한 법률개정필요에 대한 평가	123
15.2. Kanton의 가장 중요한 개정관심사	123
15.3. 재정부-, 법무부-, 경찰지휘부의 관심사	130
15.4. 1999.11.5. 국가적 피해자지원에 대한 회의	131
16. 의회의 제안	137
17. 연방법무부의 시각	141
17.1. 평가결과: 포괄적 개정	141
17.2. 개정 목표	141
17.3. 중요한 개정항목들	142
18. 진행과정	143

0. 요약

피해자지원법¹⁾은 1993.1.1.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첫 6년동안 연방은 Kanton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 증대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Kanton들은 2년마다 재정 지원에 대해 보고해야 했다. Kanton의 보고에 근거해서 연방법무부는 피해자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했다. 제출하는 3차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1997년과 1998년의 Kanton의 세부보고서에 근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전체 개괄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제시

- 지난 기간의 결과들은 증명되었다: 주로 여성과 소녀들이 피해자자문기구들에 문의한다(1997/98년 자문 받은 사람들의 76%가 여성이었다). 또한 피해자지원법의 보상시스템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
- 1993년부터 1998년동안 자문기구들에 의해 자문 받은 사람들의 43%가 성범죄의 피해자였다.
- 피해자지원을 요청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수치는 자문영역에서 경미하고(모든 자문 받은 사람의 약 7%),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자문기구들의 지원

- 신규로 자문기구의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의 수치는 1997/98년 다시금 증가했다: 1998년 11,165명이 피해자자문기구에 문의했다.

1) 범죄행위피해자지원에 대한 1991.10.4. 공포된 연방법률(피해자지원법, OHG), SR 312.5.

0. 요약

- 모든 Kanton은 적어도 하나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총 61개의 자문기구에 달한다.
- 연방법무부의 용역 연구서에서 입법자에 의해 선택된 모델, 즉 경찰이 피해자와 자문기구를 연결시켜주는 모델이 모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에 따른 자문기구들의 즉시 지원과 피해자지원, 사회보장, 민간보험과 사회지원간의 측면에서의 다른 활동들 간의 조율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과 원상회복

- 해마다 신규로 접수되는 보상과 원상회복 요청 수치는 다시금 증가했다(1998년 : 1,231건 신규 접수)
- 실무는 입법자가 규정한 시스템의 회귀로 이어졌다 : 원상회복은 점점 더 보상을 밀어내고 오늘날 통상적 국가활동을 형성하게 되었다. 원상회복의 수치가 증가하는 반면, 보상의 수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실효기간이 종료될 무렵 계류 중인 요청의 수치는 증가했다. 그 이유는 소위 수많은 피해자들이 실효기간 내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안전상 요청하기 때문이다.
- 예비비를 요구하는, 법에 규정된 가능성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 사례의 66%에서 요청은 국가활동의 집행으로 이어졌다(1998년).

재정적 영향들

- 피해자지원의 증대에 있어 Kanton들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자에 의하여 선택된 국가보조모델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 1998년 말 6개의 Kanton들은 연방에 의해 집행된 재정지원을 완전히 집행하지 못한 반면, 다른 Kanton들은 상당한 고유 수단을 피해자지원에 투자했다.

- 피해자 지원에 대한 Kanton의 전체지출은 1993년까지는 연방의 증대지원보다 적었다. 19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Kanton의 전체 지출은 연방에 의해 집행된 증대지원에 상응했다: 그 이후로 점차 증가했다.
-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피해자지원을 위한 Kanton들의 전체 지출은 72,920,000 Franken에 달했다. Kanton들에 대한 연방의 증대지원은 26,870,000 Franken에 달했다. 그럼으로써 연방은 피해자지원을 위한 지출의 36.85%, Kanton들은 63.15%을 부담했다.
- 보상을 위한 Kanton들의 지출은 1997년 이래 감소한 반면(1998년 : 1,000,000 Franken),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은 점차 급속히 증가하여 1997년 3,400,000 Franken에서 1998년 6,500,000Franken으로 증가했다.

1. 도입

1.1. 법적 근거들

1984.12.2.에 국민과 Staende에 의해 수용된 구 연방헌법 제64조^{ter}에 따르면 연방과 Kanton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범죄행위에 따라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면 적합한 보상이 이에 속한다. 그 이하에 규정된 연방헌법은 현재 유효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제124조에서 피해자 개념을 변경하였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의 헌법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에 대한 1991.10.4의 연방법률(피해자지원법, OHG, SR 312.5)은 1993.1.1.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헌법적 입법명령이 충족되었다. 지원은 3개의 축에 근거하여 자문,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 보상 및 원상회복을 포함한다. 피해자 지원법은 연방(예를 들어 형법총론의 범위내에서)과 Kanton들의 조치와 기타 규정들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한다. 헌법적 근거와 법률은 피해자지원의 연방적 집행에서 출발하고 Kanton들에게 광범위한 활동범위를 남겨둔다²⁾.

Kanton들을 통한 피해자지원증대를 장려하기 위해 연방은 Kanton들에게 1998년까지 기한이 설정된 재정지원을 보장했다. Kanton들은 지원된 재정사용에 대해 2년마다 연방정부에 보고했다(피해자지원법 제18조 제2항과 이와 연관된 형사절차의 피해자지원에 대한 1992.11.18 발효된 피해자지원명령 제11조 제21항, OHV, SR 312.51). Kanton의 보고 내용과 형식은 Eidgenoessisch 법무부서와 경찰 부서의 지시를 통해

2) BBl 1983 III 895면과 1990 II 970면 이하.

1. 도입

규정되었다. 연방법무부는 Kanton의 보고 결과를 정리해서 이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했다(피해자지원명령 제11조 제4항).

1.2. 1차 및 2차 보고

1993/94년 피해자지원을 위한 연방법무부의 1차 피해자지원보고를 1996.4.3. 연방정부가 알게 되었고 이어서 공개되었다. 1차 보고는 Kanton의 세부보고와 기타 경험보고에서 나온 결과들 외에 피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지원법 집행을 위한 연방법무부의 용역연구의 요약까지 포함하고 있다.

1998년 2차 보고는 1995년과 1996년 Kanton의 세부보고서에 근거한다. 가장 중요한 결과들은 첫 2년의 결과들과 비교된다. 보충적으로 2차 보고는 피해자지원법 3절의 효과성과 집행을 위한 외부 연구의 결과들도 알려준다(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및 권리들). 이 보고를 1998.2.25. 연방정부가 알게 되었다.

2개의 외부 연구와 2개의 보고는 연방법무부에서 찾을 수 있다³⁾. 2개의 보고는 인터넷에서도 확인된다⁴⁾.

3) 1차 보고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1993-1994년에 걸친 피해자지원의 효과성과 집행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보고서, Bern, 1996년 2월, 독일어나 프랑스어; 2차 보고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1993-1996년에 걸친 피해자지원의 효과성과 집행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보고서, Bern, 1998년 1월,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 1차 연구서: “LAVI의 적용에 관한 피해자의 관점”, Robert Roth, Yann Boggio, Christophe Kellerhals, Joelle Mathey, Marc Maugé 교수, 입법기술연구평가센터(CETEL), 제네바 법대, 1995년 8월; 2차 연구: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보호”, Robert Roth, Christophe Kellerhals, David Leroy, Joëlle Mathey 교수, 입법기술연구평가센터(CETEL), 제네바 법대; 1997년 10월. 관련주소: Bundesamt für Justiz, Abteilung Rechtsetzungsprojekte und-methodik, 3003 Bern, 전화번호 031/322 47 44, 팩스 031/322 84 01, E-mail: cornelia.perler@bj.admi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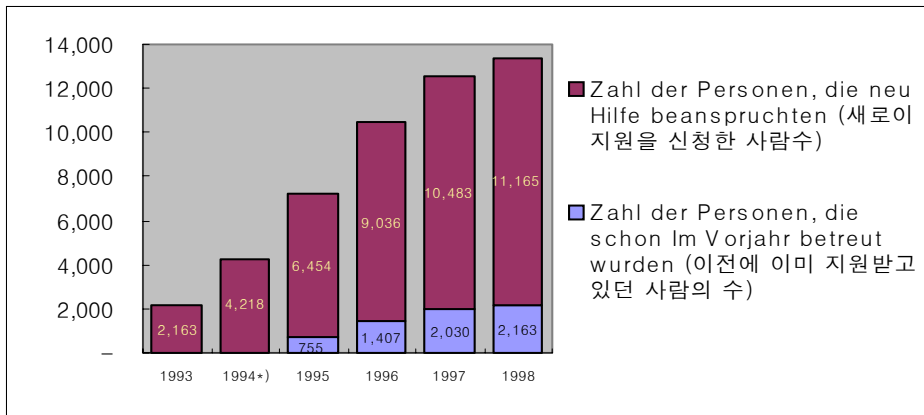
4) <http://www.ofj.admin.ch>.

1.3. 3차 보고(최종보고)

제출된 3차 보고는 마지막 피해자지원 보고이다. Kanton에 대한 증대 지원의 기간은 1998년에 종료된다. 3차 보고는 1997년과 1998년에 걸친 피해자지원 발전과 증대지원의 사용을 다루고 있고, 전체 증대시기에 있어 피해자지원법의 효과성과 집행을 검토하였다. 게다가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이 법률의 약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3차 보고는 외부 연구서에 의해 보충된다: 연방법부문의 용역으로 즉시 지원의 효과성이 조사되었고 판례가 분석되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보고서에 제시된다(7장 2절과 8장 2절). 2개의 연구서는 연방법부에서 구할 수 있다⁵⁾.

1.4. 2000년 이후의 통계

2000.1.1부터 연방통계청이 피해자지원통계를 수행한다⁶⁾. 피해자지원통계는 스위스연계기구회의(SVK-OHG)와 함께 작성되었다.



5) 연방법부, 법률집행프로젝트와 방법연구부서(Bundesamt für Justiz, Abteilung Rechtsetzungsprojekte und-methodik), 3003 Bern, 전화번호. 031/322 47 44, 팩스 031/322 84 01, E-mail: cornelia.perler@bj.admin.ch.

6) 비교. 연방통계수집실행을 위한 명령 (SR 431.012.1), 1999.6.7. 개정, AS 1999 2124.

첫째 부분 1993-1998년간 Kanton들의 세부보고서의
결과들과 기타 경험들

2. 피해자와 가족의 자문

2.1. 도입

피해자지원법 제3조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의해 신체적·성적·정신적 보존성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피해자들은 자문기구에 문의할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의 주거지 Kanton이나 다른 지역의 Kanton을 찾는 것은 자유다.

자문기구들의 과제는 피해자에게 의학적·심리학적·사회적·물질적·법률적 지원을 해 주거나 연계하는 것과 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2항). 자문기구들은 이런 지원을 즉시 행하고, 필요하다면 장기간에 걸쳐 행한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 자문기구들의 지원은 피해자지원법이 효력을 발하기 전에 범죄행위의 피해자이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피해자지원법 제12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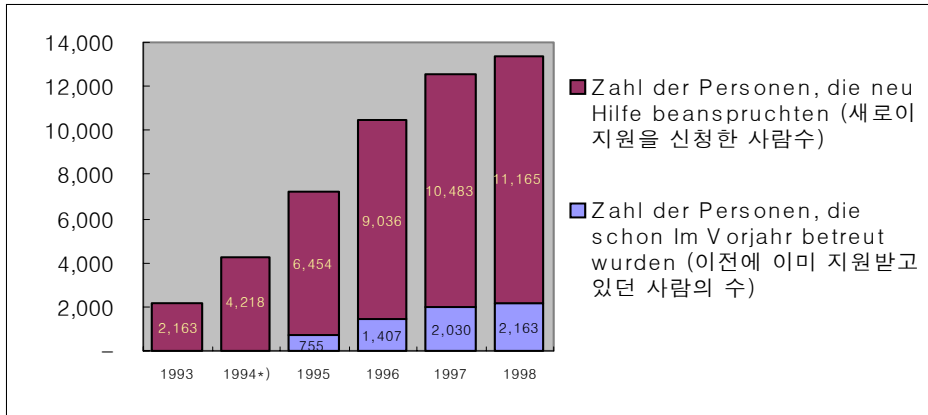
자문은 피해자와 가족(소위 간접적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열려있다. 아래 기술된 수집활동에서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간에 어떤 차이도 없었다. 52개의 자문기구들은 설문지에 답변하였다. 모든 질문들에 대해 답변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수치는 다음 절에서 분류한다. 부록에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에서 작성된 자문기구들의 최근 주소목록이 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자문

2.2. 자문 받은 사람들의 수

자문기구에서 처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점차 증가했다. 그 수치는 1997년 10,483명에서 1998년 11,165명에 달했다. 매년 초 아직 종결되지 않은 자문들까지 고려한다면, 1997년에는 12,513명, 1998년에는 14,401명이 자문을 받아야 했다*).

그림 2A 1993-1998년간 자문기구를 통한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의 수



*) 이 수치에 자문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1994년에는 조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질문이 임의적이었고 모든 자문기구들에 의해 답변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광범위한 Kanton의 차이점과 유동성이 확인될 수 있다. 취리히(Zuerich), 베른(Bern), 제네바(Genf) Kanton들은 1997/98년 보고기간 동안 신규 자문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취리히(ZH): 1997년 3,337명, 1998년 3,323명, 베른(BE): 1997년 2,432명, 1998년 2,367명, 제네바(GE): 1997년 801명, 1998년 922명); 2년간 신규 자문의 가장 작은 수치는 니

7) 이 숫자는 실제로는 더 높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양한 Kanton들에서, 특히 프라이부르크(Freiburg) Kanton에서는 45분 이상의 전화통화만을 산입했기 때문이다.

드발덴(Nidwalden), 오프발덴(Obwalden) 그리고 우리(Uri) Kanton들이다(니드발덴(NW): 1997년 2명, 1998년 7명; 오프발덴(OW): 1997년 8명, 1998년 4명; 우리(UR): 1997년 11명, 1998년 13명). 처음으로 자문기구의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의 수치는 취리히(Zuerich), 우리(Uri), 샤프하우젠(Schaffhausen), 그라우뷘덴(Graubunden), 투르가우(Thurgau), 테신(Tessin) Kanton들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루체른(Luzern), 슈비츠(Schwyz), 니드발덴(Nidwalden), 글라루스(Glarus), 프라이부르크(Freiburg), 졸로투른(Solothurn), 바젤-시골과 바젤-도시(Basel-Landschaft/Basel-Stadt), 성 갈렌/아펜젤 인너호덴과 아웃서호덴(St. Gallen/Appenzell Inner- und ausserhoden), 아르가우(Aargau), 바아트(Waadt), 발리스(Wallis), 노이엔부르크(Neuenburg), 제네바(Genf), 유라(Jura) Kanton들에서 그 수치는 1998년에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베른(Bern), 오프발덴(Obwalden), 쾅(Zug) Kanton들에서는 감소했다. 취리히(Zuerich), 제네바(Genf), 베른(Bern) Kanton들이 1998년 모든 신규 자문들의 약 60%를 차지했다.

거주자와 관련하여 신규 자문들의 수치를 본다면⁸⁾, 1998년 취리히(Zuerich)와 샤프하우젠(Schaffhausen) Kanton들이(거주자 10,000명당 28.1건 내지 28건 자문) 1위이고, 뒤이어 베른(Bern, 25.2건), 제네바(Genf, 23.2건), 루체른(Luzern, 19건) 그리고 바젤(Basel, 18.5건) Kanton들이 따른다. 다른 Kanton들은 15.7건 자문에 해당하는 전체 스위스 수준 이하에 있다(노이엔부르크(NE): 15.4; VS: 10.7; 프라이부르크(FR): 10; 아르가우(AR)/아펜젤 인너호덴(AI)/SG: 10; 쾅(ZG): 9.1; 글라루스(GL): 8.8; VD: 8.4; 졸로투른(SO): 7.2; 그라우뷘덴(GR): 6.6; 유라(JU): 5.5; 테신(TI): 5.3; AG: 4.7; 슈비츠(SZ): 4.5; 투르가우(TG): 4.4; 우리(UR): 3.6; 니트발덴(NW): 1.9; 오프발덴(OW): 1.3). 단지 오프발덴(Obwalden)과 니트발덴(Nidwalden), 2개의 Kanton들만이 거주자 10,000명당 3건의 자문보다 더 적게 활동했다. 1996년처럼 거의 비슷한 거주자를 가지고 있는

8) 1997.12.31.의 평균 거주인구, 출처: BFS.

2. 피해자와 가족의 자문

Kanton들이 매우 상이한 수치의 자문을 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제네바(Genf, 396,659명: 23.2)와 루체른(Luzern, 342,916명: 1.9) Kanton들에 유효하고, 테신(Tessin, 305,588명: 5.3), 유라(Jura, 68,964명: 5.5.), 쾅(Zug, 95,098명: 9.1) Kanton들과 비교되었고, 샤프하우젠(Schaffhausen, 73,741명: 28) Kanton과 비교되었다.

2.3. 자문의 종류

대개 자문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문기구들이 주로 피해자와 문서로 접촉하는 옵발덴(Obwalden)과 니트발덴(Nidwalden) Kanton들에서는 예외가 존재한다. 전화상담(자문)은 상대적으로 빈번했고, 그러면서 자문기구들사이에 비교적 더 큰 유동성이 존재한다. 어떤 자문기구들은 예를 들어 ‘주어진 손’처럼 그들의 지원을 주로 또는 절대적으로 전화상으로만 활동한다⁹⁾.

단지 한 번만 자문기구에 문의한 사람들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동일 Kanton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1997/98년에 취리히(Zuerich) Kanton에서 슬루프후우스 연합(“Verein Schlupfhuus”)라는 자문기구에 문의했던 사람들의 75%는 한 번만의 접촉이 있었다, 반면 동일 Kanton의 어린이를 위한 자문기구(“어린이보호를 위한 전문기구”)에 동일 기간에 한 번만 접촉을 한 사람들의 비율은 단지 5%에 불과했다.

2.4. 자문 받은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

위원회를 찾는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관계는 해를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자문기구에 문의했던 사람들의 약 75%는 여성(1995년: 78%; 1996년: 76%; 1997년: 76%, 1998년: 75.5%)이었고, 약

9) 취리히(Zuerich) Kanton에서 ‘주어진 손’은 전화상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인적 자문을 실행하는 피해자 자문기구이다.

2.4. 자문 받은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

20%는 남성(1995년: 18%; 1996년: 21.5%; 1997년: 21.5%; 1998년: 22.5%)이었다. 사례의 2 내지 4%는 성별이 수집되지 않았다.

그림 2B 1997/98년 남성과 여성의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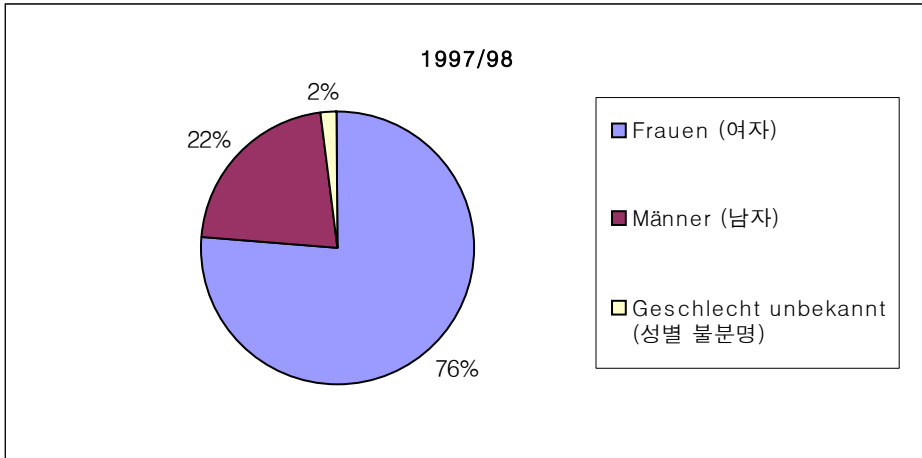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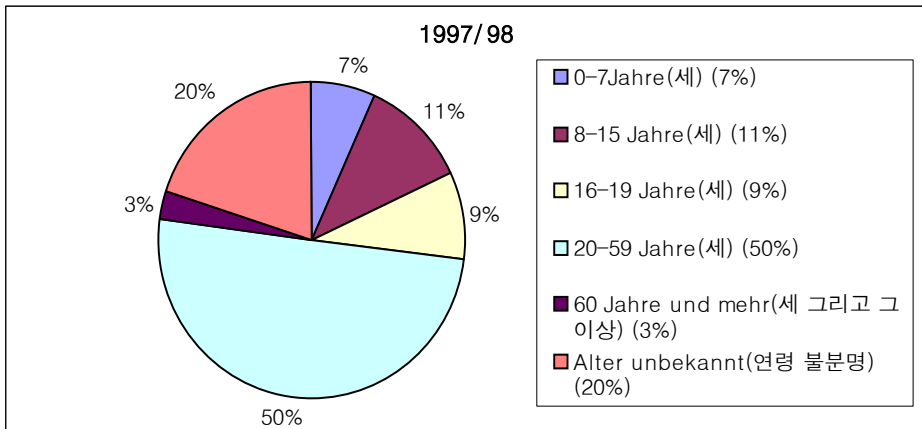


그림 2C 1997/98년 연령대에 따른 분포 비율



1995/96년처럼 1997/98년에도 60대 이상의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약 3%). 지금까지처럼 자문 받은 사람들의 1/5 이상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젊은 성인들(16-19세)의 비율

2. 피해자와 가족의 자문

은 약 10%보다 적은, 즉 9%에 달했다(1995/96년: 11%).

그림 2D 1997/98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자문 받은 사람들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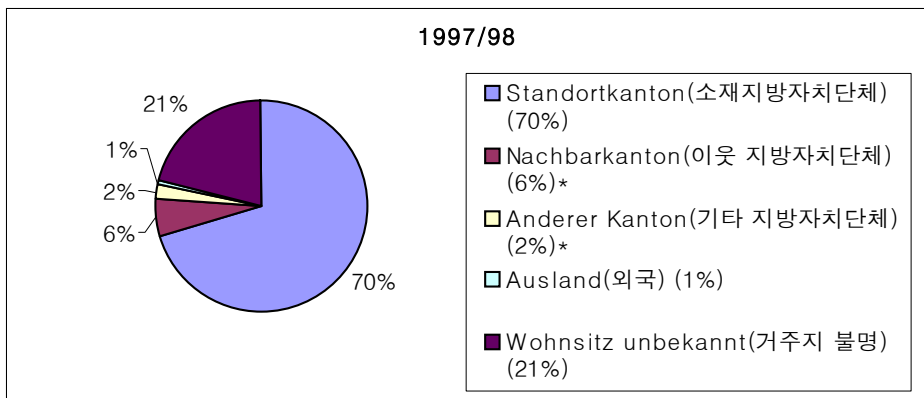
	1997				1998				총계
	여성	남성	성별불상	총계	여성	남성	성별불상	총계	
0-7세	494	244	7	745	463	267	7	737	1,482
8-15세	920	366	13	1,299	830	342	12	1,184	2,483
16-19세	803	174	16	993	793	170	15	978	1,971
20-59세	3,987	1,000	50	5,037	4,544	1,096	61	5,701	10,738
60세 이상	224	88	1	313	259	111	2	372	685
연령 불상	1,711	404	180	2,295	1,513	529	119	2,161	4,456
총계	8,139	2,276	267	10,682	8,402	2,515	216	11,133	21,815

16-19세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명백하게 훨씬 더 많다

2.5. 자문 받은 사람들의 주거지

새로이 자문 받은 사람들의 주거지에 대한 제시가 처음으로 1997/98년 보고기간에 다루어졌다. 그러나 위 경우의 약 20% 정도는 주거지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했다.

그림 2E 1997/98년 주거지에 따른 자문 받은 사람들의 분포 비율



아르가우(Aargau) Kanton은 이웃 Kanton의 피해자들과 다른 Kanton의 피해자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모두는 ‘이웃 Kanton’라는 그룹에 귀속되었다.

우리(Uri), 옵발덴(Obwalden), 글라루스(Glarus), 프라이부르크(Freiburg), 졸로투른(Solothurn), 바젤-도시/바젤-시골(Basel-Stadt/Basel-Landschaft), 성갈렌/아펜젤 내외호덴(St. Gallen/Appenzell Inner- und Ausserrhoden), 테신(Tessin), 마트(Waadt), 발리스(Wallis), 노이엔부르크(Neuenburg), 제네바(Genf), 유라(Jura) Kanton에서 해당 Kanton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문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1998년에 약 90%였거나 그 이상이었다. 8개의 기타 Kanton들에서는 Kanton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문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67~85%였다(베른(BE): 79%, 니트발덴(NW): 71%, 쾅(ZG): 84%, 샤프하우젠(SH): 67%, 그라우빈덴(GR): 85%, 투르가우(TG): 83%, AG: 86%).

Kanton 밖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문을 구한 사람들의 비율은 샤프하우젠(Schaffhausen) Kanton에서 특히 높았는데, 약 1/3이상이었다. 이때 대개는 이웃 Kanton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취리히, 루체른, 슈비츠 Kanton에서 주거지는 대부분 수집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 Kanton에서의 분포 비율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2.6. 범죄행위의 종류

자문기구들은 1997년 10,652명, 1998년 11,268명을 대상으로 범죄행위의 종류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나 자문기구들은 항상 주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중복계산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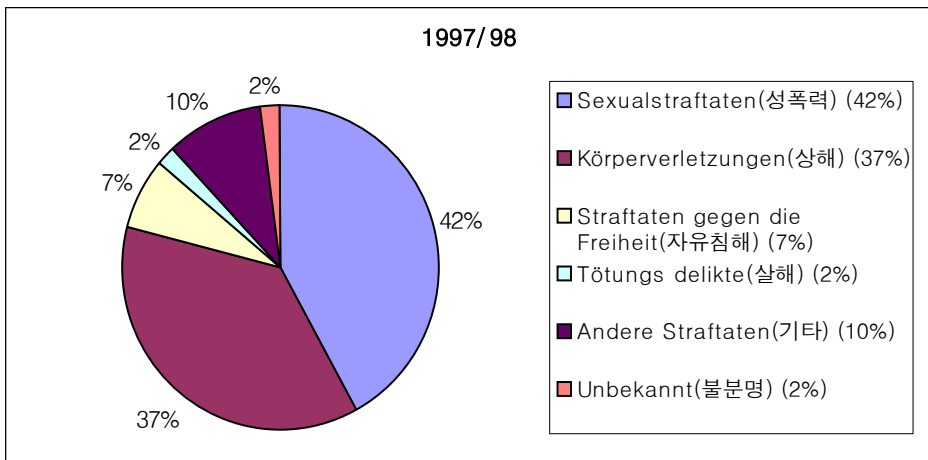
2. 피해자와 가족의 자문

그림 2F 1993-1998년 범죄행위에 따라 자문 받은 사람들의 수

자문 받은 사람들의 수							범죄행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64 3.4%	110 2.6%	158 2.6%	239 3.0%	228 2.1%	313 2.8%	살인죄	
731 39.1%	1,604 37.7%	1,921 32.3%	2,582 32.8%	3,863 36.3%	4,111 36.5%	상해죄	
994 53.1%	1,629 38.2%	2,807 47.2%	3,493 44.4%	4,434 41.6%	4,560 40.6%	성범죄	
83 4.4%	664 15.6%	353 6.0%	431 5.5%	709 6.7%	861 7.6%	자유침해에 대한 범죄	
0	251 5.9%					다른 범죄행위*	
		117 2.0%	161 2.1%	247 2.3%	294 2.6%	- 재산범죄	
		22 0.4%	41 0.5%	3 0%	3 0%	- 인간질병의 유포	
		359 6.0%	562 7.2%	849 8.0%	905 8.0%	- 다양한 범죄	
		207 3.5%	354 4.5%	319 3.0%	221 2.0%	- 불상	
1,872 100%	4,258 100%	5,944 100%	7,863 100%	10,652 100%	11,268 100%	총계	

* “다른 범죄 행위”라는 징표는 1993/94년 보고기간에는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재산범죄들은 신체적·성적·정신적 보존성을 침해하는 한 단지 피해자지원법물에 상응한다.

그림 2G 1997/98



1995/96년 보고기간처럼 1997/98년에 자문기구를 방문한 자들의 약 40%이상은 성범죄의 피해자였다.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자문이었다.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 자문기구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3/4이상이 성범죄나 상해죄의 피해자였다.

교통사고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1998년에는 상해죄나 살인죄와 관련하여 4,424명이 자문받았다, 그 중에서 559명이 교통사고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였다(1997년: 4,091명 중 637명).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상해죄나 살인죄와 관련하여 자문 받은 사람들의 약 1/5이 교통사고피해자이거나 유가족이었다. 상해죄나 살인죄의 수와 관련하여 교통사고피해자의 수는 1998년 슈비츠(Schwyz)(48.8%), 루체른(Luzern)(32.9%), 성 갈렌/아펜젤 내외 호텐(St. Gallen/Appenzell Inner- und Ausserrhoden)(29%), 바젤-도시/바젤-시골(Basel-Stadt/Basel-Landschaft)(26.4%) Kanton에서 특히 높았다. 샤프하우젠(Schaffhausen)(2%), 테신(Tessin)(5.6%), 노이엔부르크(Neuenburg)(7.9%), 유라(Jura)(0%) Kanton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거의 없었다. 우리(Uri), 옘발덴(Obwalden), 니트발덴(Nidwalden) Kanton에서는 살인죄나 상해죄의 피해자의 수가 경미하여 분포비율을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우리(UR): 4명중 1명, 옘발덴(OW): 1명중 1명, 니트발덴(NW): 5명중 3명).

1997/98년 보고시기에 상해죄와 관련하여 자문 받은 사람들 중 35%는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범죄에 해당했다. 살인죄와 관련하여 자문 받은 사람들 중 16%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가족이었다. 교통사고피해자(상해죄와 살인죄)의 숫자를 자문 받은 사람들의 전체 숫자와 관련하여 비교한다면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1998년 모든 자문 받은 사람들의 7.2%가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했다(1997년: 6%; 1996년: 8.3; 1995년: 6.6%).

2.7. 경찰과의 관계

1998년 3,359건의 자문에서 예비조사나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1997년: 3,032건; 1996년: 2,365건; 1995년: 1,641건). 1997년과 1998년을 거쳐 자문기구를 방문한 사람들의 29%가 예비조사나 형사절차에 연루되었다. 1995/96년의 보고기간에 그 비율은 25%에 달했다.

경찰의 과제는 첫 심문에서 피해자들에게 자문기구에 대해 알려주고(피해자지원법 6조 1항), 자문기구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피해자지원법 제6조 제2항).

설문지를 모두 채운 52개의 자문기구 중 48개의 자문기구들은 경찰의 피해자안내가 얼마나 빈번하게 피해자의 자문으로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다. 자문기구의 절반(24개)이 경찰의 이름제공에 근거하여 빈번하게(사건의 51-90%) 자문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타 7개의 자문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경찰의 안내가 심지어 항상(사건의 90% 이상) 자문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16개의 중심 자문기구들은 경찰을 통한 이름 안내는 드물게 자문으로 이어진다(10-50%)는 입장이다. 기타 2개의 자문기구는 경찰의 안내가 거의 자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10% 이하)는 입장이다.

동일 Kanton내에서 자문기구별로 입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Kanton 간 비교는 어렵다.

2.8. 자문기구를 통한 지원활동 요청의 빈도와 범위

52개의 자문기구들이 다양한 지원활동의 빈도와 관련하여 설문에 답했다. 대부분의 자문기구들(44개)은 일반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사람

들에게 거의 항상, 일부 자문기구들(7개)은 종종 일반적인 종류로, 1개의 자문기구는 드물게 피해자지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자문기구들은 빈번하게 또는 거의 항상 법적 지원(법률자문)을 영위했고 빈번하게 또는 거의 항상 사회적·심리적 배려를 해줬다. 그와 반대로 법적 대리 또는 심리치료적 행위는 단지 자문기구의 절반(26개)에 의해서만 빈번하게 또는 거의 항상 행해졌다. 의술적·의학적 지원은 거의 의미가 없다. 자문기구의 다수(30개)는 이런 지원을 드물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질적 지원과 관련하여 자문기구의 다수(31개)는 즉각적 지원을 재정적으로는 드물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장기간에 걸친 재정적 지원은 40개의 자문기구들 중에서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6개의 자문기구들은 빈번하게 또는 거의 항상 위에 언급한 지원활동과는 다른 활동을 했다고 밝힌다(예를 들어 보호조치, 숙소 제공, 전달/낮선 장소로의 이동, *“Debriefing”*, 전화상 1차 상담, 피해자지원법 외의 기타 배려).

통상 자문기구들은 피해자지원에 일반적으로 알려줬다. 또한 법적 지원, 사회적·심리적 배려는 대다수의 자문기구에 의해 빈번하게 또는 거의 항상 수행되었다. 법적 대리, 심리치료, 의학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은 통상 제3자에 의해 보장되었다.

2.9. 자문기구들의 조직

아래의 변화는 1997/98년의 보고기간에 언급되었다:

1997.7.1.이후 바젤(Basel)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자문기구가 구성되었다. 이 기구는 2개의 바젤(Basel) 정부의 위탁에 의해 3자 연합(Triangel Verein)이 지휘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자문

그라우빈덴(Graubunden) Kanton은 1997년 자문기구 망을 9개에서 2개로 집중시켰다. 2개의 자문기구는 행정적으로는 지역적 사회업무에 연계되어 있으나, 전문적으로는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998.2.1. 이후 노이엔부르크(Neuenburg) Kanton에서는 자문기구의 과제가 더 이상 “청소년과 후견인을 위한 부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립된 자문기구에 의해서 대변된다. 그래서 노이엔부르크(Neuenburg)와 La Chaux-de-Fonds Kanton에서 각각 하나의 사무실이 설치되었다.

자문기구들은 다음과 같이 Kanton별로 구분된다¹⁰⁾:

13개의 Kanton에는 1개의 자문기구가 존재한다(우리(UR), 읍발덴(OW), 니트발덴(NW), 글라루스(GL), 졸로투른(SO), 아르가우(AR), 아펜젤 인너호덴(AI), 성 갈렌(SG), AG, 투르가우(TG), VD, 노이엔부르크(NE), 제네바(GE)); 2개의 Kanton에는 2개의 자문기구들이 존재한다(그라우빈덴(GR), 슈비츠(SZ)). 8개의 Kanton에는 3개의 자문기구들이 존재한다(루체른(LU), 쪽(ZG), 프라이부르크(FR), 바젤-도시(BS), 바젤-시골(BL), 샤프하우젠(SH), VS, 유라(JU)). 테신(Tessin) Kanton에는 4개, 베른(Bern) Kanton에는 6개, 취리히(Zuerich) Kanton에는 10개의 자문기구들이 설치되었다.

일부 자문기구들은 특정 피해자들을 전문화했다. 특정 피해자들의 숫자는 21명(1996년말)에서 26명으로 증대했고, 8개의 Kanton으로 나뉘어졌다(취리히(ZH), 베른(BE), 루체른(LU), 쪽(ZG), 프라이부르크(FR), 바젤-도시(BS), 바젤-시골(BL), 샤프하우젠(SH)). 여성과 소녀를 위한 특별기구, 남성과 소년을 위한 특별기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특별기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기구, 교통사고피해자를 위한 특별기구가 있다.

10) 여러 Kanton(바젤-도시(BS), 바젤-시골(BL) 내지 아르가우(AR), AI, SG)들에 의해 공통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들은 각각의 자문기구로서 유효하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자문기구들은 해당 Kanton의 자문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2000년 초기에 어린이를 위한 자문기구처럼 여성과 소녀를 위한 12개의 자문기구들이 있었다(취리히(ZH), 베른(BE), 루체른(LU), 바젤-도시(BS), 바젤-시골(BL), 샤프하우젠(SH), 프라이부르크(FR) Kanton; 이 중 4개의 Kanton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자문기구(취리히(ZH), 베른(BE) Kanton)). 성폭력 피해자로서 여성이나 아동을 위한 자문기구는 하나인데, 쾅(ZG) Kanton에서 설치되었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자문기구는 9개(취리히(ZH), 루체른(LU), 쾅(ZG), 프라이부르크(FR), 바젤-도시(BS), 바젤-시골(BL), 샤프하우젠(SH) Kanton), 이 중 2개(취리히(ZH), 루체른(LU) Kanton)는 성적 학대의 피해자를 위한 자문기구이다. 1개의 자문기구는 남성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고(샤프하우젠(SH) Kanton)이고, 또 다른 하나의 자문기구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남성, 청소년, 소년을 위해 특정되어 있다(취리히(ZH) Kanton).

하나의 자문기구는 남성과 교통사고 피해자(프라이부르크(FR) Kanton), 또 다른 하나의 자문기구는 단지 교통사고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취리히(ZH) Kanton). 미성년자를 위한 자문기구(취리히(ZH) Kanton)처럼 성폭력 피해자로서 여성 또는 소녀를 위한 자문기구(베른(BE) Kanton)는 전문가층이나 관계인들을 지향한다고 그들의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언급한다.

자문의 영역에서 기타 조직적 변화:

쾅(Zug) Kanton에서 1998.1.1에 “주어진 손”과 함께 “쾅(Zug) Kanton에서 피해자 지원 집행을 위한 피켓업무와 1차 자문에 해당하는 합의”가 체결되었다. 그럼으로써 이미 즉각적 출동권한이 있는 Kanton 경찰과 Kanton 병원 외에 부가적 피켓업무가 근무시간외에, 특히 주말에도 제공될 수 있다.

그라우빈덴(Graubunden) Kanton에서는 1998년 피해자지원전화번호에 대한 24시간 피켓 업무를 도입했고, 이에 따르면 단지 경미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1999년 말로 예상되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자문

발리스(Wallis) Kanton에서는 “Kanton내의 LAVI 위원회”와 “발레 지역 내의 일반 가정 중개위원회(1997년)” 및 “Kanton내 청소년 지원부서(1998년)”사이에서 협력을 위한 합의가 체결되었다.

바젤-시골(Basel-Landschaft), 바젤-도시(Basel-Stadt) Kanton에서는 원래 기한이 정해져 있던 상호 협력에 대한 협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왜냐하면 위 2개 Kanton의 협력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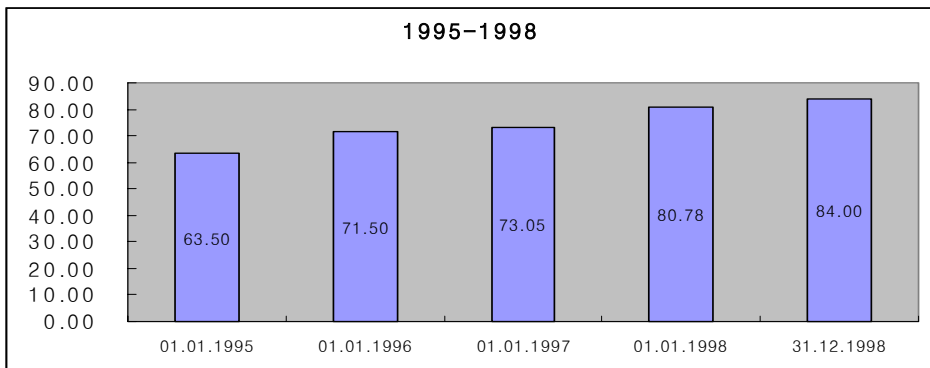
샤프하우젠(Schaffhausen) Kanton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그룹을 2년간의 연습기간 이후 무기한으로 운영한다.

2.10. 자문기구의 인력

몇몇 Kanton에서 자문기구들의 인력은 증대(바젤-시골(BL), 아르가우(AR), 아펜젤 인너호덴(AI), 성 갈렌(SG), 그라우뷘덴(GR) Kanton)되거나 지금까지의 “임시 지원”에서 정상적 예산으로 전환되었다(베른(BE) Kanton).

Kanton(샤프하우젠(SH) 제외)들의 입장에 따르면 1998년 말 6개의 Kanton(우리(UR), SZ, 옘발덴(OW), 니트발덴(NW), 글라루스(GL), 졸로투른(SO))에서 피해자자문이 100% 이하로 이용되었다. 취리히(Zuerich)와 베른(Bern) (21.3% 내지 15.95%) Kanton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림 2H 자리수의 발전(100% 자리 내)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권리

1997년 연방법무부의 위탁에 따른 제네바법대의 입법연구평가센터인 CETEL이 형사절차로의 피해자지원법률규정의 효과성과 집행성에 대해 조사했다¹¹⁾. 이 연구에 따르면 재판변론에 의해 공개가 충분한 정도로 배제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설명요구가 필요하다. 피해자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우세한 이익이 필요하다면, 법원은 변론에 의한 공개를 배제한다; 성범죄행위에 있어서 공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제된다. 이 연구는 단지 4개 Kanton의 상황만을 파악했기 때문에 연방법무부는 1998년 피해자지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Kanton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중심주제는 언론의 위치였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다:

1. 어떤 Kanton도 변론절차에 언론의 접근을 항상 허용하지 않는다.
2. 그럼으로써 어떤 Kanton도 두 번째 피해자지원보고서에서 표현된 연방의 위법적 실무를 제시하지 않는다. 특히 테신(Tessin)과 노이엔부르크(Neuenburg) Kanton에서 법정 변론절차에 대해 언론의 접근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 그 외에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3. 피해자지원법 제5조 제3항의 영향력은 불명확하다: Kanton의 법원들은 입법자들의 의사에 따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송법상 최소한의 보장을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지원법 제5조 제3항을 상이하게 사용했다. 특히 불명확한 것은 개별 사안들에 있어서 언론접근이 특정 조건하에서 허용되고 그 외의 공개는 법정

11) 비교. 앞부분 1.1 참조. 결과요약본은 2차 피해자지원보고의 13장에서 찾을 수 있다.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변론절차에 의해 배제되는가가 피해자지원법 제5조 제3항과 일치하는가이다.

“피해자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대한 Kanton의 실무”라는 제목을 가진 결과의 요약은 연방법무부에서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로 제공된다¹²⁾.

12) 연방법무부, 법률집행프로젝트 및 방법 연구부서(Bundesamt für Justiz, Abteilung Rechtsetzungsprojekte und -methodik), 3003 베른, 전화. 031/322 47 44, 팩스. 031/322 84 01, 메일: cornelia.perler@bj.admin.ch.

4. 보상과 원상회복

4.1. 도입

피해자지원법 제4절(보상과 원상회복)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고, 피해가 심각하거나 특별한 주변 상황이 정당화한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상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수입에 따르는 반면, 원상회복은 수입과 무관하다. Kanton에서는 단순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요청의 총체적 검사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예비비가 보장될 수 있다.

거의 모든 Kanton에서는 요청 처리를 사회부처 또는 법률부처의 행정부서에 이양했다. 제네바(Genf)는 행정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했다. 3개의 Kantone(투르가우(TG), VS, 유라(JU))에서는 법원의 과제를 대변했다. 연방법무부는 고객명단을 작성했다¹³⁾.

4.2. 신규 요청건수의 변화

신규 요청건수는 해마다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수치는 1993년 113건의 새로운 요청에서 1994년 310건, 1995년 470건, 1996년 661건, 1997년 820건, 1998년 1,231건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1998년에는 신규 요청이 1993년에 비해 10배 이상 접수되었다. 1994년 이래 신규 요청건수는 실제로 2년마다 2배로 증가했다.

13) Kanton들의 보상부서의 주소. 관련주소: 연방법무부, 법률집행프로젝트와 방법 연구부서의 비서실, 3003 베른, 전화. 031/322 47 44, 팩스. 031/322 84 01, 메일: cornelia.perler@bj.admin.ch.

4. 보상과 원상회복

그림 4A 1993-1998년간 신규 보상/원상회복의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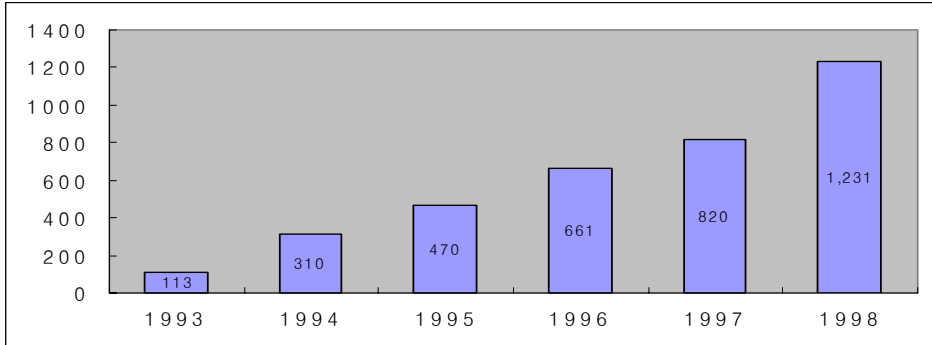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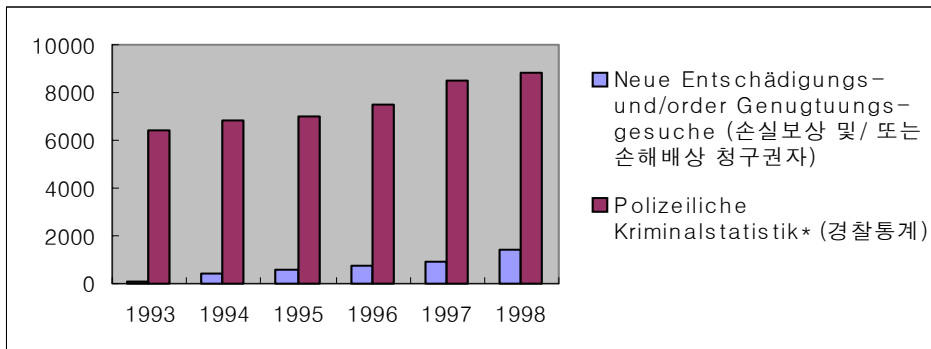


그림 4B 1993-1998년간 신규 요청과 경찰의 범죄통계의 발전



* 생명과 신체 및 성적 보존성에 대한 범죄행위에 근거한 고소의 수치

경찰의 범죄통계¹⁴⁾는 피해자지원법의 의미에서의 피해자가 1998년 최소한 10,632명¹⁵⁾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보상 내지 원상회복을 새

14) 경찰의 범죄통계는 스위스 형법에 따라 선택된 범죄영역에서 1년동안 제기된 전체 고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방경찰청에서 출판된다. 통계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에서 피해자 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살인, 상해, 배인,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협박(폭탄을 통한 협박 포함), 강요, 체포감금과 약취유인, 인질범죄, 강간, 성적 보존성에 대한 다른 범죄행위, 방화, 관공서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협박, 자금 세탁, 재정사업에 있어서의 부주의.

15) 살인, 상해, 공갈, 강요, 체포감금, 유괴, 인질, 강간과 성적 보존성에 대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 간접적 피해자, 고소되지 않는 범죄의 피해자, 과실치사의 피해자들(경찰통계에서 파악되지 않음)은 이때 고려되지 않았다.

로이 요청한 숫자는 같은 기간에 단지 1,231건에 불과했다.

1997/98년 보고기간에 신규 요청의 1/3이상이 취리히(Zuerich) Kanton에서 나왔다. 취리히(Zuerich, 663), 베른(Bern, 267), 제네바(Genf, 212) 등 3개의 Kanton에서 1997년과 1998년에 이전의 보고기간처럼 가장 많은 신규 요청이 있었다. 1997/98년 보고기간에 접수된 요청의 56%가 위 Kanton에서 나왔다(1995/96년 보고기간: 58%). 8개의 Kanton(우리(UR), 읍발덴(OW), 니트발덴(NW), 글라루스(GL), 쪽(ZG), 샤프하우젠(SH), 아르가우(AR), 아펜젤 인너호덴(AI))에서 1997/98년 보고기간에 해마다 10건보다 적은 신규 요청이 있었다. 2개의 Kanton(읍발덴(OW), 아펜젤 인너호덴(AI))에서는 1995/96년 보고기간동안 어떤 신규 요청도 없었다. 읍발덴(OW) Kanton에서는 1995-1998년 사이에 단 1건의 요청도 없었다.

상시 거주인구¹⁶⁾와 관련하여 신규로 접수된 요청의 수치를 본다면,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거주자 인구 10,000명당 1.4건의 보상과 원상회복 요청의 절반을 차지한다. 게다가 1995/96년 보고기간처럼 Kanton 별로 유사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높은 또는 스위스의 평균에 해당하는 거주자 인구 10,000명당 신규 요청의 수치를 5개의 Kanton(취리히(ZH): 2.8; 제네바(GE): 2.7; 바젤-도시(BS): 2.5; 베른(BE): 1.4; 갈렌(SG): 1.4)가 보여준다. 7개의 Kanton들에서 거주자 인구 10,000명당 신규 요청의 수치는 스위스 평균보다 적다, 그러나 적어도 1건보다는 많다(루체른(LU): 1.3; 프라이부르크(FR): 1.3; 바젤-시골(BL): 1.2; 글라루스(GR): 1.2; 우리(UR): 1; 슈비츠(SZ): 1; VD: 1). 그 외 Kanton에서는 거주인구 10,000명당 1건의 요청보다 더 적었다(졸로투른(SO): 0.9; 유라(JU): 0.9; 샤프하우젠(SH): 0.8; AG: 0.8; 아르가우(AR): 0.6; 쪽(ZG): 0.6; 노이엔부르크(NE): 0.6; 니트발덴(NW): 0.5; 투르가우(TG): 0.5; VS: 0.5; 글라루스(GL): 0.4; 테신(TI): 0.4; 읍발덴(OW): 0; 아펜젤 인너호덴(AI): 0).

16) 1997.12.31 평균 거주인구, 출처: BFS.

4. 보상과 원상회복

4.3. 요청의 처리

그림 4C 1차·2차·3차 보고기간 말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요청과
종결된 요청의 수치

	1993/94	1995/96	1997/98
보고기간 중 신규로 접수된 요청의 수치	423	1,131	2,051
보고기간 중 종결된 요청의 수치			
- 그 중 동의한 결정	125	458	835
- 그 중 배제된 결정	76	132	251
- 그 중 다른 방법으로 종결된 결정	14	113	109
총계:	215	703	1,195
보고기간 말에도 종결되지 않은 요청의 수치	208	605 ¹⁷⁾	1,436

연말에 종결되지 않은 각각의 요청의 수치는 1993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1993년말 54회에서 1994년말 208회, 1995년말 356회에서 1996년말 605회, 1997년말 969회에서 1998년말 1,436회). 또한 종결된 요청의 수치가 증가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종결되어야 하는 요청의 수치에 도달할 것이다. 1995년 이래 신규로 접수된 요청의 수치는 해마다 종결되었던 요청의 수치를 능가한다. 때문에 1997년과 1998년 말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요청의 수치가 동일 기간에 종결된 수치를 명확하게 능가한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단지 5개의 Kanton에서 1998년 연말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요청의 수치보다 더 많은 요청이 종결되었다(쾨른(ZG), 프라이부르크(FR), 졸로투른(SO), 투르가우(TG), 테신(TI)). 옵발덴(Obwalden), 아펜젤 인너호덴(Appenzell Innerrhoden) Kanton에서는 1998년 종결되거나 연말에 아직

17) Kanton에 의해 사용된, 보고기간 초기에 종결되지 않은 요청의 수치는 마지막 보고에서의 설명과 관련하여 보고기간 말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요청의 수치를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고기간에 처리된 사건의 전체 통계는 계산방식에 따라 상이하다.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의 근거가 보고기간 중 Kanton의 각 설명을 구성한다.

종결되지 않은 요청이 1건도 없었다.

연초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요청이 신규로 접수된 요청에 포함된다면, Kanton에서는 처리되어야 하는 요청의 단지 35%만을 종결했다고 확정할 수 있다(1997년 31%, 1996년 41% 대비). 1997/98년 보고기간에 연말에 각 종결되지 않은 요청의 수치는 처음으로 동일 기간에 신규로 접수된 요청의 수치를 능가했다. 3개의 Kanton(옵발덴(OW), 아펜젤 인너호텐(AI), 투르가우(TG))를 제외하고 모든 Kanton에서는 1998년 처리되어야 하는 요청보다 더 적게 종결했다. 18개 Kanton(취리히(ZH), 베른(BE), 루체른(LU), 슈비츠(SZ), 졸로투른(SO), 바젤-도시(BS), 바젤-시골(BL), 샤프하우젠(SH), 아르가우(AR), 성 갈렌(SG), 그라우뷘덴(GR), AG, 테신(TI), VD, VS, 노이엔부르크(NE), 제네바(GE), 유라(JU))에서 종결된 요청의 수치는 처리되어야 하는 요청의 절반보다 더 적다. 처리되어야 하는 요청에 비해 종결된 요청의 비율은 테신(Tessin, 10%) 아펜젤 아웃서호텐(Appenzell Ausserrhoden, 12.5%), 샤프하우젠(Schaffhausen, 14%), 바트(Waadt, 14%), 유라(Jura, 15%) Kanton에서 가장 적다. 종결되지 않은 요청의 큰 수치는 종종 요청이 배려적으로 접수되어 그 기간이 준수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특히 설명될 수 있다; 이어 피해자 스스로 절차(소송)의 정지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바젤시골(Basel-Landschaft) Kanton에서 지난 3년간 접수된 요청의 평균 70%가 이런 잠정적 요청이다. 스위스 전체에 대한 이런 수치는 수집되지 않았다.

위에 언급한 수치를 보고기간 중에 유지된 예비비의 수치와 관련하여 대체¹⁸⁾하는 것은 흥미롭다. 후자는 매우 낮은 상태였다(1997년 35; 1998년 54). 그러나 취리히 Kanton의 이에 상응하는 입장은 결여되어 있다¹⁹⁾. 그래서 예비비의 지불은 예비로 남아있었다: 1998년처럼 1997

18) 이 설명항목은 1997년 이전의 해에는 수집되지 않았다.

19) 취리히 Kanton에서 이런 정보들은 파악되지 않았다.

4. 보상과 원상회복

년에 100건의 신규로 접수된 요청은 4개의 예비비로 보장되었다. 9개의 Kanton에서는 1997년과 1998년 모두 어떤 예비비도 보장되지 않았다(옵발덴(OW), 니트발덴(NW), 글라루스(GL), 쪽(ZG), 샤프하우젠(SH), 아르가우(AR), 아펜젤 인너호덴(AI), 그라우뷘덴(GR), 유라(JU)). 1998년 처리되어야 하는 요청과 관련하여 투르가우(Thurgau, 22%), 테신(Tessin, 10%), 갈렌(St. Gallen, 8%) Kanton가 가장 많은 예비비를 보장했다. 테신(Tessin) Kanton은 1998년 참여지분상 가장 적은 요청을 종결했고,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지분의 예비비를 지불했다(10%). 이에 반해 1998년 참여지분상 많은 요청을 종결한 Kanton에 속하는 쪽(Zug), 프라이부르크(Freiburg), 글라루스(Glarus) Kanton(ZG: 58%; FR: 52%; GL: 50%)은 비례상 거의 예비비를 지불하지 않았다(쪽(ZG)과 글라루스(GL)은 처리되어야 하는 요청의 0%, 프라이부르크(FR)은 1.7%). 이런 상관관계는 그러나 모든 kanton에서 관찰될 수 없다: 그래서 1998년 아펜젤 아우서호덴(Appenzell Ausserrhoden),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유라(Jura) Kanton에서는 종결된 요청에 대해 경미한 참여지분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비비도 지불하지 않았다(아르가우(AR, 12.5%), 샤프하우젠(SH, 14%), 유라(JU, 15%).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투르가우(Thurgau) Kanton은 지분상 가장 많은 예비비를 지불하면서 가장 많은 요청을 종결했다(133%).

1998년 종결된 사례들의 66%는 후원활동의 지불로 이어졌다(1997년 77%; 1996년 67%; 1995년 62%). 1998년 종결된 사례들의 26%에서 요청은 기각되었다(1997년 12%; 1996년 15%; 1995년 23%). 따라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기각된 결정들의 참여지분은 단지 20%에 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례의 17%는 다르게(예를 들어 요청의 철회 또는 대상 상실) 종결되었다(1997년 10%; 1996년 17%; 1995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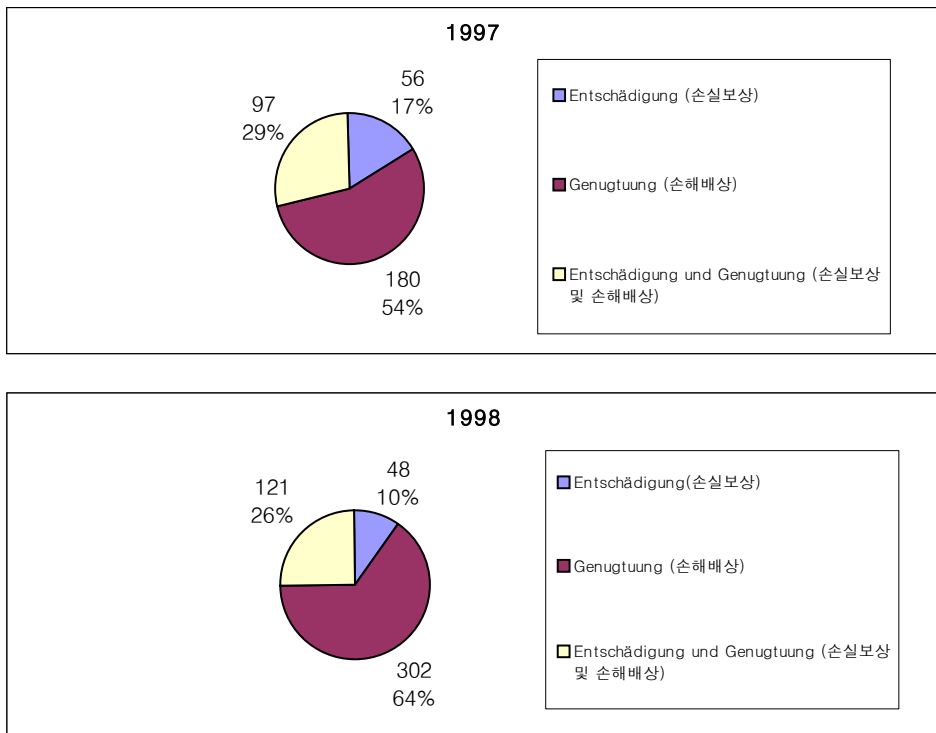
1997년 좋게 호명되는 요청의 참여지분은 테신(Tessin) Kanton에서만 50%이하였다. 1998년에 이것은 루체른(Luzern) Kanton에만 적용되었다

(39%). 눈에 띄는 것은 제네바(Genf) Kanton에서 2년간의 보고기간에 있어 좋게 호명되는 요청의 참여지분이 90%에 달한다는 것이다.

4.4. 지불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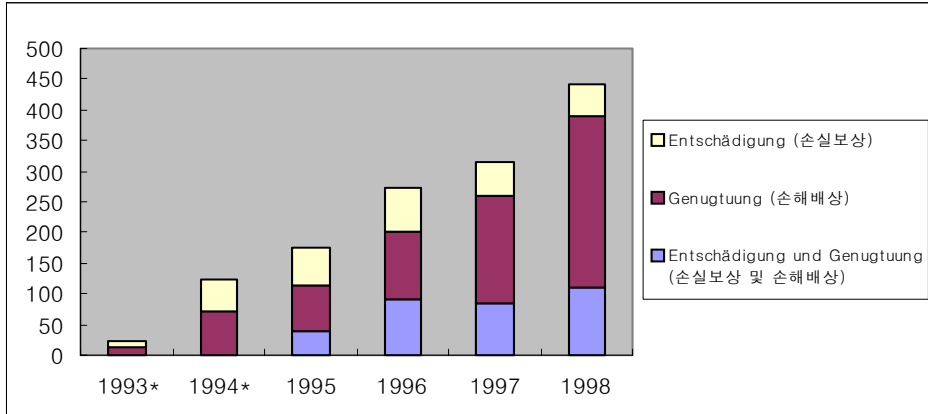
지불된 보상의 수치는 감소한다. 1995년 보상은 재정활동의 약 34%를 차지했다. 참여지분은 1996년 25%, 1997년 17%, 1998년 10%로 감소했다. 반대는 사례의 원상회복에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하여 1997년에는 60%, 1998년에는 68% 증가했다. 1998년 원상회복은 지불된 재정활동의 약 64%를 차지했다(1997년 54%; 1996년 40%; 1995년 43%). 연계된 활동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림 4D 지불활동의 종류에 따른 분류



4. 보상과 원상회복

그림 4E 1993-1998년 사이의 절대적 수치에 있어 지불된 활동의 종류에 따른 분류



원상회복은 1998년 모든 Kanton에서 보상보다 더 빈번하게 동의되었다. 보장된 원상회복의 수치는, 절대적 수치에서, 취리히(Zuerich), 베른(Bern), 바트(Waadt), 제네바(Genf) Kanton에서 특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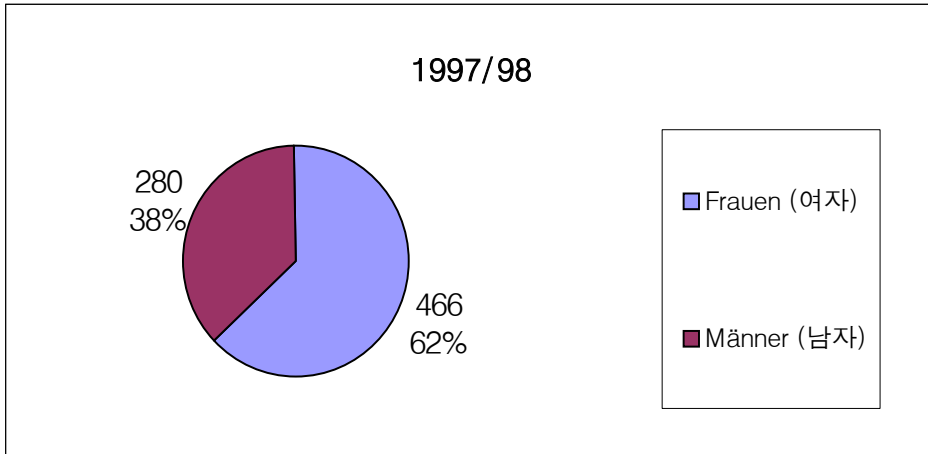
보상에서의 평균가액은 감소한 반면, 원상회복의 평균가액은 증가했다. 원상회복은 1998년 평균 15,245 프랑켄에 달했고(1997년 12,282 프랑켄; 1996년 10,476 프랑켄; 1995년 9,871 프랑켄), 보상은 7,058 프랑켄(1997년 6,334 프랑켄; 1996년 14,113 프랑켄; 1995년 14,697 프랑켄)에 달했다.

보상은 피해를 항상 완전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1997년 보상의 25%, 1998년 보상의 41%가 피해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부분적으로 피해자지원법 2장 2문의 13조 1항에 따른 보상). 위 법률의 공포 이후(1993-1998년) 사례의 70%에서 피해가 동의된 보상을 통해 완전히 충족되었다.

예비비는 1997년 결정별로 평균 5,933 프랑켄, 1998년 9,259 프랑켄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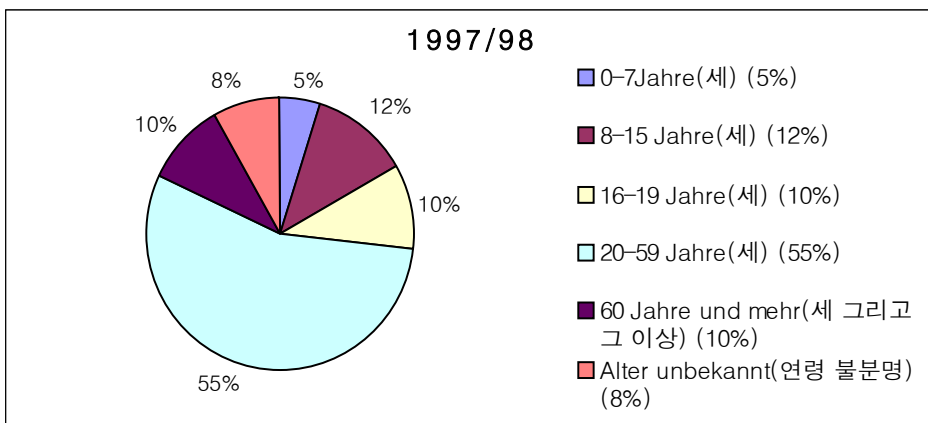
4.5. 활동을 수용한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

그림 4F 성별에 따른 분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명확하게 빈번한 재정적 활동을 수용했다. 여성들의 참여비율은 1997년 61%, 1996년 70%, 1995년 63%에 비해 1998년 63%를 차지했다.

그림 4G 연령에 따른 분류



4. 보상과 원상회복

성 갈렌(St. Gallen) Kanton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재정활동 수령자들의 분류는 1995/96년과 1997/98년 모두 동일했다.

4.6. 범죄행위의 종류

그림 4H 범죄행위의 종류에 따른 재정활동의 지불(보상 및/또는 원상회복)

범죄행위	재정활동의 수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살인죄(교통사고 포함)	1 8.3%	23 30.3%	15 14.2%	38 14.8%	67 19.5%	101 20.5%
상해죄(교통사고 포함)	7 58.3%	21 27.6%	44 41.5%	86 33.5%	129 37.5%	195 39.6%
질병 유포			0	0	3 0.9%	0
성범죄	4 33.3%	26 34.2%	32 30.2%	98 38.1%	106 30.9%	148 30.1%
자유침해 범죄	0	2 2.6%	4 3.8%	11 4.3%	17 4.9%	26 5.3%
재산범죄			8 7.5%	14 5.4%	17 4.9%	18 3.7%
다른 범죄행위들	0	4 5.3%	2 1.9%	10 3.9%	5 1.4%	4 0.8%
알려지지 않거나 수집되지 않은 범죄	0	0	1 0.9%	0	0	0
총 계	12 100%	76 100%	106 100%	257 100%	344 100%	492 100%

교통사고로 인한 살인 또는 상해에 있어서의 재정활동의 수치는 1995/96년의 보고기간처럼 매우 경미했다. 이는 1997년에 재정활동 4회, 1998년 18회에 달했다. 1997/98년 보고기간동안 재산범죄에 대해 지불된 모든 재정활동은 강도의 경우에 해당했다. 1997년 지불된 활동의 57%, 1998년 지불된 활동의 60%가 살인죄나 상해죄와 관련있고, 약 30%가 성범죄에 해당했다(1995년 30%; 1996년 38%).

5. 연방과 Kanton의 재정활동들

5.1. 연 황

연방은 1993-1998년에 Kanton들에게 재정지원을 보장해줬다(피해자 지원법 18조 2항). 재정지원은 피해자지원의 증대와 소위 자문기구들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에 상응하는 Kanton의 지출은 다음 설명에서 “자문과 인프라를 위한 지출”로 상세하게 설명된다. 연방의 증대지원은 Kanton 전체 지출의 약 1/3을 충족하는 것이 좋다²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활동은 연방의 증대지원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되고, Kanton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²¹⁾. 피해자지원을 위한 Kanton의 지출의 완벽한 상(像)을 제공하기 위해 이런 활동은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체 지출”이라는 표시하에 부분적으로 고려된다.

이 보고서에 기초한 수치는 피해자지원 영역에서 비용증대를 위해 중요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조직, 사회지원조직, 민간기구의 수와 민간기구에서 있을 수 있는 사회부조가 Kanton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5.2. 개괄: 1993-1998년간 피해자지원을 위한 연방의 증대지원과 Kanton의 지출

연방은 1993-1998년에 증대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액수를 사용하도록 했다.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3-1998
백만프랑켄 단위의 증대지원	5	4	4.5	5	4.41	3.96	26.87

20) BBl 1990 II 995면.

21) AB 1991 N 15, 585면.

5. 연방과 Kanton의 재정활동들

자문과 인프라를 위한 Kanton의 지출은 다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1993-1998년 사이에 거의 4배로 증대했다. 지출의 증가비율은 1993/94년의 74%에서 다음 4년동안 약 20%이상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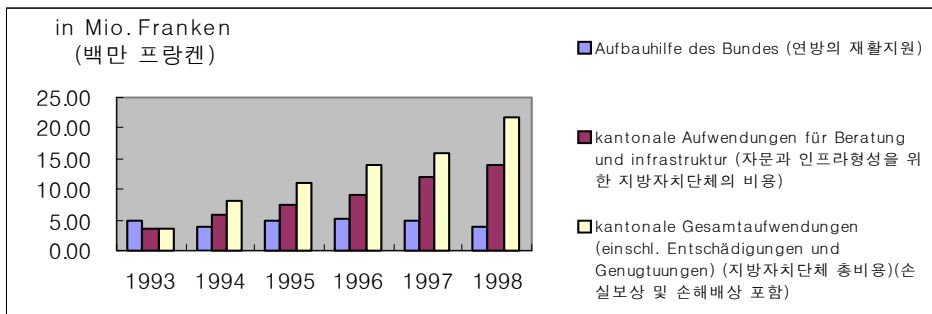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3-1998
백만프랑겐 단위의 증가비율에 있어 Kanton의 지출	3.55	6.19 74%	7.76 25%	9.12 18%	11.17 22%	13.6 22%	51.39 - -

앞의 수치에서 Kanton의 보상과 원상회복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1997년의 예외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제시한다.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3-1998
백만프랑겐 단위	0.24	1.74	2.77	4.78	4.48	7.52	21.53

1993년 피해자지원을 위한 Kanton의 전체 지출이 연방의 증대지원보다 적은 반면, 1994년부터는 상당한 양으로 연방의 증대지원을 능가했다(그림 5A 참조). 1997년부터 연방의 증대지원은 Kanton 전체 지출의 1/3보다 적었다. 1998년 이는 Kanton 전체지출의 18.7%를 차지했다; Kanton의 독자적 활동은 같은 해에 81.3%에 달했다. 연방의 증대지원이 전체 지출의 약 1/3 내지 Kanton의 독자적 활동의 66.6%를 차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법자의 목표는 1997년과 1998년에 완전하게 도달했고, 전체 6년과 관련하여 점차 달성되었다.

그림 5A 1993-1998년 연방과 Kanton의 지출증대지원



1993-1998년에 자문과 Infrastruktur를 위해 51,390,000 프랑켄,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해 21,530,000 프랑켄이 전체적으로 지출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72,920,000 프랑켄이다. 이 기간동안 연방에 의한 증대지원은 26,870,000 프랑켄에 달했다. Kanton들은 전체 지출과 증대지원 사이의 격차, 즉 46,050,000 프랑켄을 부담했다. Kanton들의 재정참여지분은 63.15%, 연방의 재정참여지분은 36.85%였다.

5.3. 1998년 말 증대지원 사용 현황

연방의 증대지원은 전체적 기부금으로써 Kanton에게 이양되었다. Kanton들이 피해자지원을 위한 이런 기부금을 사용하고 부가적으로 독자적 활동을 한 범위는 Kanton마다 상이했다. 그림 5A와 5B에서 볼 수 있듯이 Kanton들은 6년동안 피해자지원을 위해 활동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는 1993/94, 1995/96, 1997/98년이라는 2년간의 보고기간 말에 증대지원이 피해자지원을 위해 완벽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Kanton들의 수치가 항상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8년 말 6개의 Kanton들은 증대지원을 피해자지원을 위해 완전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어떤 독자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그림 5B 참조: 두껍게 표시된 Kanton). 읍발덴(Obwalden) Kanton을 제외한 모든 Kanton에서 자문과 Infrastruktur를 위해 완전하게 집행되지 않은 증대지원에 대한 지출이 1998년 자문과 Infrastruktur를 위한 지출보다 더 경미하다.

연방법무부는 1998년 증대지원의 지출을 Kanton들이 2000년말까지 피해자지원을 위한 나머지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과 연결했다. 연방지원이 이 기간 내에 조달되지 않는다면, 이는 초기 지원으로써 목표를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고 후퇴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해당 Kanton들은 1999/2000년에 증대지원의 사용에 대한 부가보고를 해야 한다.

5. 연방과 Kanton의 재정활동들

그림 5B 1997/98년 자문과 Infrastruktur를 위한 연방과 Kanton의 지출에 대한 증대지원

Kanton	Saldo Ende 1996	1997		1998		Saldo Ende 1998* (periode 1993-1998)
		Aufbauhilfe des Bundes	Kant. Aufwendungen für Beratung und Infrastruktur	Aufbauhilfe des Bundes	Kant Aufwendungen für Beratung und Infrastruktur	
Zürich	-5'639'746	486'762	2'866'556	439'104	3'636'943	-11'217'379
Bern	-1'930	730'869	924'378	638'764	1'189'608	-746'283
Luzern	6'617	230'845	1'117'116	212'470	1'141'008	-1'808'192
Uri	90'100	31'542	38'734	24'455	111'712	-4'349
Schwyz	159'073	76'929	96'944	68'256	124'357	82'958
Obwalden	79'585	30'977	23'184	27'097	25'873	88'601
Nidwalden	-35'655	19'159	33'289	17'496	21'921	-54'210
Glarus	-60'125	28'221	49'759	24'758	62'467	-119'372
Zug	-143'093	31'318	139'059	29'670	185'249	-406'414
Freiburg	-756'494	184'359	702'636	178'993	726'692	-1'822'470
Solothurn	49'866	158'268	302'200	135'063	267'637	-226'640
Basel-Stadt	-564'746	85'068	359'916	76'281	503'517	-1'266'830
Basel-Land.	-386'460	123'246	348'916	112'714	469'017	-968'433
Schaffh.	-124'840	42'148	178'337	37'025	247'014	-471'018
App.A.Rh.	13'657	42'716	71'555	38'738	69'115	-45'559
App.I.Rh.	10'049	14'579	20'444	12'020	19'747	-3'543
St.Gallen	-416'086	271'267	636'644	246'856	743'424	-1'278'031
Graubünden	-101'785	138'444	348'309	125'970	409'899	-595'579
Aargau	-478'424	298'229	835'866	268'039	1'141'880	-1'889'902
Thurgau	-327'794	134'280	488'648	120'892	457'960	-1'019'230
Tessin	216'831	204'198	243'927	172'053	300'022	49'133
Waadt	297'236	362'522	464'641	327'228	473'458	48'887
Wallis	542'125	288'238	415'275	266'943	439'989	242'042
Neuenburg	-431'453	142'205	226'214	128'573	504'840	-891'729
Genf	-257'342	178'373	161'030	162'757	165'170	-242'412
Jura	144'166	75'238	76'406	67'785	161'477	49'305
TOTAL	-8'116'668	4'410'000	11'169'983	3'960'000	13'599'995	-24'516'646

* Negativer Saldo: Die Kantone haben im Umfang des aufgeführten Betrags mehr Mittel für Beratung und Infrastruktur ausgegeben, als sie vom Bund an Aufbauhilfe erhalten haben.

Positiver Saldo: Von der vom Bund für die Aufbauhilfe zur Verfügung gestellten Summe ist nach Abzug der kantonalen Aufwendungen für die Beratung und Infrastruktur noch ein Saldo in der aufgeführten Höhe übrig.

그림 5B에서 마이너스 지출을 한 Kanton들은 연방의 증대지원 외에 피해자지원을 위해 독자적 수단을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Kanton들은 1993-1998년에 24,520,000 프랑켄을 피해자지원을 위한 독자적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취리히(Zuerich, 11,220,000 프랑켄), 아르가우(Aargau, 1,890,000 프랑켄), 프라이부르크(Freiburg, 1,820,000 프랑켄), 루체른(Luzern, 1,810,000 프랑켄) Kanton에서의 독자적 수단을 말한다.

5.4. Kantone의 활동과 피해자지원의 쟁점들

5.4.1. 개별 Kanton의 피해자지원활동들

스위스 전체 수치와 평균 수치는 Kanton별 상이한 크기와 인구밀도, 정치적 의사를 설명하게 하는 Kanton간의 커다란 차이점을 덮어준다.

그림 5C 절대적 수치에 있어 1993-1998년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Kanton의 전체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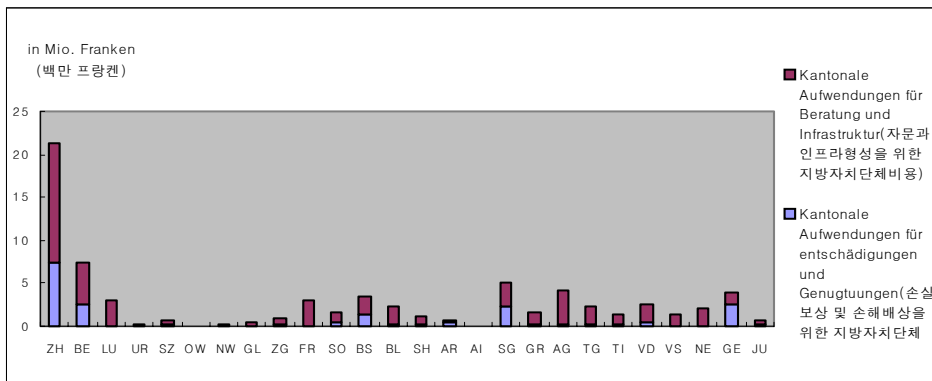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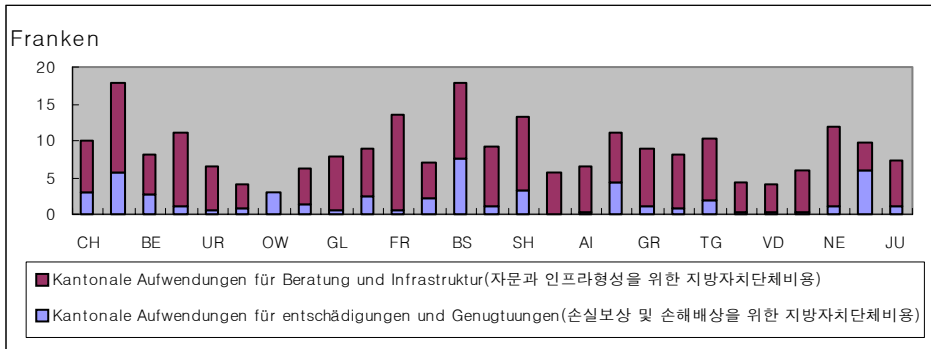
그림 5C는 1993-1998년 사이의 전체 6년치 보고기간 동안 Kanton들의 활동에 대한 개괄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2가지 사실이다. 첫째, 취리히(Zuerich) Kanton의 21,120,000 프랑켄의

5. 연방과 Kanton의 재정활동들

전체 지출은 다른 Kanton들의 전체 지출을 능가했다. 이는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체 스위스 지출의 40.6%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커다란 격차를 가지고 베른(Bern, 12,480,000 프랑켄), 갈렌(St. Gallen, 4,940,000 프랑켄), 아르가우(Aargau, 4,210,000 프랑켄), 제네바(Genf, 3,650,000 프랑켄), 바젤-도시(Basel-Stadt, 3,260,000 프랑켄) Kanton들이 따르고 있다. 둘째, 전체 지출에 대해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의 참여지분이 개별 Kanton에서 얼마나 다양한지가 주목할 만하다. 제네바(Genf, 64%), 바젤-도시(Basel-Stadt, 43%), 갈렌(St. Gallen, 40%), 취리히(Zuerich, 33%) Kanton들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참여지분을 제시한다.

Kanton의 지출의 절대적 수치로의 표시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Kanton의 활동이 통상 앞선다. 인구크기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아래 그림 5D에서 단위 인구당 Kanton의 전체 지출이 제시된다.

그림 5D 1993-1998년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거주인구당 전체 지출



1993-1998년 전체 6년간의 보고기간동안 스위스에서 피해자지원을 위해 거주인구당 10 프랑켄이 지출되었고, 그 중 자문과 인프라를 위해 7.34 프랑켄,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해 2.68 프랑켄이었다. 이때 Kanton 간의 차이가 현저하다.

가장 높은 전체 지출, 즉 1인당 12-18 프랑켄을 취리히(Zuerich), 프라이부르크(Freiburg), 바젤-도시(Basel-Stadt), 샤프하우젠(Schaffhausen)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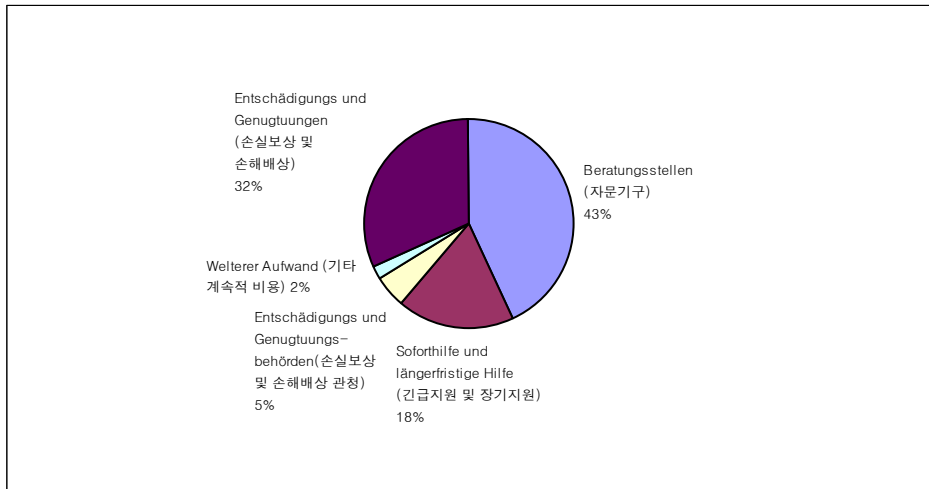
4개의 Kanton들이 제시한다.

스위스 평균인 1인당 8-12 프랑켄의 지출은 9개의 Kanton들에서 집행된다(노이엔부르크(NE), SG, 루체른(LU), 투르가우(TG), 바젤-시골(BL), 제네바(GE), 그라우뷘덴(GR), 죽(ZG), 아르가우(AR)AG).

1인당 8 프랑켄보다 더 적은 전체 지출은 13개 Kanton들에서 제시된다(감소순으로: 베른(BE), 글라루스(GL), 유라(JU), 졸로투른(SO), 우리(UR), 아펜젤 인너호텐(AI), 니트발덴(NW), VS, 아르가우(AR), 테테신(TI), 슈비츠(SZ), VD).

5.4.2. 1997/98년 피해자지원을 위한 지출의 쟁점들

그림 5E 1997/98년 피해자지원을 위한 Kanton의 전체 지출의 분배



1997/98년 피해자지원을 위한 Kanton의 전체 지출의 43%는 자문기구들에 해당했다. 이 비용은 자문기구들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었고, 특히 인건비에 충당되었다. 그럼으로써 자문기구들이 피해자에게 보장하는 일반적·심리적·사회적·법적 지원과 배려에 대한 재정에 충당되었다.

5. 연방과 Kanton의 재정활동들

지출비용의 37%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해 집행되었고, 5%는 주무관청(설치비용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을 위해 집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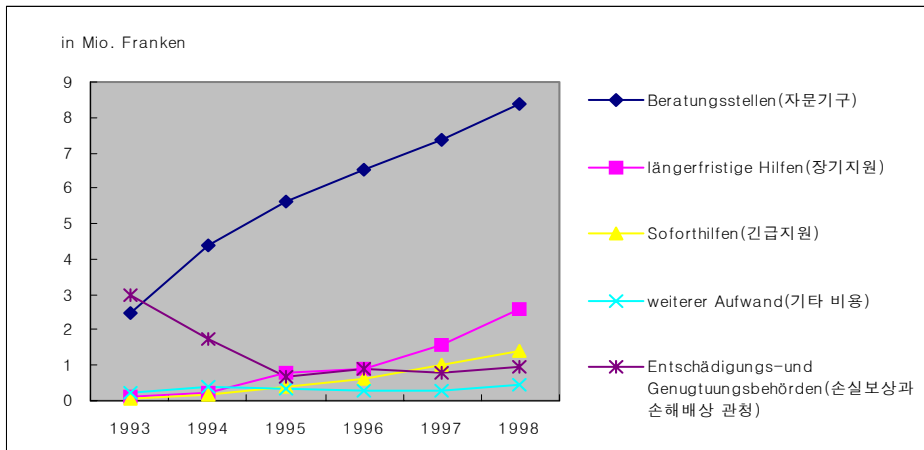
18%는 즉시 지원과 장기간에 걸친 지원의 형태로 피해자에 대한 비용으로, 2%는 자문(정보제공 및 재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1995/96년 보고기간과 비교하여 지난 2년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된(즉시적 지원, 장기간에 걸친 지원, 보상과 원상회복) 지출지분은 전체적으로 40%에서 50%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인프라(보상과 원상회복에 대한 자문기구들과 승인기구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출지분은 57%에서 48%로 감소하였다.

5.4.3. 1993-1998년 자문과 인프라 영역에서의 활동들

그림 5F는 1993-1998년간 가장 중요한 요소들의 변화들을 보여준다.

그림 5F 1993-1998년간 자문과 인프라에 대한 비용



1993년 자문과 인프라를 위한 비용의 93%가 자문기구들의 증대와 확대에 지출되었다. 이에 상응하는 비용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1995년부터는 증가율이 감소했다. 1998년 자문과 인프라를 위한 지출비용

의 62%는 자문기구들 자체의 증대와 확대를 위해 규정되었다(장기간에 걸친 지원 19%, 즉시 지원 9%, 보상과 원상회복 7%, 기타 비용 2%). 즉시 지원과 장기간에 걸친 지원에 있어서는 1996년에 증가가 있었다. 보상과 원상회복기구들²²⁾을 위한 지출비용은 1994년 지출의 최고 정점 이후 다음해부터 거의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기타 소비비용(정보, 재교육, Diverses)들은 1994년 이후 마찬가지로 동일 상태에 머물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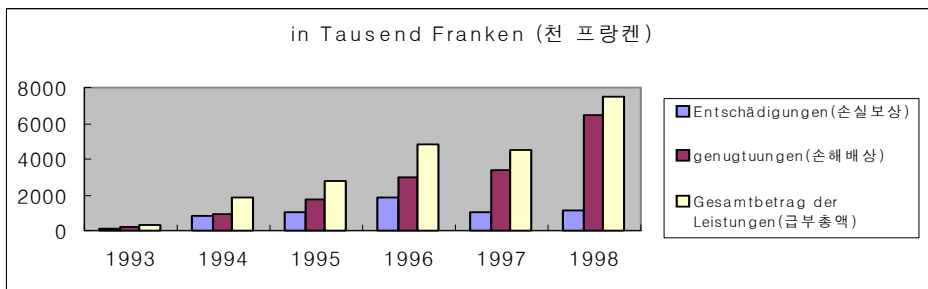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볼 때 자문 받은 사람당 1998년의 즉시 지원과 장기간에 걸친 지원, 자문기구들을 위한 지출비용은 1,166 프랑켄에 달했다. 1995년 이 비용은 여전히 1,456 프랑켄이었다(이전 해에는 어떤 자료도 없다).

5.4.4. 1993-1998년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에서의 활동들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Kanton의 지출비용

보상을 위한 Kanton의 지출비용은 1997년 1,079,855 프랑켄, 1998년 1,070,497 프랑켄이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은 1997년 3,402,107 프랑켄, 1998년 6,448,484 프랑켄이었다. 게다가 Kanton은 예비비로써 1997년 207,658 프랑켄, 1998년 499,987 프랑켄을 지출했다.

그림 5G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Kanton의 지출비용



22) 이는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에서 독자적 활동은 5.4.4. 절에서 다룬다.

5. 연방과 Kanton의 재정활동들

1997/98년 보고기간에 명확하게 영위된 활동의 전체 금액(12,000,943 프랑켄)은 원상회복(9,850,591 프랑켄)을 위해 82%(1995/96년: 63%), 보상(2,150,352 프랑켄)을 위해 18%(1995/96년: 37%)로 구성된다. 이 수치는 요청의 대부분이 해당 기간동안 피해자의 갈망에 따라 중지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4.3절); 이 기간동안 이 모든 요청이 다시 반영된다면 Kanton의 지출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H 1997/98년 Kanton별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의 전체 금액

지출 금액	Kantone
0 - 49,999 프랑켄	UR, OW, AI, NW, AR
50,000 - 99,999 프랑켄	SZ, GL, BL, VS, JU
100,000 - 499,999 프랑켄	LU, ZG, FR, SO, BS, SH, GR, TI, NE
500,000 - 999,999 프랑켄	AG, TG, VD
1,000,000 - 1,999,999 프랑켄	BE, SG, GE
2,000,000 프랑켄 이상	ZH

5.5.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연방의 교육지원은 피해자지원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행되었다. 증대지원과 반대로 교육지원은 기한제한이 설정되지 않았다.

연방법무부는 1997년 164,000 프랑켄, 1998년 138,000 프랑켄의 재정 지원을 했다. 1995년 교육지원은 경찰관의 폭넓은 교육에 869,000 프랑켄이 지출되었다; 이전 3년 동안에는 100,000에서 125,000 프랑켄이었다.

1997년과 1998년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서부 스위스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대학과정과 스위스 심리학자 연합회의 과정이 특히 장려되었다. 이것은 자문기구들의 인적 증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들의 협력자들의 변화로 인하여 전문과정에 대한 큰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비교 2.10). 동시에 전문

적 주제를 가진 과정을 위해 면밀한 필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그 과정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연방법무부는 1997/98년에 기부절차의 간소화를 목표로 했다. 지금까지의 과정제공자들과 Kanton의 자문에 따라 평균 50%의 비용에 달하는 반나절 과정당 총체적 교육비 지불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999년 6월의 “피해자지원명령 8조에 따른 교육비에 대한 새로운 명령들”은 2000년부터 실행되는 과정을 위해 주무 관청에 의해 적용된다²³⁾.

5.6. 부가적 재정지원

피해자지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건으로 인하여 Kanton에게 너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된다면 연방은 부가적 재정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

23) 이는 법률집행프로젝트 및 -방법 연구부서의 행정실(Taubenstrasse 16, 3003 Bern, Tel 031/322 47 44, Fax 031/322 84 01, e-mail: cornelia.perler@bj.admin.ch.)에서 볼 수 있다. <http://www.ofj.admin.ch>에서도 볼 수 있다.

6. 부가적 경험들

6.1. 1997/98년 Kanton의 공표와 집행조치들

1997/98년 보고기간동안 다음 Kanton에서 피해자지원법이 공표되었거나 의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다:

노이엔부르크(Neuenburg) Kanton에서는 1997.6.23. 제정된 피해자지원법에 대한 시행법률이 1998.1.1.에 발효되었다. 이 시행법률은 보상과 원상회복에 있어서 절차, 권한 및 자문기구들의 조직에 대해 규정했다. 2000.1.1.에 집행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1998.2.1.부터 노이엔부르크(Neuenburg) Kanton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독립된 자문기구들을 설치했다.

1999.1.1.에 슈비츠(Schwyz) Kanton에서 피해자지원을 위한 집행명령이 발효되었다. 이 명령은 자문조직 내에서와 기타 지원 영역에 있어서 재정 권한을 확대시켰다. 기타 지원을 위한 비용보증은 관청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관청의 조치에 대한 항고는 행정법원(이전에는 정부위원회)이 새로이 판결한다.

졸로투른(Solothurn) Kanton에서는 1998.3.4 제정된 피해자지원법 시행명령 부분개정의 범위내에서 Kanton의 조율기구인 ‘피해자지원’을 새로이 만들었다.

제네바(Genf) Kanton에서는 1998.11.12에 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간경과의 시기와 관련하여“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률에 규정된 보상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이행했다. 2년의 기간은 18세 이하의 피해자를 위하거나 가족공동체내에서 가해자와 함께 사는 피해자를 위해 만 18세가 되었을 때 내지 가족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시작한다.

다양한 Kanton에서 피해자지원법을 집행하기 위한 지침서나 명령들이 공표되거나 수정되었다. 상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

6. 부가적 경험들

항들이 언급된다:

많은 Kanton(베른(BE), 루체른(LU), 쾅(ZG), 바젤-도시(BS), 바젤-시골(BL), AG VD, VS)에서 피해자지원법²⁴⁾을 적용하기 위해 스위스연계기구모임의 추진을 새로운 업무방법으로써 반겼고, 가능한한 집행한다.

아르가우(Aargau) Kanton은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기타비용 부담을 위한 지침서를 SVK-피해자지원법-추천서에 맞추었다.

루체른(Luzern) Kanton에서는 1998.12.1에 피해자지원법에 따라 범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비의학적 심리치료의 비용부담에 해당하는 Kanton의 명령이 발효되었다.

샤프하우젠(Schaffhausen) Kanton은 즉시 지원과 기타 지원 영역에서의 절차과정과 청산방법을 외래 자문에서 확정했다.

베른(Bern) Kanton에서는 1998년 10월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구호관청의 지침서가 자본보상의 고려(Anrechenbarkeit)에 대한 기타 조항으로 보충되었다.

또한 안내책자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제네바(Genf), 베른(Bern), 샤프하우젠(Schaffhausen) Kanton에서는 안내책자를 다양한 외국어로(제네바(GE): 포르투갈어와 영어, 샤프하우젠(SH): 이탈리아어,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 스페인어, 터키어, 베른(BE): 샤프하우젠과 동일하고 영어, 포르투갈어, 알바니아어 추가) 새로이 만들었다. 아펜젤 아웃서호덴(Appenzell Ausserrhoden) Kanton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설명서는 거의 새롭게 만들어졌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설명서도 보충되었다. 테신(Tessin) Kanton에서는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고소하는 순간에 피해자지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는 설명서를 새로이 만들었다. 노이엔부르크(Neuenburg) Kanton에서는 1998년 포켓용 안내책자를 발행했다.

24) 비교. 6.4절

바아트(Waadt) Kanton은 “Police de surete cantonale”와 “Police judiciaire municipale”에서 피해자 영접을 위한 독자적 공간을 만들었다.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설문을 위해 비디오촬영시스템을 갖추었다.

보충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것은 유라(Jura) Kanton에서 1999년 12월 Kanton의 피해자지원법 시행법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법률은 잠정적으로 새로운 구조로 이어진다. 유라(Jura) Kanton의 필요성과 베른(Bern) Kanton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관할구역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Kanton간의 해결책이 특히 검토된다. 또한 발리스(Wallis) Kanton은 Kanton의 결정에 대한 수정을 계획한다. 아마 Kanton의 행정기구는 보상과 원상회복관청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6.2. 1993-1998년 법률에 의한 Kanton의 경험들

Kanton들은 1997/98년에 대해 보고하라는 명령에서 전체 증대기간동안 피해자지원법률과의 경험을 피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정필요성을 평가하고 있을 수 있는 수정과 관련된 관심사를 구성하라는 요청을 받았다²⁵⁾. 대부분의 Kanton들은 이 가능성을 활용했다. 바젤(Basel-Landschaft, Basel-Stadt)은 공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피해자지원법에 대한 Kanton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가의 피해자지원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었다: 법률은 여러 방면에서 비판받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우 유용하고(프라이부르크(FR)), 효과적이라는(샤프하우젠(SH), 테신(TI))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시너지효과와 사고의 전환으로 이어졌다(테신(TI)). 행정관청, 특히 경찰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다(취리히(ZH), 아르가우(AR), 아펜젤 인너호텐(AI)).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지원은 아직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베른(BE)). 재정적 지원활동은 단지 몇

25) 비교. 15.1과 15.2 절.

6. 부가적 경험들

몇 경우에만 요구되는 반면, 피해자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자문이다(쾅(ZG)).

몇몇 초기 어려움 이후와 피해자에게 행해져야 하는 지원활동과 관련하여 위 법률은 어떤 특별한 문제점을 내포하지 않는다(베른(BE), 샤프하우젠(SH), 아르가우(AG)). SVK-피해자지원법의 추천과 Kanton들의 지침서들은 더 많은 명확성으로 이어졌다(졸로투른(SO)). Kanton간의 협력은 보장되었다(아펜젤 인너호텐(AI), 마젤-도시(BS), 마젤-시골(BL)).

그러나 위 법률은 자문기구들과 Kanton내 관청의 집행문제로 이어지는 명확한 문제점을 제시한다(AG, 베른(BE), 샤프하우젠(SH)). 수많은 Kanton들이 증가하는 요청의 수와 이에 관련된 비용의 증가를 제시한다. 재정비용은 예상한 것보다 더 높다(프라이부르크(FR), 베른(BE)). 피해자지원은 Kanton간의 비용중복으로 이어졌다: 이제 피해자 지원과 Kanton을 거쳐 재정 지원되는 여성의 가정체류는 과거 생활부조에서 사회공동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졸로투른(SO)).

자문기구들의 조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다: 기대와는 달리 위 법률의 효력발생 이전에 존재한 피해자지원의 조율기구들이 수용되지 않았다; 중심이 되는 기구가 새로이 창설되어야 했다(AG). 사회부조관청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자문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독립성과 독자성을 위해 과제는 2003년부터 행정기구에서 분리될 것이다(글라루스(GL)). 수많은 지방분권적 자문기구들의 설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보장되지 않았다(그라우뷘텐(GR)). 이와 반대로 특정 피해자를 위한 자문기구들의 전문화는 보장되었다(취리히(ZH), 루체른(LU)).

자문기구의 과제들은 비중이 상이하다: 자문기구는 우선 법적이고 일반적인 자문을 행하고, 전문적 자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전문가에게 넘긴다(니트발덴(NW)). 자문기구는 보통 다른 장소에서 직접적

지원을 행하고 지원활동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취리히(ZH)). 외국인에 대한 자문은 힘들다(아르가우(AR), 아펜젤 인너호텐(AI)). 미성년자와 노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VD).

아동보호 영역에서 몇몇 사항들이 시도중에 있다: 다양한 Kanton들이 부족함을 인식하고(아펜젤 인너호텐(AI), 아르가우(AR), 슈비츠(SZ)), 해결책을 찾거나(프라이부르크(FR)), 각 분야 공통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최근에 도입하거나(취리히(ZH), 졸로투른(SO), 샤프하우젠(SH), VD),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했다(바젤-도시(BS), 바젤-시골(BL)).

새로운 방법은 가정폭력에서의 진행과정 또한 문의되었다: 꼭 필요한 것은 강화된 각 분야 공통의 협력이다(졸로투른(SO), 취리히(ZH): “협박받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HIBO)”그룹).

형사절차규정들은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규정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향상시키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베른(BE)).

중증 보상이나 원상회복에 대한 배려적 요청이 접수된다(베른(BE)). 예비비 반환의 안전성은 지출비용이 매우 많다(AG). 매 5번째 보상요청은 단순 한계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베른(BE)).

6.3. 지역적 협력

지역적 협력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바젤 Kanton(Basel-Stadt, Basel-Landschaft)과 갈렌(St. Gallen), 아펜젤(Appenzell Inner- und ausserrhoden) Kanton들은 공동의 자문기구들을 설치했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1항).

모든 Kanton들은 지역회의 범위내에서 경험들을 교환한다. 1996년 말까지 3개의 지역회의(서부 스위스와 테신, 북서부 스위스, 동부 스

6. 부가적 경험들

위스)가 있었다. 1997년 이래 중부 스위스에서도 이런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치료 및 변호사비용의 대납시 진행과정 및 전제조건들 또는 주채무자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진행과정처럼 자문과 보상/원상회복 영역에서의 집행문제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동부 스위스 지역은 여성가정채류 비용 대납을 위한 추천들을 다루었다.

자문기구들의 전문가들 역시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만난다. 웰시(Welsch) 지역 자문기구 구성원들은 1995년 “LAVI 실무자들내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간의 협력체”(COROLA)를 조직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에는 1996년 이래 3개의 지역 자문기구조직들이 존재한다.

6.4. 전체 스위스의 협력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가 Kanton간의 협력을 보살핀다. 이 회의는 12명, 즉 4개의 지역회의에서 각각 2명의 대표단, Kanton의 사회복지부서 기관장(長) 회의 대표 1명(SODK, 1997년 9월까지 Kanton의 사회복지 기관장(長)들의 회의, FDK), SODK 비서실 대표 1명, Kanton의 법무부와 경찰 기관장회의 대표 1명, 연방법무부의 대표 1명으로 구성된다. 스위스 연계기구회의는 - Kanton의 독자성과 개별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 피해자지원법의 효과만점이고 통일된 집행을 다루게 될 것이다.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는 1995년 초 정관을 제시했다. 이는 자문기구들의 목록으로 이어졌다. 1995/96년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는 피해자지원법을 적용하기 위한 추천서를 만들었다. 이는 1998.5.1. 효력이 발생했다²⁶⁾.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는

26) 이 추천들은 아래 주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Kanton의 사회복지회의, 비서실(Konferenz der Kantonalen Sozialdirektoren, Sekretariat), Eigerplatz 5, Postfach 459, 3000 Bern 14, Tel. 031/371 04 29.

1997/98년 연방통계청의 장래 피해자지원통계와 관련하여 Kanton들의 요구사항들을 다루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된 많은 회의들이 전제 스위스 경험교환에 기여했다(1993.11.22-23일 인터라켄에서의 세미나, FDK와 공공부조를 위한 스위스 회의와의 연합으로 개최, 1994.11.11 베른에서의 회의, FDK가 조직, 1998.6.19. '피해자지원법의 증대시기의 끝,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베른에서의 회의, SODK와 SVK-OHG에 의해 조직, 1999.11.5. '피해자지원의 집행과 효과성: 증대시기의 종결 이후의 균형 - 수정사항'이라는 주제로 베른에서의 회의, BJ27)에 의해 조직).

6.5. 연방차원에서의 피해자지원

피해자지원법의 집행은 본질적으로 Kanton의 과제이다. 이 법률이 효력을 발한 후 첫 2년간 연방법무부에 수많은 해석문제들이 제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의견들은 "연방관청의 행정실무(VPB)"에서 공개되었다. 다음 해에는 어떤 기본원칙적 문제를 더 이상 제시하지 않는 문의가 드물게 다루어졌다.

연방법률보호기구에 대한 1943.12.16.의 연방법률의 103조 b문(연방법보호법률, OG, SR 173.110)에 의하면 법무부와 경찰부처는 자문과 보상의 영역에서 Kanton의 최종 결정에 반하여 연방법원에 행정쟁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금까지 이 권리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위 부처(내지 위 부처의 위탁에 따른 연방법무부)는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절차에 대해 규칙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은 1997년까지 증가했다(1994년: 1건, 1995년: 5건, 1996년: 8건, 1997년: 14건, 1998년: 11건).

연방형법보호에 대한 1934.6.15의 연방법률(BStP, SR 312.0)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은 연방변호사에게는

27) 비교. 15.4 절.

6. 부가적 경험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군사법원의 영역에서 다양한 적용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1979.3.23의 군형사소송의 84a조는 불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와 손해를 본 사람과의 구분, 군형사소송에서 규정되지 않았지만 BV 제29조 제3항 (aBV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보수로 이루어지는 소송진행과 피해자지원법 제3조에 따른 자문기구들에 의한 법적 지원 내지 비용부담의 한계가 실무에서 확실한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1927.6.13.의 군형법 제108조 이하에 따라 군사법원은 외국에서 행해진 전범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 군사법원은 외국에서의 범행에 있어서 외국에 거주하면서 손해를 본 외국 국적의 사람들의 민사청구에 대해서도 판결해야 한다.

2000년부터 연방통계청은 Kanton의 집행관청과 협력하여 피해자지원통계를 담당한다²⁸⁾.

6.6. 국제적 측면

외교부와 함께 연방법무부는 외국에서 범죄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스위스로 돌아온 후 재빠르게 피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8/99년 스위스 대표부를 위한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대사와 영사들은 피해자들과 이들 주변 사람들에게 스위스의 피해자지원 자문기구들에 대해 주지시켰고, 스위스의 피해자지원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이런 기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활동에는 경우에 따라서 범죄발생지 국가의 활동을 요구하는 가능성도 보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 내지 이들 주변 사람들이 이를 원할 경우, 스위스 대표부는 스위스 경찰(비교. 피해자지원법 제6조 제1항)에게 피해자에 의해 표현된 자문기구의 주소와 이름을 전달해야 한다.

28) 비교. 1.4절.

피해자지원법과 동시에 폭력행위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유럽협약(SR 0.312.5)이 1993.1.1. 스위스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하였다. 지금까지 11개 국가가 위 협약을 비준했다²⁹⁾. 협약당사자국가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위 협약은 협약당사자국가에게 보상문제에 있어서 상호간의 지원을 요구한다(제12조). 스위스에서는 연방법무부가 외국에서 들어온 법률원조요청을 수령하고 처리하는 중앙관청이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법률원조요청은 없었다.

연방법무부는 이와 반대로 때때로 경계를 뛰어넘는 사건에 있어서 지원을 요청하는 Kanton의 보상관청의 요청을 수령한다.

1997년 말 연방법무부는 로잔에 있는 스위스법률비교연구소에게 다양한 유럽국가들에 있어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보상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라고 위탁을 주었다. 그 법률비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법적 상황에 대한 개괄을 보여준다³⁰⁾.

6.7. Luxor에서의 범죄행위

1997.11.17.에 이슬람 테러리스트 그룹이 Luxor에 있는 Hatshepsut라는 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58명이 사망하였고 그 중 36명이 스위스인이었으며, 그 외 많은 부상자들 중 10명이 스위스인 이었다.

피해자지원법이 발효한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건의 범죄피해자가 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위 범죄행위는 외국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지원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29) 아제르바이잔,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30) “유럽에서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는 주제(독일어 또는 불어)로의 비치는 연방법무부, 법률집행프로젝트 및 방법 연구부서에서 찾을 수 있다. (전화 031/322 47 44, 팩스 031/322 84 01, e-mail: cornelia.perler@bj.admin.ch).

6. 부가적 경험들

6.7.1. 피해자의 초기 배려

범죄행위 직후 외교부(EDA)는 부상자와 사망자의 귀환에 대해 신경 썼다. 당시 EDA의 장(長)인 연방정부 플라피오 코티(Flavio Cotti)는 카이로 소재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을 방문했고 스위스정부의 유감을 전달했다. 부상자들이 수송될 수 있을 정도가 되자마자 부상자들은 고향으로 귀환했다. 사망자들은 1차 사전 신원확인 후에 고향으로 수송되었고, 고향에서는 가족 또는 법의학 기구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 후에 가족에게 넘겨주었다. 게다가 EDA는 분실물을 찾는 업무도 수행했다.

6.7.2. 조율과 정보

피해자지원의 조율

여러 Kanton 출신의 피해자들이 지방분권적 집행에 근거하여 불평등하게 대접받는다라는 것이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다. 게다가 Luxor에서의 범죄피해자들은 동일 Kanton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다르게 대접받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범행후 몇 달이 지나서 자문기구·보상관청·연방의 대표자들은 보상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러번 모였다. 유가족에 대한 원상회복 측정을 위한 기본원칙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지원법 제14조와 피해자지원명령 제1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의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상과 원상회복활동은 이집트가 그 금액을 부담한다든지, 여행사와 보험회사가 피해보상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확립되기 전까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1999년 6월말까지 총 2,456,000,000 프랑켄이 Luxor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에 지출되었다.

책임문제와 관련한 협력

Luxor 범죄행위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 사건에 해당되었고, 그 때문에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의 합의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9년 가을까지 연방법무부의 초대 로 많은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고, 여기에 여행사, 보험회사, 피해자 변호사, 사립보험회사, Kanton, 사회보험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한편으로는 여행사, 보험사,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위탁을 준, 서로 반하는 법적 감정서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책임문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토론은 일치된 해결책을 찾으려는 희망과 1999.11.9. Luxor-합의의 종결로 이어졌다. 2개 여행사, 127명의 관련자, 2개의 사회보험사(SUVA, AHV/IV), 8개 사립보험회사, 16 Kanton들이 그 합의에 서명했다. 이 합의는 4,800,000 프랑켄으로 구성된 “Luxor-자금”의 설치를 규정했다. 이 자금은 사회보험 또는 사립보험회사나 피해자지원을 통해 충족되지 못한 피해를 위해 사용된다. 위 합의의 종결은 본질적으로 사회보장과 Kanton들이 비용상환요구를 강력하게 감소시켰던 상황을 통해 쉽게 이루어졌다. 사립보험사는 이런 요구를 폐지했다.

연방법무부는 환자들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했고, 위 합의를 종결했던 대화를 이끌었다. 위원회는 유효하게 만들어진 요구사항들에 대해 명백하게 결정할 것이다. 1차 지급은 2000년 가을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집트의 책임과 상계비용을 둘러싼 노력

범행 직후 이집트 외교부 장관은 도덕적 의미에서 유가족에게 재정 지원 제스처를 고려했다. EDA는 이집트 정부가 이런 활동을 하도록 모든 차원에서 수많은 외교적 요구수단을 추진했다. 1999년 2월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은 루트 드라이푸스(Ruth Dreifuss) 연방대통령에게

6. 부가적 경험들

거절편지를 보냈다. 2000년 3월 연방정부 조세프 다이스(Joseph Deiss)가 이집트를 방문한 이후 이집트의 재정 지원 제스체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단지 몇 요소들만이 국제법 위반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이집트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스위스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집트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EDA에 의해 위탁된 법률감정서는 해당인이 공무원에 대한 보충적 국가책임이라는 명목하에 이집트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성공전망은 기대하기 어렵다.

범죄행위 야기자 추적

스위스 관청은 범행 직후 즉시 이집트 관청에게 신속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Luxor 범행의 배경과 배후세력에 대한 조사에 이집트와 스위스 경찰관청이 참여했다. 1998.4.30.에 이집트 검찰이 대량학살에 대한 1차 보고를 전달했다. 이집트 관청이 범행에 대해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8.4.26.부터 5.2.까지 카이로에 연방경찰 대표단이 머물렀다. 1998년 12월에 이집트 관청에 116개의 질문으로 된 법률원조요청이 전달되었다. 이집트 관청의 표명과 1999.5.10-14. 간 카이로 소재 연방경찰 대표단 및 연방변호사의 방문에 근거하여 연방경찰은 1998과 1999년에 2건의 내부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2000년 3월에 명확한 보고서가 출판되었다.

많은 질문들이 현재까지 의문에 쌓여있으며, 특히 범죄자들의 목적이 그렇다. 모든 것은 'Gamaa al Islamija'라는 호전적 그룹에 속하는 범행지휘자를 제외하고 이집트의 질서행정청에 알려지지 않은 총 6명의 범인들이 참여했다고 암시하는 것 같다. 대량학살 실행명령은 이집트 테러그룹의 가장 중요한 신원이 확인된 인물들 중 1명인, 수단에 있는 무스사파 함자(Moustafa Hamza)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스위스

연방경찰은 현재 그 범행이 스위스나 스위스 국민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경제와 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추가 정보가 사용가능한 기간 내에 수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경찰은 법원 경찰의 수사절차를 중지하라고 신청했다.

Luxor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들

EDA와 연방법무부는 피해자들에게 특히 이집트에 대한 제안, 피해 규정, 범행야기자 추적 등에 대해 규칙적으로 알려줬다. 1998.11.17에 법무부서와 경찰부서에 의해 조직되면서, 해당인들의 회의가 베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핵심은 정보와 경험교환이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6.7.3. 연방의 부가적 재정지원

피해자에 대한 가능한 신속한 재정활동에 대한 Kanton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1998.6.3.에 법무부서와 경찰부서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지원법 18조 3항에 근거하여 의회에 1999년과 2000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Luxor의 범죄와 관련하여 1,000,000 프랑켄을 Kanton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신청하라고 결정했다. 의회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본적으로 추종했으나, 추가 재정지원은 3% 신용차단에 예속되고 각 970,000 프랑켄을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에 Kanton에게 818,641 프랑켄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7. 판 결

7.1. 피해자지원법에 대한 연방법원의 공개된 판결의 변화(1997-1999)

지난 3년(1997-1999년)간 연방법원은 피해자지원법이 적용³¹⁾된 18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이는 년 평균 6건의 판결을 의미하고, 연방법원의 1차 공법 부서(50%)와 항소 부서(Kassationshof, 50%)에 절반씩 나눠져 있다. 법무부서와 경찰부서는 행정법원에 대한 항소의사를 각각 표명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판결을 같이 구성할 수 있다³²⁾.

출판년도	항소부서(Kassationshof)	1차 공법 부서	총 계
1997	3	4	7
1998	3	2	5
1999	3	3	6
총 계	9	9	18

연방법원은 법률의 구조에 따라 테마별로 요약된 다양한 측면들을 정확하게 다루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지위(7.1.1), 그 다음에 자문 기구들의 지원(7.1.2),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7.1.3), 마지막으로 보상과 원상회복 문제(7.1.4)에 대해 다루었다.

7.1.1. 피해자의 지위

연방법원은 육체적·성적·정신적 보존성에 대한 침해는 확실한 영향력에 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단순 상해 행위에 대한 형법적 가중은 획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단지 피해자 지위에 대한 찬·반의 표

31) 1999년 출판: BGE 125 IV 161; 125 IV 153; 125 IV 79; 125 II 265; 125 II 231; 125 II 169. 1998년 출판: 124 IV 137; 124 IV 49; 124 IV 13; 124 II 507; 124 II 8, 1997년 출판: 123 IV 184; 123 IV 145; 123 IV 79; 123 II 548; 123 II 241; 123 II 210; 123 II 1.

32) 비교. 6.5.절.

7. 판 결

식이다³³⁾. 재산법익만을 주장하는 이의제기자에게는 피해자지원법 제2조의 의미에 따른 피해자지위가 인정될 수 없고, 그는 피해자지원법 제8조 제1항 c를 주장할 수 없다³⁴⁾.

연방법원이 판결하여야 하는 사례에서 2명의 의사가 상해죄(도핑)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 연루된 자전거선수가 있었다. 연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³⁵⁾: 범죄행위가 제3자에 의해 고소되고 잠정적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부정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에게 피해자지원법 제2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피해자지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단지 형사절차를 통제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일 경우,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권한남용일 것이다³⁶⁾. 사실관계가 조사되지 않는 한, 피해자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표현되는 사람들의 소환에 근거해야 한다³⁷⁾. 구체적 사례에서 조사대상이었던 사실이 잠정적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 고소되었다. 이 사례에서 자전거선수가 고소된 범죄행위의 피해자였다는 의사의 의사표명에 근거한 것은 옳았다. 스포츠선수가 범죄행위와 피해자지위를 부정하는 상황은 그에게 피해자지원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지위를 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³⁸⁾.

7.1.2. 자문기구들의 지원

연방법원에 따르면 아동보호조치의 범위내에서 배려비용은 피해자지원법 제3조에 따른 지원이나 피해자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보상으로

33) 연방법원판결 125 II 265(268-272).

34) 연방법원판결 123 IV 184(187).

35) 연방법원판결 125 IV 79.

36) 연방법원판결 125 IV 79 (82).

37) 연방법원판결 125 IV 79 (82); 123 IV 184 (187).

38) 연방법원판결 125 IV 79 (82).

간주될 수 있다³⁹). 가족법적 아동보호 관련 조치가 피해자지원법의 의미에서의 충분한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면 피해자지원을 통해 활동해 달라는 많은 요구사항들이 존재하지 않는다⁴⁰).

판례는 무보수의 법적 배려에 대한 피해자지원법의 보충적 성격을 증명했다: 무보수의 법적 배려가 피해자에게 보장된다면 국가의 활동은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4항의 의미에서 더 이상 정당화되지 못한다. Kanton의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무보수의 법적 배려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자문기구는 개인적 사정이 변호사 선임비용의 대납을 정당화하는지 검사해야 한다⁴¹). Kanton의 법률에 따른 무보수의 법적 배려의 거부는 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조건들이 충족되었지에 대한 검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⁴²). 구체적인 사례에서 보면, 연방법원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추락으로 다리가 산산조각난 여성이 피해자지원법에 근거하여 무보수의 법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 사례는 확실한 어려움을 제시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는 자신의 법익을 스스로 대변할 수 없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그에게 허용된 수단을 사용하지 못한다⁴³).

끝으로 연방법원에 따르면 이미 행해진 활동에 대한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범죄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으로 족하다⁴⁴).

7.1.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피해자지원법 제6조 - 연방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2년간의 소송제기기간으로의 필수불가결한 소송적 보충 -

39) 연방법원판결 125 II 230 (234 이하).

40) 연방법원판결 125 II 230 (237).

41) 연방법원판결 123 II 548 (551); 121 II 209(212).

42) 연방법원판결 123 II 548 (551).

43) 연방법원판결 123 II 548 (551 이하).

44) 연방법원판결 125 II 265 (270 이하).

7. 판 결

는 1차 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자문기구들에 대해 알려주라고 경찰에게 의무화하고, 자문기구들은 법률이 피해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지원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2항 b). 정보제공의무는 법률이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피해자지원법 제11조 이하의 의미에서 보상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률을 몰라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기본원칙을 피해자지원법은 회피한다⁴⁵⁾.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정보부족이 피해자가 적시에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보제공의무에서 유추된다⁴⁶⁾. 제네바에서 아르브(Arve) 강을 따라 달리다가 익명의 남자에게서 공격을 받은 여자 사례에서 연방법원은 경찰이 그 여성에게 완벽하고 보상청구권과 고소제기기간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위 여성은 법적 기한 내에 보상요청을 했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때문에 형평성은 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2년간의 고소기간이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반대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한다⁴⁷⁾.

Kanton의 절차법이 더 상세한 규정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피해자지원법 제8조 제1항 a-c 에서 정확하게 규정한 3개의 사례에서만 형사절차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⁴⁸⁾. a-c에서 열거된 권리들을 유도하는“특히“라는 표현은 위 열거가 확정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부가적인 Kanton의 절차법을 유보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⁴⁹⁾. 특히 피해자지원법은 피해자가 예비조사 단계에서 증거수집활동을 경험해도 되는지 규

45) 연방법원판결 123 II 241 (244).

46) 연방법원판결 123 II 241 (245).

47) 연방법원판결 123 II 241 (245 이하).

48) 연방법원판결 124 IV 137 (139 이하).

49) 연방법원판결 124 IV 137 (139 이하).

정하지 않고 있다⁵⁰).

형사소송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당사자로서 인정된다면, 형법적 공소시효의 중단 역시 민사상 요구를 위한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민사상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한(피해자지원법 제8조 제1항 a) 피해자지원법의 의도에 부응하고, 범인이 무죄판결을 받지 않거나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한 형사법원은 피해자의 민사청구권에 대해 판결한다(피해자지원법 제9조 제1항)라는 것을 정확히 했다⁵¹).

민사청구권의 완전한 평가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면, 형사법원은 민사청구권을 단지 기본원칙에 따라서만 판결하도록 제한되고 그 외에는 피해자를 민사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피해자지원법 제9조 제3항). 연방법원은 민사청구권의 완전한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서류 첨부이 형사법원에게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 비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 때문에 민사청구권은 기본원칙에 따라서만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그 외에는 피해자를 민사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피해자지원법 9조 2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우선 형사적 쟁점을 먼저 판단하고 민사청구권을 나중에 다루는 가능성을 상기시킨다⁵²).

형사법원은 석방이후 피해자의 민사청구권에 대해 판단할 의무가 없지만, 피해자지원법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⁵³. 형사법정 판사가 피해자지원법 제9조 제3항의 의미에서 민사청구권을 기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민사법원은 이 부분에 구속된다⁵⁴).

50) 연방법원판결 124 IV 137 (140).

51) 연방법원판결 124 IV 49 (52).

52) 연방법원판결 123 IV 78 (83).

53) 연방법원판결 125 IV 153 (157); 124 IV 13(20).

54) 연방법원판결 125 IV 153 (158).

7. 판 결

7.1.4. 보상과 원상회복의 문제

피해자지원법 제11조 이하에 따라 절차를 단순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형사절차의 중지를 기본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⁵⁵⁾. 아무런 동기 없이 칼로 미성년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민사상 피해보상소송을 이끌도록 요구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지원법 제11조 이하에 따른 보상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피해자지원법의 목적과 의미에 반한다고 판결했다⁵⁶⁾.

범행이 스위스에서 행해졌거나 범죄행위의 결과가 스위스에서 나타났다면 직접적 피해자는 그의 거주지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 형법 제346조가 규정한 것처럼 범죄행위가 실행된 곳의 관할 관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범죄행위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가능한 한 하나로 통일하고 상이한 법원관할을 회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위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⁷⁾.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 또는 범죄의 결과가 외국에서 나타난 사례에서 동일한 속고가 적용된다. 통일된 법원관할과 관련하여 직접적 피해자의 거주지에서의 법원관할만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등등하게 대해지는 사람은 피해자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보상이나 원상회복을 주장해야 한다(피해자지원법 제11조 제3항)⁵⁸⁾.

피해자지원법의 의미에서의 민사 청구권은 민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지원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에 대한 보충적 요구사항들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⁵⁹⁾.

55) 연방법원판결 123 II 1 (3).

56) 연방법원판결 123 II 1 (4).

57) 연방법원판결 124 II 507 (509).

58) 연방법원판결 124 II 507 (509).

59) 연방법원판결 125 IV 161 (163).

연방법원은 원상회복에 대해 다양하게 의사를 표명했다. 연방법원은 보상의 이런 측면이 구 연방헌법 제64조(현재 연방헌법 제124조) 첫 문장에서 규정한 지원에 속하고 때문에 피해자의 재정상황과 상관없이 보장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입법자가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의 보장과 함께 의식적으로 헌법규정을 초월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⁶⁰. 원상회복활동에 대한 지출은 피해자의 수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침해의 경중과 특이 상황의 존재에 달려있다. 그에 따르면 입법자는 국가가 모든 경우에 원상회복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⁶¹. 게다가 연방법원은 피해자지원법 제12조 제2항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을 완벽하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원상회복으로써 합계금액의 지불을 정당화한다면, 원상회복은 몇몇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수입의 한계의 경우)⁶². 다른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피해자지원관청은 원상회복활동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기본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⁶³.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법정 비교에 대한 것이었다. 법정 비교는 연방 사법에서는 규율되지 않았고, 때문에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예속되어 있는 계약의 일종이다⁶⁴. 연방법원은 이 비교가 피해자지원관청들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⁶⁵. 또 다른 사례에서는 산정하라고 표현되었다: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규정한 피해자지원법 제12조 제2항은 원상회복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어떤 규정도 내포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지원법 제13조 제2항은 단지 보

60) 연방법원판결 125 II 169 (173).

61) 연방법원판결 125 II 169 (174).

62) 연방법원판결 125 II 169 (174).

63) 연방법원판결 124 II 8.

64) 연방법원판결 124 II 8 (11 이하).

65) 연방법원판결 124 II 8 (15).

7. 판 결

상 산정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원상회복의 산정은 규율하지 않고 있다. 연방법원은 피해자지원법 제13조 제2항이 원상회복을 위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결을 상대화했다⁶⁶⁾. 이는 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원상회복 산정시 민법적 기본원칙으로부터 동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견해이다⁶⁷⁾. 그럼으로써 입법자가 피해자지원법 제13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청구구권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 입법자에게 어떤 편 집적 실수도 없다: 이 규정은 보상 산정을 위해서만 유효하다⁶⁸⁾. 그러나 이것은 개별 사례에서 원상회복 산정시 피해자의 “본질적” 공동책임만을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⁶⁹⁾. 허용되지 않은 데모에서 쿠르트족에 의해 다친 데모참가자의 사례에서 범인의 상해행위와 비교 (구체적 사례에서 데모참가자에 대한 터키 대사관 직원의 적합성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반응)하여 피해자의 공동책임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실었다⁷⁰⁾. 또 다른 사례에서 연방법원은 원심이 원상회복의 완전 거부를 통해 이의제기자의 자기책임에 너무 많은 비중을 산정하고 그럼으로써 피해자지원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⁷¹⁾.

게다가 연방법원은 보상은 피해자지원법의 시스템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포괄적이고 완전하면서 입은 피해와 상관없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지원법은 단지 적극적 권리의 흠결을 막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범죄행위자가 불명확하거나 도주했거나 지불능력이 없거나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혼자 감수해야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⁷²⁾. 법원은 사회보험활동(1981.3.20의 교통사고보험에 대한 연방법(UVG)에 따른

66) 연방법원판결 123 II 210 (214); 121 II 369 (373-375).

67) 연방법원판결 123 II 210 (216).

68) 연방법원판결 123 II 210 (216).

69) 연방법원판결 123 II 210 (216).

70) 연방법원판결 123 II 210 (217).

71) 연방법원판결 124 II 8 (18).

72) 연방법원판결 125 II 169 (173).

완전보상)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부당한 대우를 원상회복하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교통사고보험에 대한 연방법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액에 직면하여 피해자지원법에 따른 보상은 고려되지 않는다⁷³⁾.

연방법원은 또한 절차상 무보수성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피해자가 국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바아트(Waadt) Kanton의 시스템이 연방법률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했다⁷⁴⁾. 이 시스템은 쉽게 시작되거나 남용되는 절차 유보하에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기각되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과 소송보상을 부과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무보수성은 이런 진행과정을 금지한다⁷⁵⁾. 연방법원은 더 나아가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4항과 제16조 모두 자문지원의 영역에서 피해자에게 Kanton의 무보수의 상소절차에 대한 요청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⁷⁶⁾

경찰을 통한 정보제공이 불완전하거나 피해자가 적시에 활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의 2년간의 소송 제기기간은 피해자에게 반할 수 없다(비교. 7.1.3)⁷⁷⁾.

피해자지원법 제17조에 따라 Kanton의 의해 규정된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유일한 상소관청은 자유로운 검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검사권은 상소관청이 재량문제에서 행정의 판단여지를 고려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⁷⁸⁾.

마지막으로 연방법원은 피해자지원법 부록 1번에 의해 수정된 형법 제60조 제1항에 대해 언급했다. 이 규정은 “누군가가 보험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야기한 자가

73) 연방법원판결 125 II 169 (175 이하).

74) 연방법원판결 124 II 507 (510); 123 II 425 (429).

75) 연방법원판결 124 II 507 (510).

76) 연방법원판결 124 II 507 (510).

77) 연방법원판결 123 II 241 (245 이하);

78) 연방법원판결 123 II 210 (212).

7. 판결

그 손해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가정된다면, 판사는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또는 비교를 통해 확립된 최고 피해보상액까지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동의한다: a. 피고인에 의해 지불된 벌금; b. 압류된 재산과 재산가치 또는 평가비용의 차감하의 압류재산의 가치상환; c. 비용대체요구; d. 평화보증금액(Friedensbuergschaft)". 연방법원은 이 규정이 피해자지원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범죄행위 피해자에게는 효과적인 지원이 행해져야 하고 법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피해자지원법 제1조)고 판결했다. 그 때문에 형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피해’ 내지 ‘피해대체’라는 개념은 넓게 해석해야 하고 재산피해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부당행위도 내포되어야 한다⁷⁹⁾.

7.2. 1993-1998년 판결을 평가하기 위한 Kunz/Keller의 연구

7.2.1. 출발점

Kanton들이 Kanton 판결에 대한 평가 및 개괄을 원했기 때문에 3차 보고기간까지의 명령에 따라 1993-1998년간 Kanton의 최고법원의 모든 판결을 제출해야 했다. Kanton들은 VD Kanton만을 제외하고 이 의무를 이행했다.

연방법무부는 베른 대학 형법 및 범죄학연구소 칼 루드비히 쿤즈(Karl-Ludwig Kunz) 교수에게 Kanton의 판결(연방법원의 판결을 참고로)을 평가하라는 과제를 위탁하였다. 쿤즈 교수와 필립 켈러(Philipp Keller)가 함께 한 이 연구는 1999년 12월에 종결되었다⁸⁰⁾.

79) 연방법원판결 123 IV 145 (149).

80) 이 연구서의 제목: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피해자지원법에 대한 판결”이었고, 연방법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전화 031/322 47 44, 팩스. 031/322 84 01, 메일: cornelia.perler@bj.admin.ch).

7.2.2. 진행과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조사했다:

1. Kanton의 우선적 판결이 피해자지원법의 어느 규정에 존재하고 전체 스위스의 “통일된 원칙”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2. 피해자지원법의 어떤 규정들이 Kanton에 따라 상이하게 다루어졌고 실무가 어떻게 통일화되었는가?
3. 피해자지원법 제11조 이하의 따른 보상과 원상회복 측량을 위해 어떤 기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4. 피해자지원법 제3조 내지 제11조 이하에 대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활동들이 보상되는가?
5. 법적 설명 필요성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6. 법적 변경 필요성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연구는 총 252건의 판결을 근거로 한다: 연방법원의 47건의 판결과 Kanton이 연방법무부에 제출한 Kanton 최고법원의 205건의 판결.

7.2.3. 저자들의 결론

이 연구의 결과는 저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피해자지원법에 대한 Kanton의 최고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친화성과 남용방지라는 긴장관계에서 유동적이다. 특히 피해자 개념은 통일되지 않게 해석된다: 연방법원에서는 넓게, 바젤과 취리히 Kanton는 좁게 해석.

그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지원법 제2조 제1항의 의미에서 피해자 고유성에 대한 판단은 일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법률은 사법관청에 의한 형법적 판단으로부터 독립된 피해자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 법률의 3개의 다양한 기본사항들, 즉 피해자를

7. 판 결

자문하고 피해자의 소송지위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것들은 단지 공통된 피해자 개념이라는 묶음을 통해서만 합쳐질 수 있다. 스위스 연계기구회의에서 모든 지원을 요청하는 자들이 반대사항이 증명될 때까지 피해자로서 간주된다고 추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지원 청구권을 위해 범죄행위의 피해자라는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충분하다⁸¹⁾는 최근 연방법원의 판결은 Kanton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⁸²⁾.

유사한 문제점들이 범죄행위개념에서도 나타난다: 형법적 의미에서 범죄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에서는 단지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피해자지원법에 따른 범죄행위와 피해자지위의 확립은 형법적 기준과는 달리 행정을 통해서 성립한다. 형법과 독립된 범죄행위 개념에 대한 이런 입장은 판결에서 반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영향을 미친다. 범죄행위 개념은(미약한 증거제시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⁸³⁾”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연방법원의 입장 대신에, 저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문지원 청구권을 위해 범죄행위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와 반대로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해 법정에서 확립된 구성요건해당성에 맞추는 것이 더 단순화될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들과 경우에 따른 공동책임이 피해를 본 사람의 피해자 지위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불명확하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청구권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⁸⁴⁾ 침해의 강도에 있어서 원인이 된 폭력사용이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한지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때문에 피해자의 독자성을 간주하는 선결조건에 대한 결여

81) 연방법원판결 122 II 211.

82) 비교. 6.4절.

83) 연방법원판결 122 II 211.

84) 연방법원판결 120 Ia 157, 125 II 265.

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지원법의 기본생각에 반한다. 특히 수많은 범죄학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본모델로서“가난하고 힘없는”피해자 상에서 출발하고 이런 모델에서 벗어나면 피해자보호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동책임 때문에 자문지원을 거절하는 것은 위 법률의 정신과 문언에 반한다⁸⁵⁾. 매춘부의 강간이나 마약분야에서의 상해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영위책임에 반대하는 대신에 연구의 저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원상회복은 기본적으로 공동책임과 무관하게 지불되는 것이 좋다. 특히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공동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은 불만족스럽다: 이는 유가족들의 고통의 범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의 공동책임이 인과관계를 중단시키는 단지 특별한 경우에만 원상회복이 거부될 수 있다 - 그러나 이는 특별법의 규정이 필요없다⁸⁶⁾. 이런 고려하에 연구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권의 각 조건들을 변경하라고 추천한다:

1. 육체적·정신적·성적 보존성에 있어 의사에 반해 상해를 입었다고 신빙성있게 주장하는 자는 자문지원 청구권을 가진다. 피해자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와 동등한 사람들과 경우에 따른 범죄행위의 증인들은 (정신적) 보존성의 독자적 침해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한 자문 청구권이 있다.
2. 범죄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는 인격권 보호 청구권, 배석 및 절차법상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 형사소송에서의 민사청구권 등을 가진다.
3. 법원에 의해 구성요건해당성에 맞다고 입증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육체적·정신적·성적 보존성을 침해받은 자는 보상과/또는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진다.

85) 연방법원판결 122 II 315.

86) 연방법원판결 124 II 8.

7. 판 결

자문지원과 보상을 구분 짓는 문제에 있어 딜레마가 있다: 동일하지 않은 Kanton간의 실무를 통일시키기 위해 어떤 활동이 자문지원으로 어떤 활동이 보상으로써 유효한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행위이후 첫 3주에만 즉시지원을 시행하는 취리히의 해결책은 연방법원에 의해 비난받았다. 결정적인 것은 시각이 아니라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의 긴급성이다. 일반적 구분의 다른 가능성은 지금까지 판결에서 전혀 토론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준들이 불명확하다. Kanton의 상이한 실무는 특히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범죄행위가 외국에서 저질러졌다면 이들은 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자문지원 청구권을 가진다. 눈에 띄는 기준이 없다면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피해자들 역시 보상받는 것이 좋다.

절차법의 영역에서 Kanton의 법원들 스스로 절대적이고 기본권에 근거하는 청구권이 피해자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에서 범익형량을 시도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피해자지원법 7조 2항에 따른 진술거부권이 신앙감정(평가)의 창출과 관련이 있는지와 이 조항이 친척이라는 것 때문에 내적 친밀관계로 인한 성범죄를 위해 다양한 Kanton에서 규정한 진술거부권의 배제와 일치하는지 명확히 하라고 추천한다. 게다가 피해자지원법 제9조 제1항은 오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많은 Kanton들의 설명과 반대로 위 조항은 형사법원 판사들이 석방 또는 절차를 종결할 때 민사상 요구사항들을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지 않았다. 피해자지원법 제8조 제1항 b에 따른 피해자의 항소가능성은 형사상 쟁점이 민사청구권에만 저촉하는 한, 형사상 쟁점에서 가능할 때 문제가 된다. 범죄인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관심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⁸⁷⁾ 범인들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의 민사청구권들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

87) 연방법원판결 121 IV 317.

한 가능성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네바와 취리히 Kanton은 모험적 구조로 회피해야 했기 때문에 소송제기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그 기간을 민사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서 시작하게 하는 유연한 규정을 선택할 것이다(보통의 경우 자문기구에 대한 경찰의 정보제공).

상이한 Kanton의 실무를 통일시키기 위해 연구의 저자들은 Kanton의 피해자지원기구(환언하면 보상관청)에 의해 표현된 모든 합계의 국가적 통합을 검토하라고 추천한다.

8. 피해자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8.1. 연방법무부의 위탁으로 행해진 연구에 대한 개괄

연방법무부는 1995년 Kanton의 보고에 대한 보충에서 제네바 법대의 입법연구기술평가센터인 CETEL에 피해자지원법의 집행에 대한 평가연구를 피해자의 시각에서 다루라는 위탁을 주었다. 1997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피해자지원법 규정들의 효과성이 조사되었다. 이 연구와 함께 공표이후 CETEL은 다시금 위탁을 받았다⁸⁸⁾. 이 2개의 평가 결과들은 1차 내지 2차 피해자지원보고서에서 요약되었다⁸⁹⁾.

1999년 연방법무부는 즉시지원을 조사하게 했다. 공표이후 취리히에 있는 사회연구소, 즉 DAB에게 위탁이 주어졌다.

8.2. 즉시지원에 대한 DAB의 연구

우줄라 피히터(Ursula Fiechter), 프리스카 기슬러(Priska Gisler), 소냐 쿤더트(Sonja Kundert), 클라우디아 리보니(Claudia Riboni)에 의해 작성된 연구는 “3. 피해자지원법의 효과성과 집행에 대한 부분 평가/피해자의 초기배려와 초기 정보제공(즉시지원)이라는 제목이다: 경찰, 자문기구 및 다른 활동가들의 연합활동”.

위 연구의 핵심은 즉시지원과 정보전달의 문제들, 자문기구 · 병원 · 경찰 · 다른 활동가들의 조율에 대한 문제들 및 자문의 질적 측면이다. 아르가우(Aargau), 프라이부르크(Freiburg), 글라루스(Glarus), 취리히(Zuerich) Kantone에서의 집행이 조사되었다.

88) 2개의 연구에 대한 정확한 제목과 관련 출처, 비교. 1.2.절 각주 1.

89) 1차 피해자지원보고, 10절; 2차 피해자지원보고 13절.

8.2.1. 정보전달

피해자지원으로 이어지는 방법

피해자지원으로 이어지는 방법은 상이하고 다양한 것으로 입증된다. 해당인들이 처음에 경찰을 접한다면, 경찰은 피해자지원에 대해 알려 줄 법적 의무가 있다. 경찰이 정보제공의무를 상세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받은 해당인 들을 항상 그 제공에 대해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이들은 부가적 안내와 많은 경우 친구, 친지, 전문가 및 다른 기구(예를 들어 병원, 여성의 집)의 사람들에 의한 수차례에 걸친 요구사항들을 필요로 했다. 이런 방법의 원인들로서 여러 이유가 고려될 수 있다. 개별 경찰관들이 정보를 정확하지 않거나 상세하지 않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경찰 신문 중에 지원에 대해 고려되는 몇몇 경우에도 부적합하다. 많은 피해자들은 지원필요성에 대한 상황이나 생각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해당인 들은 종종 피해자의 역할과 동일시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현실에서 정보제공은 주고받는 복합형태에서 발생한다.

정보제공은 설문 받은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상이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Kanton의 차이점들을 제시한다. 프라이부르크(Freiburg) 도시처럼 취리히(Zuerich)와 빈터투(Winterthur) 시내 중심에서는 확실한 구조와 교육받은 노하우를 가진 독립적인 사회기구 내지 전문기구들에 기인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아르가우(Aargau)와 글라루스(Glarus) Kanton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Kanton의 기구들(글라루스(Glarus): 사회기구에 연결하여 이에 상응하는 상담기관 내지 소관부서(아르가우(Aargau): 여성중심부)와 함께 Kanton을 통한 활동계약 체결을 증대해야만 했다. 이미 존재하는 권능에 대한 재수용은 정보전달에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지원법 발효 이전에 이미 활동한 기구들은 이미 지역

에 잘 알려져 있었던 반면, 새로이 설치된 기구들은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증대해야 했다.

공개업무

당사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지원법은 대중에 잘 알려져있지 않다. 좀 더 나은 공개를 위한 제안은 학교, 의사와의 많은 접촉과 라디오·텔레비전·언론에의 잦은 출연이다. 대중에의 등장 이후 새로운 문의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여 몇몇 자문기구들은 이를 폐지했다. 언론업무는 일반적으로 반응적으로 발생한다. 홍보책자들, 포켓용 책자들, 메모들 및 연간보고서들은 독일어권 스위스지역에서는 독일어로, 로만디(Romandie) 지역에서는 주로 프랑스어로 제시되어 있다.

도달성

1가지 경우만을 예외(교통사고피해자)로 하고 모든 조사대상이었던 자문기구들은 각각의 Kanton 중심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많은 자문기구들은 업무시간에 문을 열었다. 24시간 내내 도달성은 경찰, 병원, 주어진 손의 응급전화 143이나 여성의 집을 통해 유지되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현재 시간에 대해 충분하고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자문가들이 약속을 잡을 때 상대적으로 유연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8.2.2. 조율과 연합

설문조사된 자문기구들에 있어 조율 내지 연합은 당사자 상호간의 정보전달, 전문가(변호사, 심리치료사)의 정보교환 및 정보전달을 의미한다. 공동의 목표착수와 목표추진에 대한 원래의 협력에 대한 각각의 출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이미 몇 년 전부터 피해자문제를 다루었던 자문기구들이 일상 실무에서 매우 독립적으로

8. 피해자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활동하고, 비공식적 차원에서 빈번하게 연합한다. 다양한 Kanton에서 지침서 내지 상급 부서를 통해 조율되는 연합의 구조적 형태가 부각되었다. Kanton이 단지 하나의 피해자지원기구만을 설치했다면 그 업무의 핵심은 개개의 특별제공사항에 대한 전달이다.

경찰에 대한 자문기구들의 접촉은 피해자지원법이 발효된 이래 향상되었다. 이 접촉은 더욱 더 공식화되었다. 양 당사자의 기본적 문제점으로써 상이한 중점과제와 결여된 상호간의 이해가 빈번하게 부각되었다. 자문가들은 피해자를 위해 즉시적 지원을 영위해야만 하는 반면, 경찰은 가능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수집을 다룬다. 의사들은 법에 따른 피해자지원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문기구들과의 협력이 - 아동보호그룹의 범위는 제외하고 -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들의 관심사는 오히려 피해자지원기구들쪽에 있다. 의사들은 환자를 적합한 전문가에게 연결해주는 독자적 가능성을 조직 내적으로 다룬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소위 단려진 시스템을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인터뷰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은 다양한 당사자들 사이의 조율활동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전문가로부터의 정보전달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자문기구들은 Kanton간 내지 국내 수준에서 더 나은 조직화된 정보교환에 상이한 의미를 부여했다. 왜냐하면 이는 상이한 자문현실과 관련이 있어 토론에서 빈번하게 공통분모가 발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8.2.3. 자문의 질적 측면

자문실무

자문기구의 업무종사자들은 대개 사회적 또는 학위에 의한 직업물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사회적 업무: 사회자문; 치료: 심리학 등등), 특히 고객들에게 심리사회적 자문을 제공한다. 이때 자문가 들은 많은 경우 실무에 근접한 출발점을 지향한다.

특정 피해자에 전문화되지 않은 자문기구들의 구성원들은 피해자 지원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점점 분화되는 과제구분 결과 이들은 자문에서 중요한 측면(법률적 또는 심리치료적 정보들)들이 점차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야 하고 항상 과도한 시간을 요구하는 행정을 위해 사라져간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재정적 수단과 관련하여 강한 정당성의 압박은 피해자들의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문과 관련하여 질적 안전의 보다 더 중요한 구성요소는 대다수의 자문가에 대한 내적 비전(intervision)과 감독이다; 그 외에도 또한 대중에 대한 자문기구들의 활동에 대해 투명성을 전달하는 연간보고서도 언급된다.

피해자들은 자문기구들로부터 받은 전문적 지원활동에 매우 만족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문가들이 언제든지 피해자를 위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을 전달한 자문가의 감정이입능력을 평가했다. 도움받은 즉시적 지원과 관련하여 심리사회학적 지원이 확실히 중요했다. 물질적 영역에서의 업무활동, 예를 들어 여성의 집에서의 체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변호사에게로의 연락은 심리사회학적 견지에서 또한 중요했다. 자문활동의 질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는 비교가능성들이 결여되어 있다.

재교육

연방에 의해 원조된, 독일어권 지역과 서부 스위스 지역에 있어서 사회활동에 대한 대학내 피해자지원과정은 피해자지원법에 대한 지식의 전반적 영역을 전달한다. 제공된 개괄은 질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개별 전문영역의 자문전문가들에게 있어 정보들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각각의 주제별 수요에 따라 재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을 만들거나 적어도 내용적으로 동참권을 가지는 것을 더

8. 피해자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선호할 것이다.

노이엔부르크(Neuenburg) 소재 스위스 경찰연구소(SPIN)에 의해 제공된 국가적 피해자지원 교육을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조직 구성원이고 Kanton 차원에서 교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만 졸업한다. 병원근무자들은 공식적으로 피해자지원 영역에서 어떤 교육도 담당하지 않는다. 아동보호그룹의 개별 팀 구성원들과 병원내 자문기구들이 정보의 지속적인 전달을 위해 노력한다(취리히(Zuerich)와 아르가우(Aargau)). 이 팀들은 재교육 행사를 규칙적으로 시행하고/하거나 전문가위원회에서 같이 일한다.

모니터링

미래의 모니터링 증대에 대한 생각 또는 상상은 자문가들에게 있어 전혀 현실적인 주제가 아니다. 이는 자문팀들은 이미 질적 통제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개별 문제들을 토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팀내 사례 토론과정이다, 물론 Intervision과 감독행위도 포함된다. 이런 자기 모니터링은 자문가의 욕구에 상응하고, 자문활동을 지원한다. 최근에 연방통계청에 전달된 연방에 의해 부과된 양적 텍스트는 많은 자문가들에게 부담을 준다. 양적 텍스트와 통계가 모니터링으로써 얼마나 의미심장한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8.2.4. 저자들의 결론들

연구저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음 사항들이 특히 중요하다:

- 정보전달은 오늘날 부분적으로는 주는 원칙, 대개는 받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당사자들은 독자적 발의 내지 친지를 통해 피해자 지원기구를 매우 빈번하게 찾게 된다. 경찰은 단지 불규칙적으로 당사자들을 자문기구로 보내는 것에 성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제공캠페인으로 국민의 자각형성이 진척될 수 있다. 개별 프로젝트들은 이미 실행되고 계속되는 착안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활동들은 Kanton과 연방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 피해자지원을 위한 중요한 활동들을 병원근무자들은 주로 임의적으로 하지만, 경찰은 정보제공의무에 구속된다. 양 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경찰에 있어 정보의 계속 전달은 정형화되어 제공되고 통제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교류 내지 범인중심시각에 대한 초점은 다소간 각각의 공무원의 개별적 권한과 개인적 관심사에 달려있다. 병원근무자들과 피해자지원기구들간의 지식전달은 병원근무자들의 독자적 활동과 규모 때문에 지금까지 매우 적었다.

이런 확인과 관련하여 경찰과 병원근무자들은 계속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특히 정보교환이 어떻게 더 잘 조직화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 조율과 연계의 형태와 범위는 Kanton간에 매우 상이하다. 공동 회의 · 정보교환 · 공식적 등장을 조직화하는 중앙통합조직에 의한 개별 자문기구들의 조율(예를 들어 프라이부르크(Freiburg))이 의미심장한 것으로 입증된다. 다른 측면에서 수년에 걸쳐 생성된 수많은 비공식적 연계망이 보여지거나 측정될 수 없지만, 정보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계와 협력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은 - 어떤 기구 또는 어떤 전문가에게 문의했는지에 상관없이 - 피해자지원법에 대한 정보들과 충돌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위 법률은 주는 원칙의 증대를 표현하고 있다. 자문기구들은 그들의 연계노력에 대해 Kanton들에 의해 지원받아야 한다.

- 당사자들은 받은 지원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만족도를 제시한다. 당사자와의 교류에 관한 한, 권한들은 명백하게 자문기구들에 있

8. 피해자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다. 즉시적 효과를 가진, 양호하고 실무에 근접한 지원은 오늘날 영위된다. 그러나 행정비용이 이성적 범위를 능가하기 시작하거나 인원제한에 근거한 활동이 더 이상 완전한 만족도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만 자문에서는 질적 상실이 걱정된다는 것이 평가에서 보여진다.

- 대부분의 기구들은 이미 질적 안전 형태를 실행한다. 질적 안전이 Kanton의 감독의무와 얼마나 일치될 수 있는지는 공동의 컨셉에서 장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수집의 결과들은 지금까지 자문 실무로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 그 때문에 결과와 연결된 비용이 자문가들에게는 지금까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행정적으로 소비되는 통계적 통제절차 대신에 예를 들어 문제화된 것을 토론하고 경험을 교환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규칙적으로 개최되는 회의같은 다른 기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통제 - 사회학적 시각에서 - 신뢰와 관련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는 공동으로 다뤄져야 한다.
- Kanton의 피해자지원법의 집행에 대한 곳에서 연방은 통제기능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지원에 투자하는 정치적 의사가 결여된 곳에서 자문가들과 법적 위탁을 받은 기타 관련자들이 홀로이 그 곳에 있다. 자문기구들의 부담이 빈번하게 이런 독자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 기구들의 독자성, 편파성과 독립성은 즉시지원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곳에서 가장 잘 보장된다. 스위스 연계기구회의의 추천들은 이에 대해 좋은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자문가들이 계속해서 사례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실한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 부분 1993-1998년간 경험의 평가

9. 연방의 증대지원

9.1. 증대지원의 컨셉트

6년간 연방은 연평균 4,470,000 프랑켄을 Kanton들에게 지원했다. 그 금액들은 Kanton의 재정능력과 인구수에 달려있다. 이 금액은 Kanton에서 피해자지원 증대를 위해 규정되었다(피해자지원법 제18조 제2항). 연방의 재정지원은 시스템 증대를 위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첫 시기에 Kanton를 지원할 목적이었다. 연방의 금액은 Kanton 전체 지출의 약 1/3을 차지했다⁹⁰⁾.

금액 사용에 있어 사용목적이 정확화되었다. 돈은 우선 자문기구들의 설치 및 운영(피해자지원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포함)에 사용되어야 했다. 보상관청을 위한 비용 역시 연방의 재정 수단으로 충당될 수 있었다. 피해자지원법 제11조 이하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활동이 증대지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되었다.

1998년 말 아직 집행되지 않은 연방의 재정금액은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집행상태에 있는 부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잔여금액은 소급 지출될 수 있다.

9.2. 자문기구들의 급속한 설치

연방의 재정지원과 함께 자문기구들간의 연계망의 증대가 진척되었다: 1995년 초 각 Kanton은 적어도 1개의 자문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90) 연방간행물 1990 II 995면.

9. 연방의 증대지원

그러면서 증대지원은 목적을 달성했다. 다음 해에 자문기구들의 숫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다양한 재조직과 관련하여 자문기구들의 숫자는 67개(1994년 말)⁹¹⁾에서 61개⁹²⁾로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모든 Kanton들에 적어도 1개의 문의기구가 있다.

9.3. 만족스럽지 못한 사회복지시스템

기대와는 달리 첫 해에는 큰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다. 자문과 인프라를 위한 Kanton의 지출은 -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 수의 증가와 병행하여 - 법률이 발효된 이후 오히려 계속적으로 증가했다⁹³⁾. 동시에 자문 받은 사람당 지출은 감소했다⁹⁴⁾. 연방의 증대지원이 전체 지출의 약 1/3(보상과 원상회복 포함)에 달하는 것이 좋다는 입법자의 목적은 199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도달되었다⁹⁵⁾. 그러나 1998년 증대지원은 전체 지출비용의 18.4%만을 차지했다⁹⁶⁾. 그러니까 Kanton 지출의 80%가 같은 해에 Kanton 스스로에 의해 지출된 것이다.

Kanton에 송금된 금액은 단지 부분적으로 각각의 욕구에 상응했다. 첫 2년동안 거의 Kanton의 절반(12개)이 1993/94년 증대지원을 위한 연방의 금액을 완전히 사용했다. 14개의 Kanton들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⁹⁷⁾. 1996년말 아직 11개의 Kanton들이 아직 사용하지 못했던 이전 연도의 증대지원금액을 집행하고 있었다⁹⁸⁾. 출발단계의 말에 아직 6개의 Kanton들이 증대지원을 완전하게 사용하

91) 1차 피해자지원보고, 3.2.1.절.

92) 2000년 5월.

93) 5.4.3.절.

94) 5.4.3.절.

95) 5.2.절.

96) 5.2.절.

97) 1차 피해자지원보고, 7.절.

98) 2차 피해자지원보고, 5.2.절.

지 못했다⁹⁹⁾. 총 지출된 26,870,000 프랑켄중에서 560,926 프랑켄(2%)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¹⁰⁰⁾.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금액은 취리히(Zuerich)나 바젤(Basel)같은 위성지역을 가진 Kanton의 실질적 지출비용의 작은 부분만을 충족했다. 두 Kanton들은 이미 1994년말에 다른 분배시스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1998년말까지 증대지원의 시간적 제한에 직면하여 법률개정이 폐지되었다¹⁰¹⁾.

회고해 보면 입법자에 의해 선택된 지원 형태가 모든 시각에서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보여진다. 연방에 의해 Kanton에 부여된 과제는 공개적으로 구성되었고 Kanton들에게 많은 활동영역을 남겨두었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Kanton들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받는 것이 좋다. 동시에 Kanton에게 - Kanton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 지출금액을 지급하려고 했었다. 명확히 정의된 과제를 섭렵하기 위한 적정 비용이 소요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은 - 총체적 재정지원의 목표¹⁰²⁾ - 시작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연방의 경우 Kanton의 전체 지출비용이 얼마나 많을지 예상할 수 없었다. 해마다 준비되어야 하는 전체 금액은 측정되어야 했다. 지출에 따른 사회부조에 있어서와는 달리 이 금액은 연방에 의해 지출되어야 했다. 이에 사용된 배분해결책, 즉 재정능력과 거주자 수에 따른 해결책은 완전히 객관적이었다고 입증되지는 않았고, Kanton의 지출비용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규모가 - 마찬가지로 정치적 결정 - 획기적이다¹⁰³⁾.

99) 5.3.절.

100) 5.3.절.

101) 1차 피해자지원보고, 11.8.절.

102) 연방간행물 1987 I 391면.

103) 비교. 5.4.절.

10. 자문 영역

10.1. 자문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증가수지

자문기구들을 통한 지원은 커다란 필요에 상응한다. 자문기구에 문의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증가했다. 1998년 11,165명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문기구에 자문을 요청했다¹⁰⁴⁾. 입법자의 기대(피해자지원법의 의미에서 약 10,000명의 (직접적) 피해자 중 약 3,300명이 자문기구에 문의) 역시 뛰어넘었다.

1999년에 실행된 DAB의 연구에 영향을 미친 피해자들은 - 1994년 다른 연구의 범위에서 설문 받은 사람들처럼¹⁰⁵⁾ - 제공된 지원에 만족했다¹⁰⁶⁾.

10.2. 자문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2차 피해자지원보고에서 확립한 것들은 1997/98년 보고기간에 증명되었다¹⁰⁷⁾. 자문지원은 무엇보다도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것이었다¹⁰⁸⁾. 자문 받은 사람들의 약 3/4이 여성이다. 대부분의 자문을 구하는 자들은 성범죄의 피해자이다: 1993-1998년간 자문받은 41,857명 중 43%가 성범죄, 35%가 상해, 3%가 살인죄의 피해자였다¹⁰⁹⁾. 자문받은 직·간접의 피해자 81%가 법률

104) 2.2.절, 이 통계에서는 제공된 지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 영위된 지원은 1회성 전화대화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자문기구로 승인된 여성의 집에서 장기간 또는 며칠에 걸친 숙식을 거친 자문대화 역시 포함한다.

105) 1차 피해자지원보고, 10.21.절.

106) 8.2.절.

107) 비교, 2차 피해자지원보고서의 14.2절 - 14.6절.

108) 2.4.절.

109) 2.6.절 그림 2F에서 요약.

10. 자문 영역

작성당시 예상에 따른 주목표 그룹에 속한다¹¹⁰⁾.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문제공에 대해 대화한다: 자문 받은 사람들의 27%가 1997/98년에 20세 미만이었고, 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문기구에 거의 문의하지 않았다¹¹¹⁾. 자문 받은 사람들의 약 7%가 교통사고범죄의 피해자였다¹¹²⁾.

10.3. 경찰을 통한 자문기구로의 전달

피해자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은 첫 심문시 피해자에게 자문기구에 대해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려준다(피해자지원법 제6조 제2항). 이런 방법으로 자문기구와 연결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불명확하다. 자문기구들의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피해자의 극히 일부만이 경찰과의 접촉을 가졌다: 제시된 보고에 따르면 자문기구에 문의한 모든 사람들의 약 1/4 이상이 잠재적 범인에 대한 형사절차 내지 이에 상응하는 선행절차에 참여했다(1995/96년 25%, 1997/98년 29%)¹¹³⁾. 게다가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있어 현장에서 스위스의 피해자지원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은 지금까지 결여되어 있었다¹¹⁴⁾. DAB 연구¹¹⁵⁾가 보여주는 것처럼 입법자에 의해 세심하게 선택된 경찰과 자문기구간의 협력모델은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중에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첫 심문에서 평가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많은 경우 어렵다. 경찰 시각에서 첫 심문시 배려를 위해 외부의 피해자지원자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면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할 것이다.

110) 연방간행물 1990 II 977면 이하.

111) 2.4.절, 그림 2C.

112) 2.6.절.

113) 전체적으로는 2.7.절.

114) 최근 상황, 비교 6.6.절.

115) 8.2.절.

10.4. 자문기구의 상이한 요구사항

1995/96년에서처럼 취리히(Zuerich), 베른(Bern), 제네바(Genf) Kanton의 자문기구들이 신규 자문요청자들을(1998년 모든 새로운 자문요청한 사람들의 60%) 가장 많이 돌봐줬다¹¹⁶. 상이한 인구밀도를 고려한다면 최고 정점에 있는 취리히(Zuerich) Kanton을 샤프하우젠(Schaffhausen) Kanton이 쫓아오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유사한 많은 거주자를 가지고 있는 Kanton은 종종 매우 상이한 수치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Kanton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특히 높을까? 1997/98년에 자문을 요청한 사람들의 거주지에 따른 수치가 처음으로 제시된다¹¹⁷. 그러나 취리히(Zuerich), 루체른(Luzern), 슈비츠(Schwyz) 3개의 Kanton의 자문기구들은 이에 상응하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사례의 20%에서 자문기구들은 거주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없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 Kanton외의 자문기구에서 상담한 사람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거주지가 파악된 사람들의 단지 9%만이 다른 Kanton에서 온 사람들이다.

신규 자문요청을 가장 많이 제시한 Kanton(취리히(ZH), 베른(BE), 제네바(GE))들은 비록 인구밀도를 고려하더라도 가장 많은 보상과 원상회복요청(신규로 접수된 요청의 56%)을 제시한다¹¹⁸. 이런 요청은 항상 범죄발생지 Kanton에 접수되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어떤 선택권도 없다(비교. 피해자지원법 제11조 제1항과 제3조 제5항). DAB의 연구¹¹⁹)는 더 많은 가능한 관련성을 제시한다. “피해자지원”이라는 표현이 항상 피해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성자문기구”에 문의하는

116) 2.2.절.

117) 2.5.절.

118) 4.2.절과 2차 피해자지원보고, 14.7.절.

119) 8.2.절.

10. 자문 영역

것이 더 쉬울 듯하다. 사회봉사업무에의 연결 또한 놀라게 할 수 있다. 공개되는 업무가 많을수록 자문을 요청하는 당사자도 많아진다.

10.5. 즉시적 지원 조직

DAB 연구¹²⁰⁾는 입법자가 제출한 다양한 전문가들간의 협력과 조율¹²¹⁾이 범죄행위이후 직접적으로 결여되거나 피해자지원외에, 예를 들어 아동보호그룹의 범위내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자문기구들은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 제2문과는 반대로 언제든지 즉시적 지원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즉시적 지원의 개념은 원래 법률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좁은 의미로 이해된다: 법률에 따르면 즉시적 지원은 - 의학적 지원에서 이송시 지원을 거쳐 심리학적 배려와 법적 자문까지 - 모든 종류의 지원을 의미한다¹²²⁾. 현실적으로 이런 경향은 즉시적 지원은 자문기구들 스스로 영위한 업무활동으로 이해되고 그 개념은 무엇보다도 무보수와 비용부담적(긴급한 장기간이 아닌) 조치간의 구분을 짓기위해 사용되는 것(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4항)¹²³⁾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24시간 즉시적 지원을 하라는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따라서 폐지를 요구받게 된다¹²⁴⁾.

10.6. 자문기구들을 통한 재정지원의 의미

많은 자문기구들의 평가에 따르면 재정지원은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¹²⁵⁾. 이런 평가는 2년전의 보도로 충족된다¹²⁶⁾. 그러나 지난 보고서

120) 8.2.절.

121) 연방간행물 1990 II 972면 (번호 211.1).

122) 연방간행물 1990 II978면 이하.

123) 비교, SVK-피해자지원법의 추천, 여백번호 19번 이하.

124) 15.3.절.

125) 2.8.절.

126) 2차 피해자지원보고서의 2.7.절.

간에 증대지원의 사용에 대한 정산에 있어서 Kanton들의 보도에 따르면 장기간의 지원을 위한 비용은 피해자지원법 3조 4항에 따라 현저하게 증가했다¹²⁷⁾. 이것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증가수치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개별사례에서 보장된 기부금이 증가한 것인지는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다. 질문은 현실에 대한 평가의 범위에서 아마도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몇몇 Kanton들에서 자문기구들은 좁게 제한된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동의할 수 있다. 더 높은 기여금에 대한 것이라면 자문기구가 아닌 행정관청이 결정한다¹²⁸⁾.

10.7. 운영시각에서의 변화

자문기구들의 숫자는 67개(1994년말)에서 61개¹²⁹⁾로 감소되었다. 그라우뷘덴(GR) Kanton은 9개의 지역 사회봉사사업무를 연결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했다; 해마다 소수의 사람들만 신청했기 때문에 1997/98년 2개의 사무실을 가진 새로운 자문기구가 설치되었다. 다른 Kanton들은 조직을 필요에 맞추었다. 이때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 전체 스위스를 고려한다면 - 배려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증가수치에 상응하지 않을 정도로 증가되었다¹³⁰⁾는 것이 눈에 띈다. 자문기구, 즉시적 지원과 장기간의 지원에 있어 자문받는 사람당 지출비용은 1995년 1,456 프랑켄에서 1998년 1,166 프랑켄으로 감소하였다¹³¹⁾.

DAB 연구범위¹³²⁾에서 설문 받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행정비용이 증가하였다. 재정지원보장(행정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표출되었다. 1999년 여름 테스트된 연방통계청의 새로운 통계설

127) 5.4.3.절 그림 5F.

128) 비교. 예를 들어 취리히 Kanton의 피해자지원명령 2조.

129) 2000년 5월.

130) 2.10.절과 2.2.절.

131) 5.4.3.절.

132) 5.4.3.절.

10. 자문 영역

문지가 행정적 부대비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¹³³⁾.

10.8. 비밀엄수의무

피해자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문기구구성원의 비밀엄수의무는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입증된다.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 추천에 따르면 특정 구성에서 후견재판소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¹³⁴⁾ - 이것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는 불명확하다. 연방법무부는 법률상황을 검토한다.

133) 6.4.절.

134) 여백번호 44. 추천에 대해서는 비교. 6.4.절.

11.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

11.1. 미결사건의 증가 수치

보고기간 말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례의 수치는 점차 증가했고 1998년 말에 1,436건에 달했다 - 1998년에 1,231건은 신규 접수된 요청¹³⁵⁾. 이미 지난 보고에서 언급된 것처럼 종결되지 않은 사례의 높은 수치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다. 한 가지 이유는 국가적 보상이나 원상회복을 주장하기 위한 기간이 확실히 짧다는 것이다(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 이 규정이 종종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요청을 접수하고 동시에 절차의 중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비교.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 추천의 여백번호 75¹³⁶⁾). 개별 사례들이 객관적 근거없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11.2. 빈약한 예비비들

1997/98년의 보고기간에 처음으로 예비비의 수치가 수집되었다. 이런 가능성은 놀랍게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1998년 1,231건의 새로운 요청이 접수되었다 - 그리고 단지 54건의 사례에서 예비비가 지출되었다(1997년 820건의 요청, 35건의 지출)¹³⁷⁾.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게 예비비를 지불하게 하는(비교. 피해자지원법 15조 a, b), 입법자에 의해 규정된 가능성은 실무에서 대개 필요하지 않거나 무시되었다.

135) 4.3.절 그림 4C와 4.2.절 그림 4A.

136) 비교. 6.4.절.

137) 4.2.절 그림 4A와 4.3.절. 취리히(Zuerich), 아펜젤 아웃서호덴(Appenzell Ausserrhoden)은 어떤 언급도 없었다.

11.3. 활동수령자의 특징에 있어서의 일관성

활동수령자의 특징에 대한 2차 피해자지원보고의 확인은 1997/98년 보고기간에 증명되었다¹³⁸⁾. 자문¹³⁹⁾뿐 아니라 보상과 원상회복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빈번하게 보장되었다(1995-1998년 64%¹⁴⁰⁾). 이 영역에서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해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1993-1994년에 영위된 1,287건의 활동중 37%가 상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졌다. 두 번째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활동(32%)이고 세 번째가 살인범죄와 관련된 활동(19%)이다¹⁴¹⁾. 입법자의 예상에 따른 핵심목표그룹은 자문의 영역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도달된다(사례의 56%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활동, 32%가 성적 보존성에 대한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활동, 사례의 총 88%가 연방정부의 보고에 따른 핵심목표그룹에 대한 활동¹⁴²⁾).

11.4. 보상의 기대수치

해마다 승인된 보상의 수치는 해마다 현저하게 상이하고 1997년 이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1995년 62건, 1996년 72건, 1997년 56건, 1998년 48건¹⁴³⁾). 조합된 활동(보상과 원상회복활동)의 수치는 지난 4년간 증가되었다(1995년 41건, 1996년 99건, 1997년 97건, 1998년 121건¹⁴⁴⁾). 원상회복의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상의 지분비율을 고려

138) 비교. 2차 피해자지원보고의 14.2.절 - 14.6.절.

139) 10.2.절과 2.4.절.

140) 4.5.절; 1993/94년 비교. 1차 피해자지원보고의 5.3.3.절.

141) 4.6.절, 그림 4H.

142) 연방간행물 1990 II 977면.

143) 4.4.절, 그림 4D와 2차 피해자지원보고, 4.4.절, 그림 9. 1차 피해자지원보고에는 어떤 언급도 없다.

144) 비교. 앞의 각주.

할 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¹⁴⁵). 1995년 이래 보상 평균 비용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1995년 14,697 프랑켄, 1998년 7,058 프랑켄¹⁴⁶). 경미한 사례수치와 피해자지원명령 제4조에 따른 보상이 500 프랑켄과 100,000 프랑켄에 달할 수 있다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런 평균 수치는 거의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피해자지원법의 공표시 해마다 약 100 - 200건의 성공적 보상요청을 예상했다. 현실은 이런 진단에 상응했다.

11.5. 원상회복: 시스템의 회귀

집행된 원상회복의 수치(1995년 78건, 1996년 113건, 1997년 180건, 1998년 302건¹⁴⁷)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기에 조합된 활동의 증가수치(1995년 41건, 1996년 99건, 1997년 97건, 1998년 121건¹⁴⁸)가 있다. 동시에 원상회복의 평균 비용이 1995년 9,871 프랑켄에서 15,245 프랑켄으로 증가했다¹⁴⁹). 원상회복의 정점은 침해에 따른다; 법률이나 명령 모두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은 원상회복의 승인에 있어 어떤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심각하게 해당하고 특별 상황이 이를 정당화한다면, 피해자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피해자는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¹⁵⁰).

145) 4.4.절.

146) 4.4.절.

147) 4.4.절, 그림 4D와 2차 피해자지원보고, 4.4.절, 그림 9, 1차 피해자지원보고는 어떤 언급도 없다.

148) 비교. 앞의 각주.

149) 4.4.절.

150) 연방법원판결 121 II 369 E. 3c.

11.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

입법자는 원상회복을 보상시스템의 보충으로 보았다: 연방정부는 그의 보고¹⁵¹⁾에서 원상회복청구권은 없고 관청은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고 출발했다. 원상회복의 목적은 보상규정을, 특히 상위 수입한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확실한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물질적 손해는 크지 않지만 원상회복으로써 합계금액의 지불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발전은 기대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다. 보통의 경우 수입과 충족되지 못한 피해에 부합하는 보상이 아니라 입은 침해를 지향하는 원상회복을 형성한다: 1998년 집행된 모든 활동의 10%만이 원상회복 요소가 없는 보상이었다¹⁵²⁾. 입법자에 의해 규정된, 구분된 시스템은 실제로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 생각된 복잡하지 않은 규정에 의해 밀려났다. 법적 현실성은 입법자의 상상에 상응하지 않는다.

입법자에 의한 원상회복 측정은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와 판례는 큰 의미가 있다. 룩소(Luxor)에서의 범죄행위는 보상관청이 Kanton의 한계를 초월하여 실무로 통일 - 연방법률의 집행을 위해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지원법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시킨 것¹⁵³⁾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은 연방법원 앞에까지 갔고 이 영역에서 더 많은 명확성을 위해 노력했다¹⁵⁴⁾.

11.6. 짧은 고소기간

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2년간의 고소기간은 너무 짧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취리히(Zuerich), 제네바(Genf) Kanton은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다 나은 지위로 하려는 규정들을 Kanton

151) 연방간행물 1990 II 991면.

152) 4.4.절, 그림 4D.

153) 6.7.2.절.

154) 7.1.절.

법률에서 공포했다¹⁵⁵). 연방법원은 예외를 허용한다¹⁵⁶). 의회의 제안 (1994.12.16.의 Motion Goll 94.3574, 1995.3.24. 국회의원에 의해 심의요청으로 이양) 은 기간의 폐지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5년으로의 연장을 요구한다¹⁵⁷)(2000.3.16. Leuthard 00.3064 심의요청).

155) 제네바: 6.1.절, 취리히: 2차 피해자지원보고, 15.3.절.

156) 연방법원판결 123 II 241.

157) 2차 피해자지원보고 11.3.절과 15.3.절.

12. 그 외 측면들

12.1. 재정지원의 다양한 가능성간의 불명확한 관계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본적으로 범죄발생지 Kanton의 관청에 의한 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진다(피해자지원법 제11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 관청은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승인할 수 있다(피해자지원법 제12조 제2항). 보상관청 외에 자문기구들이 피해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보장한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2항 a). 피해자의 개인적 관계에 근거하여 보여지는 한, 자문기구들은 의사·변호사선임비용·소송비용같은 확실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4항).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 추천에서 Kanton에서 기타 비용들을 부담하는 한계에 대한 상이한 기준들이 보상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두드러진다¹⁵⁸⁾. 연방법원은 동일 종류의 활동이 자문기구에 의해 재정지원되거나 보상을 거쳐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¹⁵⁹⁾. 피해자에게는 재정지원의 2가지 형태에 대한 상이한 전제조건들에 직면하여 이런 개괄할 수 없는 상황이 불만족스럽다.

12.2.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의 진행 과정

룩소(Luxor)에서의 범죄행위 결과에 대한 해결은 피해자가 가능한한 즉시 배려되고 정보가 대중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피해자가

158) 여백번호 76, 비교. 6.4.절. 취리히 Kanton의 실무로, 비교. OH!, 실무상 피해자지원에 대한 논문(Zeitschrift fuer Opferhilfe in der Praxis), 1/97, 5면 이하.

159) 연방법원판결 125 II 234 E. 2 d와 1997.9.17. 연방법원의 판결, 부분적으로 공개되거나 내지는 OH!에 요약됨, 실무상 피해자지원에 대한 논문(Zeitschrift fuer Opferhilfe in der Praxis), 2/97, 7면 이하.

있는 범죄에 있어서 연방의 관련하에 Kanton간의 집중된 협력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2.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에 대한 피해자의 새로운 절차상 권리는 피해자를 위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법률수준에서의 지속적인 향상은 철저히 생각해 봐야 한다¹⁶⁰. 법률적용시 부분적으로 불안전성이 지배한다¹⁶¹. 현행 법률은 아동의 특별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¹⁶².

12.4. 교통사고 피해자

피해자지원법의 발효이후 피해자지원법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또한 유효한지 실무에서 논란이 있다. 1996.2.15의 판결로 연방법원은 피해자지원법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거나 죽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확정했다¹⁶³. 교통사고로 행한 범죄와 관련하여 자문기구를 찾은 사람의 수는 전체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지만(1988년 새로이 자문을 요청한 모든 사람의 7.2%), Kanton별로 차이가 심하다¹⁶⁴. 2개의 Kanton은 명백하게 교통사고 피해자를 다루는 자문기구들을 설치했고¹⁶⁵, 이것은 자문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 내지 원상회복은 드물게 이루어졌다¹⁶⁶. 교통사고에서 확대된 안전보호는 이런 형태의 피해자지원의 경미한 견인력을 행사하는데 주력한다.

160) 2차 피해자지원보고, 13절, 14.9.절과 15.6.절.

161) 3절과 7.2.3.절.

162) 14.절.

163) 연방법원판결 122 IV 71.

164) 2.6.절.

165) 2.9.절.

166) 4.6.절.

12.5. 판례

Kanton의 판결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듯이 피해자지원법 적용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¹⁶⁷⁾. 불만족스러운 것은 특히 피해자지원의 기초, 피해자개념이 상이하게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연방입법자는 Kanton에게 어떤 재량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다.

167) 7.2.3.절.

13. 발전의 평가

13.1. 달성 목표

피해자지원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그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피해자지원법 제1조 제1항).

피해자지원법 발효 이후 첫 6년간 피해자지원에 대한 평가는 피해자지원법의 바탕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효과적인 피해자지원이 증대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자문기구들의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문기구들의 업무활동을 요구한다. 자문기구의 전문적 독자성(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1항)은 경우에 따라 당사자가 감히 공식 기구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자문기구들의 지원은 사실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한다.
- 피해자지원이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와(피해자지원법 제2조 제1항) 상관없이 보장되는 것이 자문에 있어 매우 의미 있다: 사례의 3/4에서 잠재적 범인에 대한 어떤 절차도 계류되어 있지 않다. 자문기구에 문의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성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에서 잠재적 범인에 대한 형사절차로부터 피해자지원의 독립성이 자문에서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답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상응하는 질문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흠결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의미는 자문에서의 의미처럼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집행된 보상의 수치는 예상에 상응한다.
- 경찰은 피해자의 특별 상황에 세심할 정도로 민감했다.

13. 발전의 평가

범죄피해자의 지원규정의 도입은 필요했다. 스위스 피해자지원의 3가지 축 컨셉(Drei-Saeulen-Konzept)은 보장되었다: 범죄행위 피해자는 재정지원뿐 아니라 심리학적 자문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자문과 보상으로 효과적인 도덕적·재정적 지원이 영위되고 형사소송에 대한 연방법적 규정들이 피해자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13.2. 불완전성

다양한 개별목표들이 지금까지 도달되지 못했다. 집행수준에 대한 그 외 노력들은 필수불가결하다. 게다가 피해자지원에 대한 평가는 확실한 목표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다양한 법적 수단들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지원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아직도 만족되지 못했다:

- 피해자지원법과 상응하는 기구들이 피해자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 범행 이후 직접 집행된 지원이 항상 조율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피해자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 제2문(24시간 즉시 지원을 영위할 수 있는 조직을 기술)은 몇몇 Kanton들에서는 죽은 규정이었다.
- 자문기구들의 과제는 Kanton마다 매우 상이할 정도로 비중이 틀리다. 대단한 지원을 행하는 수많은 자문기구들을 가지고 있는 Kanton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어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지원을 단지 전달만 하는 자문기구들도 있었다.
-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부분적으로는 자문기구들을 거쳐, 부분적으로는 보상관청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런 2가지 방법론은 상이한 전제조건들과 권한들에 직면하여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 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고소기간은 너무 짧다, 특히 미성년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몇몇 Kanton들은 그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연방법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했다. 짧은 기간은 비생산적 기간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불명확한 배려적 요청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 형사절차에서 확실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구체적인 경우 피해자를 위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예를 들어 피해자지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진술거부권).
- 피해자지원은 Kanton마다 상이하다¹⁶⁸⁾. 이런 불평등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대표될 수 있고, 연방과 Kanton의 기타 조치를 통해 보충되는¹⁶⁹⁾ 연방법적 최소규정 컨셉에서 법률 수정시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질문된다.

13.3. 기대하지 못한 발전

- 특별한 경우 계획된 - 원상회복은 보상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사례의 많은 경우 원상회복 형태로 피해자에게 재정적 국가지원이 수행된다. 이런 경향으로 보통의 경우 수입에 따른 보상과 특별한 경우 원상회복에서 출발하는, 입법자에 의해 규정된 시스템이 의심된다.

168) 특히 많은 차이점은 자문영역에서 존재한다(예를 들어 조직과 관련하여: 행정으로 통합되거나 독자적 자문기구로 됨, 의뢰인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 또는 특정 피해자로 전문화된 자문기구들, 지원제공과 관련하여: 지원을 집행하는 또는 지원을 전달하는 자문기구들, 제한된 또는 무제한의 재정권한을 가진 자문기구들, 비용을 제시하거나 (전달하는) 자문기구들. 차이는 그 외에도 형사절차에서와 보상이나 원상회복 절차에서도 존재한다(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연장된 고소기간).

169) 비교. 1.1.절.

14. 장래 집행을 위한 결론들

14.1. Kanton 차원에서의 조치들

피해자지원법의 집행은 우선 Kanton의 과제이다. 다음과 같은 - 법률에 의해 단지 부분적으로만 규정된 - 측면들이 점차 고려된다면, Kanton의 차원에서 피해자지원의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다:

- 지속적인 공개업무가 확실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 정보는 자주 대화하는 외국어로 번역되는 것이 좋다.
- Kanton은 누가 범행이후 직접 피해자지원이라는 의미(특히 첫 심리 사회적 지원)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 의학적 긴급업무와 아동보호그룹 및 예를 들어 소방과 같은 그 외 긴급업무부서는 즉시 지원의 조직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개별적인 경우 정보는 피해자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을 통해서뿐만 이 아니라 즉시지원에 연결된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 좋다.
- 2차 피해자지원보고에서 이미 요구된 것처럼 자문기구들의 제공은 노동자의 욕구에 점차 부응해야 한다.
- Kanton내에서 피해자지원의 조율을 위해 Kanton내 조율기구의 설치가 의미있음이 입증된다. 게다가 이런 기구의 설치는 Kanton간의 접촉과 Kanton과 연방과의 접촉을 쉽게 한다.
- 자문기구들은 다른 업무활동을 제공하는 부처와(특히 사회봉사업무) 지역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자문기구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득력 있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14.2. Kanton간 차원에서 의 조치들

다양한 영역에서 Kanton간 차원에서 의 협력업무의 집중이 보여진다:

- 지역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공개업무가 지역적인 공개업무보다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출판하는 여러 외국어로 된 정보제공안내책자나 국가기념일이 검토되어야 한다.
- 자문 영역에서 지역적으로 전문화된 협력업무는 공동의 정치적 목표설정을 통해 보완되는 것이 좋다. Kanton들이 자문기구들간의 연계망과 관련하여 장래의 변화에 대해 서로 협상하거나 지역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 피해자가 별로 없는 Kanton들은 자문지원을 위해 통합하라고 추천된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1항).
- 보상과 원상회복 영역에서 Kanton간의 경험교환이 배려되고 중앙 문서수집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룩소(Luxor)에서의 범죄행위의 유가족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다뤄진 기본원칙이 측정하기 위해 계속 발전되었고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 피해자지원전문가의 적은 수치에 직면하여 - 이미 2차 피해자지원보고에서 요구된 것처럼 - Kanton의 한계를 초월하는 특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협력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에서 Kanton에게 계속해서 자문을 해주면서 도와줄 것이다.

14.3. 연방자원에서의 조치들

연방법무부는 EDA와 함께 외국 체류기간 중 범죄피해자가 된 스위스 국적 사람들에게 스위스에서 의 피해자지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

는 안내책자 발행과 명령을 발하는 것에 노력한다.

수많은 피해자와 복잡한 문제들을 가진 형사범죄에서 연방법무부는 필요시 해결책을 찾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컨셉에서 이런 경우 다양한 관청의 권한들을 규율하라고 규정되었다. 1999년 EDA는 암살, 유괴, 비행기납치, 스위스에서 외국인 피해자 또는 외국에서 스위스인 피해자가 생기는 재난 같은 위기상황을 위한 특별팀을 만들었다. 이 팀은 또한 연방법무부와 협력업무를 안전하게 한다. 게다가 특별한 사건에서 Kanton에게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법적으로 구축된 가능성이 존재한다(피해자지원법 제18조 제3항).

2000년부터 통계수집이 자문기구들과 보상관청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통계청은 Kanton들과 함께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다.

셋째 부분 법률 수정

15. Kanton들의 시각

15.1. Kanton에 의한 법률개정필요에 대한 평가

Kanton들은 1997/98년에 대해 보고하라는 명령에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라고 요구받았다.

9개의 Kanton(베른(BE), 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프라이부르크(FR), 그라우뷘덴(GR), 루체른(LU), 졸로투른(SO), 취리히(ZH))들의 견해에 따르면 긴급한 개정필요가 존재한다. 3개의 Kanton들은 개정이 의미있다고 평가한다(아르가우(AR), 유라(JU), 테신(TI)). 3개의 Kanton들은 개별항목과 관련하여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한다(제네바(GE), SG, 투르가우(TG)). 니트발덴(NW)과 쾅(Zug) Kanton은 자신들의 독자적 경험을 근거로 어떤 긴급한 개정도 필요없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anton들은 검토는 의미있다고 간주한다.

6개의 Kanton들은 개정의 긴급성에 대해 언급함이 없이 변화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AG, 글라루스(GL), 노이엔부르크(NE), 샤프하우젠(SH), 슈비츠(SZ), VD).

15.2. Kanton의 가장 중요한 개정관심사

보고범위내에서 Kanton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개정 목표들이 일컬어졌다:

- 현재 규정은 헌법의 위임을 초월한다(노이엔부르크(NE)), 그 때문에 개정은 원래의 생각에 집중되는 것이 좋다(졸로투른(SO)). 피해자지

15. Kanton들의 시각

원법의 의미와 정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테신(TI)).

- 피해자지원의 기본을 형성하는 자문과 배려는 재정활동과 비교하여 중심이 되어야 한다(아르가우(AR)).
- 법률의 약점은 치유되어야 하고(루체른(LU)), 한계 문제는 명확해져야 한다(졸로투른(SO)). 또한 새로운 것들은 검토되어야 한다(테신(TI)).
- 개정을 통해 단일화된 법률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베른(BE), 그라우빈덴(GR)).
- 개정은 제한된 재정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그라우빈덴(GR), 루체른(LU)). 원상회복에서 재정적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AG, 베른(BE)).

1998년 말 연방법무부는 피해자지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사에 대한 개괄을 제시했고, 스위스 연계기구회의(SVK-OHG)가 알도록 이를 배포했다. 다양한 Kanton들이 이 목록에 주목했고 특히 중요하거나 결여된 항목들에 대해 언급했다(베른(BE), 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루체른(LU)).

개별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관심사들이 구성되었다¹⁷⁰⁾:

일반항목

- 의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베른(BE)). 특별한 관심은 가정폭력에 몰두해야 한다(졸로투른(SO)).
- 미성년의 피해자들에게는 법익충돌시 직무상 법률전문가를 두어야 한다(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 피해자의 동참의무 내지 고소의무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그라우빈덴(GR)).

170) 이미 1996년 언급된 개정항목들: 비교, 2차 피해자지원보고 7.7.절.

- 예방프로젝트와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도입되어야 한다(줄로투른(SO), VS)).

법률시스템/다양한 지원제공책의 합의의 향상

- 즉시 지원과 장기간에 걸친 지원의 한계는 분명히 설명되는 것이 좋다(샤프하우젠(SH)). 자문기구들의 재정지원(즉시지원과 장기간에 걸친 지원)과 보상을 통한 재정지원은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AG, 아르가우(AR), 베른(BE), 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프라이부르크(FR), 슈비츠(SZ), 투르가우(TG), 취리히(ZH)).
- 자문기구를 통한 변호사선임비용의 부담과 무보수의 법률 배려는 상호 합의를 봐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불평등은 제거되어야 한다: 무보수의 법률배려를 받는 자는 나중에 재산이 생길 경우 상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자문기구를 통한 비용부담의 경우 어떤 상환의무가 없다(AG, 베른(BE)).
- 보충성은 명확하게 구축되어야 하고 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아르가우(AR)). 다른 국가 활동가들과 구별하기 위한 조율규정이 필요하다(취리히(ZH)).
- 사회보장에 대한 연결기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고보험에 의해 거절된, 사고결과 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행하는 것은 의미없다(베른(BE)).
- 피해자지원과 사회지원 및 아동보호에 대한 관계는 명확해야 한다(투르가우(TG)). 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원상회복이 사회지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립되어야 한다(제네바(GE)). 범죄피해자가 사회지원으로부터 지원받는다면 원상회복만이 집행되어야 한다(슈비츠(SZ)).

피해자개념과 활동범위

- 피해자개념은 검토되어지거나(성 갈렌(SG)) 정확히되어야한다(VS).

15. Kanton들의 시각

- 피해자지원은 심각하게 해당하는 피해자로 제한되어야 한다(니트발텐(NW)). 전쟁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실행되어야 한다(졸로투른(SO)).
- 피해자지원은 구분되어야 한다: 보상이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피해자개념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한 반면, 자문을 위해서는 광의의 피해자개념이 사용되는 것이 좋다(그라우뷘덴(GR), 졸로투른(SO), 투르가우(TG)). 보상(투르가우(TG))과 원상회복(그라우뷘덴(GR))이 고의범 피해자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 교통사고피해자들은 피해자지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아르가우(AR), GL, 그라우뷘덴(GR), 니트발텐(NW), 슈비츠(SZ)).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피해자지원이 특정활동, 특히 자문에 제한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글라루스(GL), VD).
- 가족들은 피해자와 개인적 관련이 있을 때에만 보상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VS). 간접적 피해자(아동 제외)를 위한 원상회복은 배제되어야 하거나 경제적 상황에 의존해야 한다(베른(BE)).

외국인 피해자/외국에서의 범죄

- 외국과 관련된 경우 피해자지원은 고려해야 한다(루체른(LU), VS).
-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지원은 자문에 제한된다(투르가우(TG)).
- 외국에서의 피해자에 대해 어떤 재정지원활동도 집행되지 않는 것이 좋다(그라우뷘덴(GR)). 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원상회복은 그곳 생활비용에 맞춰야 한다(베른(BE)). 마찬가지로 자문기구들의 활동은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에서 피해자가 된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야 한다(베른(BE), 취리히(ZH)); 특히 기타 지원과 관련한 제한들이 가능할 것이다(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자 문

- 24시간 자문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그라우뷘덴(GR), 투르가우(TG)).
- 즉시지원이 제3자에게 왜 무보수여야 하는가(취리히(ZH))?
- “기타 지원(AG)” 내지 “기타 비용(AR)”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기타 비용과 관련하여 법정 양도가 도입되는 것이 좋다(베른(BE), 그라우뷘덴(GR)).
- 비밀유지의무는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폐지될 수 있어야 한다(아르가우(AR), 베른(BE), VS). 가족내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 자문기구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주어져야 하고 다른 기구들에게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 자문기구의 자유선택이 제한되어야 하거나(취리히(ZH)), Kanton간 비용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베른(BE)).
- 여성의 집 체류비용부담에 대한 규율이 규정되어야 한다(베른(BE), 샤프하우젠(SH)).
- 피해자지원법 발효 이전에 피해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자문은 정지되어야 하거나(그라우뷘덴(GR) 검토되어야 한다(취리히(ZH)).

보상과 원상회복

- 보상의 평가는 항상 복잡하고(AG, 제네바(GE), 그라우뷘덴(GR), 투르가우(TG)) 향상되거나 단순화되는 것이 좋다(프라이부르크(FR)); 평가시스템은 도표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제네바(GE)).
- 평가할 수 있는 수입 계산시 수입금액의 2/3로 계산하고 이와 반대로 연금은 완전히 고려하는 것은 의미없다. 이런 규정은 보완활동 영역에서는 공정하나(충동적 사고), 범죄피해자의 보상과 관련해서

15. Kanton들의 시각

- 는 아니다(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 원상회복은 검토되어야 한다(성 갈렌(SG)).
- 원상회복 폐지는 검토되어야 한다(아르가우(AR), 글라루스(GL)GL, 그라우뷘덴(GR), 노이엔부르크(NE), 투르가우(TG), 취리히(ZH)).
- 원상회복청구권의 전제조건들은 강화되어야 한다(AG, 글라루스(GL)GL, 그라우뷘덴(GR), 졸로투른(SO), 슈비츠(SZ)). 위험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감수해야 하는 안전위험성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베른(BE)).
- 원상회복의 최고액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AG, 슈비츠(SZ), 투르가우(TG)).
- 보상과 원상회복의 범위는 검토되어야 한다(유라(JU)).
- 단순하고 신속한 절차는 불가능하다(베른(BE)).
- 보상시스템이 생활유지비용의 선불과 비교할 수 있는 모델로 대체 되는 것이 좋은지 의문스럽다. 이것은 확실한 활동이 상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유라(JU)).
- 증거력은 규율되어야 한다 - 피해자가 부가적으로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베른(BE)).
- 범죄행위에 책임있는 사람은 보상 내지 원상회복이 형사판결에서 확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관청이 추후 상환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최고액까지 표명할 수 없다(제네바(GE)).
- 보상관청은 1명의 아동에게 승인한 금액의 행정처리를 위해서와 기대하지 못한 부모에 의한 폭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후견재판소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좋다(베른(BE)).

재난의 임의성

- 재난의 경우 진행과정은 규율되어야 한다(루체른(LU), VS).

피해자지원의 재정

- Kanton간 자문지원을 위한 비용분담은 검토되어야 한다(그라우빈덴(GR)). 자문비용은 거주지 Kanton(투르가우(TG)) 내지 범행지 Kanton(샤프하우젠(SH))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 Kanton간의 비용상계는 일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성 갈렌(SG)). (비교. 자문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한 위의 소견).
- 연방과 Kanton간의 비용분담이 검토되어야 한다(프라이부르크(FR)). 연방은 피해자지원법을 적용할 때 통제와 조율을 확실히 하기 위해 Kanton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노이엔부르크(NE)).

고소기간

- 고소기간은 너무 짧다(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제네바(GE)), 특히 유년시절에 피해자가 된 사람들에게는(AG, 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프라이부르크(FR)). 형사절차의 종결이후 보상 또는 원상회복에 대해 사후 요청될 수 있는 것이 좋다(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 경찰은 자문기구들뿐 아니라 고소기간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바젤-시골(BL), 바젤-도시(BS)).
- 계류중인 보상 및 원상회복요청의 높은 수치는 고소기간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바젤-시골(BL)).

형사절차

- 피해자지원법 제9조 제4항은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한다(베른(BE)), 왜냐하면 이 규정은 범인의 나이에 따라 피해자의 불평등한 대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VS).
-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되는 것이 좋다(VS).

15. Kanton들의 시각

다양한 기타 관심사

- 피해자는 형집행중에 있는 범인들이 지불불능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좋다(AG).
- 연방차원에서의 조율은 유지되는 것이 좋다(VS, 노이엔부르크(NE)); 피해자들이 포괄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법무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알려주는 것이 좋고 특히 자문기구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좋다(노이엔부르크(NE)).
- 범인과 피해자간의 명상이 더 많이 요구될 수 있는지 검토되는 것이 좋다(테신(TI)).

15.3. 재정부-, 법무부-, 경찰지휘부의 관심사

1999.3.16에 Kanton의 재정지휘부간의 회의는 피해자지원 영역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비용에 직면하여 연방입법자들이 긴급히 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연방법무부에 편지를 보냈다. 재정 지휘부 역시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지원의 적용영역에 대한 검토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제를 요구한다. 더 나은 피해자지원을 찾으려는 활동(피해자지원여행(Opferhilfetourismus))는 회피되어야 하고, 원상회복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

Kanton의 법무부처와 경찰부처 지휘부의 회의는 1999.11.24. 편지로 연방정부 대표자인 루트 메츨러아르놀드(Frau Ruth Metzlerarnold)에게 다양한 수정관심사를 제공했다. 위 회의의 견해에 따르면 활동필요는 피해자개념과 적용영역에서 존재한다. 즉시지원, 기타 지원과 보상은 명확하게 상호간에 구분되어야 한다. 보상평가는 단순화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은 대체없이 삭제되어야 한다. 피해자지원의 보충성은 기타

의 지원에서 법정 양도로 강화되어야 하고 피해자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소급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15.4. 1999.11.5. 국가적 피해자지원에 대한 회의

연방법무부는 “피해자지원의 효과성과 집행: 확대기간의 종결이후 결산 - 개정관심”이라는 주제로 1999.11.5. 국가적 피해자지원에 대한 회의를 조직했다. 이 회의에 100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 중 대다수는 피해자지원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다양한 발표이후 참가자들이 그룹별로 토론했다. 토론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로 이어졌다:

a) 법률의 적용영역

- 실무에서 자문지원요청권이 허용되는 사람들의 범위는 법률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범죄행위가 고려에서 빠졌거나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 보통 보존성 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처럼 피해자의 개별 범주가 법률의 적용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배제는 법률의 목적과 의미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자개념을 총체적으로 의문스럽게 할 것이다. 연방법원처럼 침해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이런 배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b) 즉시 지원과 장기간에 걸친 지원

- 자문기구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그와 반대로 Kanton간의 부담상계는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고 여러 자문기구에 지원을 요청하는 위험성은

15. Kanton들의 시각

경미하거나 소홀히 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통제시스템은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시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 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의 의미에서 “장기간”의 지원은 지불보장으로써 단지 보충적으로 유지된다. 즉시 지원을 장기간에 걸친 지원과 구분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이다. Kanton간 합의하는 범위보다 연방차원에서 이런 쟁점을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법률은 최저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자문기구들은 상호간에 지원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의 조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보수의 법적 배려와 사회지원은 피해자지원과 반대로 기본적으로 상환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실무에서 피해자지원법에 따른 법률지원보다 종종 앞서가는 무보수의 법적 배려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 법률지원 영역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c) 피해자권리보호

- 피해자의 인격권은 언론의 요구를 능가해야 한다: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는 신문에 난 보도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비밀유지에는 언론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지원법 제5조 제3항은 공허해질 것이다.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은 언론전달, 언론과의 회의, 사법관청과의 인터뷰로 족하다.
- 피해자지원법 제4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절대적 비밀유지의무는 자문기구들이 피해자와 신뢰의 기초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와 반대로 자문기구들은 아동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후견재판소에 대해 신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범죄행위의 증인이 되었던 미성년자는 현재 피해자지원법 제5조의 인격권보호에서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법률의 적용

영역은 확대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권리는 성적 보존성의 침해 경우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모든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는 내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피해자에게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과 수사관사를 통한 심문을 보다 더 바람직하게 조율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이 영역은 지침서에서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
- 어떤 경우에도 범인이나 범인과 접촉한 자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충돌 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권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적 영역에 해당하는(피해자지원법 제7조 제2항)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은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범죄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내적 영역에 대한 질문과 다른 내적 질문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다면 조사가 포괄적이지 않거나 중단될 위험에 빠진다. 몇몇 경우에 피해자는 주변을 통해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진술거부는 피해자에게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다. 사법관청의 질문권을 제한하고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적 영역에 대한 이런 질문을 허용하는 해결책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전의 생활(예를 들어 유년시절 성적 학대)에 대한 질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중요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d) 보상과 원상회복

- 실무는 피해자를 위한 원상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원상회복이 사회에 의한 공격의 승인이기 때문이다.

15. Kanton들의 시각

- 원상회복을 위한 수입한계 내지 최대금액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보상에 대한 남용적 요청과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의 도구화는 제지되어야 한다.
- 원상회복이 어린 아동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되어야 한다.
- 범인과 피해자간의 명상을 도입하려는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지원법의 의미에 상응하지 않고, 강간이나 가정 폭력의 경우 적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실무에서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피해보상규정에 관심이 있다. 수입에 따른 보상시스템은 무조건적인 -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 전제조건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고 이것을 고려하는 노력을 피해자에게 야기한다.

e) Kanton간 그리고 연방과 Kanton간의 협력업무

- Kanton간의 연대성은 여성 폭력피해자가 여성의 집에서 체류할 때 보다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 연방은 교육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
- 연방은 질적 통제와 모니터링에 몰두하는 것이 좋다.
- 연방은 스위스 문서처리중앙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연방은 기존의 조직과의 협력에서 내·외국 재난의 조율을 부담하는 것이 좋다.

f) 비용

- 피해자지원법의 개정을 단지 비용차단이라는 쟁점하에서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피해자지원법은 입증된 대로 요구에 상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지원비용은 사회적·의학적 비용에 있어 장기간의 절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보충성원칙의 범위는 실무에서 불명확하다.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피해자지원은 제3자에게 활동책임을 경감시켜

서는 안 되고, 상환절차가 논쟁을 통해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 비용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활동을 해당하는 제3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사회보험 또는 사립보험을 통한 비용부담이 피해자지원에 앞서간다고 법률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피해자지원과 사회지원 사이에서 정확한 한계가 도출되어야 한다: 사회지원은 피해자지원에 반해 부담이 줄어들 수 없다.
- 사회보장에서처럼 피해자지원에서도 교통사고에서 어떤 활동들이 책임보험에서 수용되는지 명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g) 그 외 다른 영역들

- 대중과 전문가에 대한 정보제공이 향상되어야 한다.
- 경찰의 피해자지원업무가 점점 더 중시되어야 한다.

16. 의회의 제안

다음과 같은 의회의 제안들이 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1997-1999년 연방의회에서 다루어졌다.

- 1994.12.16. 의회의 발의 Goll 94.441(아동의 성적 학대. 향상된 보호)

1996.10.3. 국회하원은 의회에서 발의한 다수의 제안들을 따랐다¹⁷¹⁾. 그 발의들은 한편으로는 형법 개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성범죄피해자를 보다 더 향상되게 보호하기 위해, 특히 아동성학대의 경우에, 절차규정을 통한 피해자지원법의 보충을 환기시켰다. 이미 이전에 국회하원은 동일 목표를 추종하는 심의요청을 보냈었다¹⁷²⁾.

국회하원은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려고 했던 의회발의의 첫째 항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국회하원은 형법 제187조 제5항 삭제에 대한 법률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했다. 전주의회는 1996.12.12에 개정에 동의했다. 이는 1997.9.1.에 효력이 발생했다¹⁷³⁾.

그 결과 위원회는 1997.10.27.에 국회하원의 법률문제를 위해 의회발의의 제2-9항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라고 위탁할 하급위원회를 설치했다. 하급위원회는 먼저 청문을 실시했다¹⁷⁴⁾. 이들은 의회발의의 제2-5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보충적 희생양을 막기 위해 미성년의 성범죄 피해자의 심문은 긴급하게 연방차원에서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71) 연방의회관보 1996 N 1783면.

172) 연방의회관보 1996 N 909면.

173) 연방의회관보 1997 1626면 이하.

174) 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프라이부르크(FR) Kanton의 피해자지원-자문기구들의 대표자, 취리히(ZH)의 법정에서 활동하는 아동심리학자, 취리히(ZH)의 지역변호사협회의 아동보호팀의 대표자, 베른대학의 형사절차를 강의하는 강사와 고등판사, 제네바(GE)의 변호사, 대다수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 베른 Kanton 경찰의 조사팀원.

16. 의회의 제안

1998.8.31.에 법률문제에 대한 국회하원의 위원회는 연방법무부의 동참하에 하급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피해자지원법 개정 초안을 가결했다. 이 위원회는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게 의사표명절차를 실행하라고 위탁하였다.

자문 받은 그룹은 제안된 개정을 일반적으로 호의적으로 수용했다. 절차중단가능성에 대한 규정만이 격렬하게 비판받았다. 위원회는 1999. 8.23. 회의에서 의사표명의 결과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위원회는 반응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고 초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실에 대해 만족하였다. 동시에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의사 표명하라고 보냈다.

개정초안은 16세 미만의 미성년 피해자의 인격권보호에 해당하는 제3장까지를 피해자지원법에 새로이 도입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신규 제10조까지는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한 성적 보존성에 대한 범죄행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해자의 법정 심문권이 보장될 수 없을 때 조우는 그대로 유지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범행된 다른 범죄에 있어서 조우가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야기한다면 관청은 조우를 폐지한다. 신규 제10조^{ter}는 16세 미만의 아동심문을 기본적으로 2명으로 제한한다. 게다가 심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가의 배석하에 이 목적으로 교육받은 공무원에 의해 수행될 것을 규정한다. 심문은 적절한 공간에서 수행되고, 비디오로 진술이 녹화된다; 특이상황은 보고서에 확인된다. 두 번째 심문은 당사자들과 특히 변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한 질문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규 제10조^{quater}는 아동의 강제적 이익이 요구하고 형사소추라는 국가의 의무를 명백하게 능가한다면, 예외적으로, 그리고 피해자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로 형사절차의 정지 가능성을 규정한다. 이 경우

가능한 아동보호조치가 검사되고 필요하다면 지시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2000.3.20.에 위원회의 초안에 의사표명을 했다. 정부는 그 초안에 동의하고, 다양한 소견을 제시했는데 특히 보호조치를 위해 적합한 연령에 관해서였다.

- 1998.3.20.의 슈미트의 의회에의 신청(Motion Schried) 98.3151(아동 성행위와 관련한 조사와 형사절차)

아동과의 성행위에 관한 조사와 형사절차가 가능한 한 아동에 적절하게 구성되도록 형법 또는 피해자지원법을 개정하라고 연방정부에게 요구했다. 법률에 규정된 6년간의 평가기간 경과 이후 피해자 지원법 개정이 규정되어 있고 제시된 문제점도 국회하원에 의한 위원회가 법률문제에 대해 검토했던 골(Goll)에 의한 의회의 발의 94.441 에서처럼 동일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심의요청의 수정을 요청했다. 1998.6.26.에 연방정부는 심의요청의 형태로 의회신청을 전달했다.

그 외에도 1995.6.22. 부트곤(Budgon)의 의회신청 95.3320 과 1996. 5.14. 96.3188 법률문제에 대한 국회하원 위원회의 의회신청(아동을 위한 배려전화)들이 1999년에 3개 항으로 구성되고 전체 스위스를 위해 유효한 전화번호 147의(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화지원) 설치로 현실화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사회보장청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받는다. 유기적 지휘는 *juventute* 마다 달려있다.

보충적으로 피해자지원법 제16조 제3항의 공소시효의 폐지를 요구한 1994.12.26. 골(Goll)의 의회신청 94.3574(1995.3.24. 연방정부에 의해 심의요청된)이 제시되었다. 2000.3.16. 로이트하르트(Leuthard)의 심의요청(00.3064)은 연방정부에 의해 공소시효기간의 5년 연장과 Kanton에 의해 영위된 원상회복의 제한을 요구한다.

17. 연방법무부의 시각

17.1. 평가결과: 포괄적 개정

1993-1998년의 경험은 법률이 기본원칙들을 유지했고 효과적인 피해자지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평가는 다양한 모순성을 발견했고 다양한 규정들이 실무에서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무는 부분적으로 법률규정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수많은 항목에서 효과적 피해자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가적 피해자지원과 피해에 책임 있는 사람 내지 보험회사의 활동, 사회보장, 후견재판소의 과제, 배려와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보충성). 연방은 Kanton에 의해 보완되는 최소한의 규정만을 공포한다는 지금까지의 컨셉은 어느 관점에서든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차이점으로 이어졌다. 피해자지원에 참여하는 Kanton들은 최소한의 활동을 충족하는 Kanton들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고 부담상환을 요구한다. 피해자지원의 다양한 수단들은 서로 합의되어야 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이중지원은 제거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역할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들에서 피해자지원법의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

17.2. 개정 목표

개정의 주된 목표는 국가적 피해자지원의 3가지 기본과제를(자문, 재정지원, 형사절차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지위 규정) 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규율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누가 언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법률과 현실은 일치되어야 한다.

17. 연방법무부의 시각

계속되는 목표는 원상회복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변화 때문에 증가한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차단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재정적 피해자지원 - 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특히 상황을 위해 규정된, 수입과 상관없는, 금액에 적합한 무제한적인 원상회복을 규율한 현재의 실무는 이런 위탁을 뛰어넘고 그 때문에 예견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부적합한 비용으로 이어진다.

17.3. 중요한 개정항목들

이런 기본적 사고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피해자의 정보
- 자문기구들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지원과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의 수정
- 재정 활동과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 피해자지원법 16조 3항에 따른 2년간의 공소시효의 수정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의 수정
- 자문기구들의 조직과 과제

18. 진행과정

피해자지원법은 포괄적·개별적 공통의 피해자지원을 준비하고자 한다. 그 때문에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고 피해자지원의 3가지 축의 전문가 외에 경제 또는 연계 영역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게다가 피해자지원 당사자의 다양한 관점들을 수용하는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연방정부가 이 보고에 대해 알게 된 후, 연방법무부는 법무부서와 경찰부서에 전문가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것이다.

전문가위원회는 초안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위탁을 받는다 고 한다. 초안에는 잠정적으로 2002년에 의사표명절차가 시행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통지에 대한 가결과 의회의 자문 이후 개정된 피해자 지원법과 이에 상응한 적합한 명령이 2005년에 효력을 발할 것이다.

*스위스 각 칸톤의 공인 피해자지원 자문기관 주소록 (자문기관 목록)

칸 톤	명칭과 주소	전화 및 팩스
AG	Opferhilfe Aargau Postfach 5001 Aarau	062 837 50 60 Fax 837 50 61
AI	Beratungsstelle Opferhilfe der Stiftung für Opfer stafbarer Handlungen Oberer Graben 3, 9000 St.Gallen Tag und Nacht Soforthilfe für vergewaltigte Frauen und Jugendliche, Dienst der Frauen- klinik am Kantonspital St.Gallen und der Beratungsstelle Opferhilfe St.Gallen	071 223 48 77 Fax 223 56 01 079 698 95 02
AR	Beratungsstelle Opferhilfe der Stiftung für Opfer stafbarer Handlungen Oberer Graben 3, 9000 St.Gallen Tag und Nacht Soforthilfe für vergewaltigte Frauen und Jugendliche, Dienst der Frauen- klinik am Kantonspital St.Gallen und der Beratungsstelle Opferhilfe St.Gallen	071 223 48 77 Fax 223 56 01 079 698 95 02

18. 진행과정

BL/BS	<p><u>Allgemeine Beratungsstelle(일반자문 기구)</u></p> <p>Beratungsstelle Opferhilfe bei der Basel Schwarzwaldalle 171 4058 Basel (업무시간 외에는 전화번호가 143으로 돌아감) E-Mail : bobb@netsurfer.ch</p>	<p>061 693 44 40 Fax 693 44 34</p>
	<p><u>Beratungsstelle für Frauen(여성 자문기구)</u></p> <p>Nottelefon(긴급전화) Beratungsstelle und Opferhilfe für gewalt- betroffene Kinder und Jugendliche Grenzacherstrasse 34 4058 Basel</p>	<p>061 692 91 11 Fax 692 91 15</p>
	<p><u>Beratungsstelle für Kinder und Jugendliche</u> (아동과 청소년 자문기구)</p> <p>Triangel Opferhilfe-Beratungsstelle bei der Basel für gewaltbetroffene Kinder und Jugendliche Grenzacherstrasse 34 4058 Basel</p>	<p>061 683 31 45 Fax 683 31 45</p>
BE	<p>Fürsorge des Kantons Bern Koordinationsstelle Opferhilfe Rathausgasse 1, 3011 Bern</p>	<p>031 633 78 29 Fax 633 78 92</p>
	<p>Beratungsstelle Opferhilfe Eigerplatz 5, 3007 Bern</p>	<p>031 372 30 35 Fax 372 30 39</p>
	<p>Service d'aide aux victims Rue Rechberger 2 2502 Bienne</p>	<p>032 322 56 33 Fax 323 83 03</p>
	<p>Beratungsstelle für vergewaltigte Frauen und Mädchen Rodtmattstrasse 45, 3014 Bern</p>	<p>031 332 14 14 Fax 333 34 04</p>
	<p>Frauenhaus Bern Postfach 297, 3000 Bern 7</p>	<p>031 332 55 33 Fax 332 55 72</p>
	<p>Frauenhaus Biel/Solidarité Femmes Postfach/C.P. 84 Bahnhofstrasse/Rue de la Gere 36 2501 Biel/Bienne</p>	<p>032 322 03 44 Fax 322 56 25</p>
	<p>Frauenhaus und Beratungsstelle Thun/Berner Oberland Scheibenstrasse 3 3600 Thun</p>	<p>Frauenhaus 033 221 47 47 Fax 221 47 48 Beratungsstelle 033 223 07 90 Fax 223 07 91</p>
<p>Die Dargebotene Hand</p>	<p>143</p>	

	Postfach 585, 3000 Bern 9 Die Dargebotene Hand Nordwest La Main Tendue du Nord-Ouest Postf./C.p. 500, 2501 Biel/Bienne	143
FR	Le Centre de consultation LAVI pour homme Avenue du Général Guisan 56 1700 Fribourg Le centre de consultation LAVI pour femmes Came postale 807 1701 Fribourg Le Centre de consultation LAVI pour enfants et adolescents Boulevard de Pérolles 30 1700 Fribourg	026 465 20 24 Fax 466 47 88 026 322 22 02 Fax 323 25 06 026 347 27 57 Fax 347 27 38
GE	Centre de consultation LAVI 40, rue du Stand, 1204 Genève	022 320 01 02 022 320 02 48
GL	Opferhilfeberatungsstelle des Kantons Glarus Kantonaler Sozialdienst Winkelstrasse 22 8750 Glarus	055 646 66 28 055 646 66 96
GR	Opferhilfe-Beratungsstelle Rohanstrasse 5 7000 Chur E-Mail : franz.buetler@soa.gr.ch Opferhilfe-Beratungsstelle A l'En 7503 Samedan E-Mail : andrea.methis@soa.gr.ch	081 257 30 30 Fax 257 21 83 081 852 51 41 Fax 851 07 33
JU	Service social régional du district de Délemont Rue de la Préfecture 7 2800 Delémont Service social régional d'Ajoie et du Clos-du-Doubs Rue Pierre Péquignat 22 2900 Porrentruy Service social et médico-social des Fraeches-Montagnes Rue de la Côte 1a 2350 Le Noirmont Coordination : Service cantonal de l'aide sociale Faubourg des Capucins 20 2800 Delémont	032 422 67 77 Fax 422 67 87 032 466 80 40 Fax 466 32 72 032 953 17 66 032 953 17 67 Fax 953 18 61 032 420 51 40 Fax 420 51 41

18. 진행과정

<p>LU</p>	<p>Opferberatungsstelle des Kantons Luzern Verein SoBZ Habsburgstrasse 22 6003 Luzern</p> <p>Frauzentrale Luzern Opferberatungsstelle des Kantons Luzern für Frauen und weibliche Jugendliche Habsburgstrasse 22 6003 Luzern</p> <p>VIVA Opferberatungsstelle des Kantons Luzern für sexuell ausgebeutete Kinder und Jugendliche Habsburgstrasse 22 6003 Luzern</p>	<p>041 227 40 60 Fax 210 45 64</p> <p>041 211 00 20 Fax 211 00 33</p> <p>041 211 00 15 Fax 211 00 16</p>
<p>NE</p>	<p><u>Coordination, direction du centre de consultation LAVI, Office de Liaison :</u></p> <p>Fondation neuchâtoise pour la coordination de l'action sociale F.A.S Rue du Parc 53 Case postale 2163 2302 La Chaux-de-Fonds E-Mail : FAS@ne.ch</p> <p><u>Centre de consultation LAVI(généraliste)</u></p> <p>Centre de consultation LAVI Service d'aide aux vitimes Rue J.-L. Pourtalés 1 case postale 527 2001 Neuchâtel E-Mail : LAVI.Neuchatel@ne.ch</p> <p>Centre de consultation LAVI Service d'aide aux vitimes Avenue Léopold Robert 90 case postale 293 2301 La Chaux-de-Fonds E-Mail : LAVI.VCH@ne.ch</p> <p><u>Permanence:</u></p> <p>La Main Tendue C.P.500 2501 Bienne</p>	<p>032 919 75 17 Fax 919 65 16</p> <p>032 889 66 49 Fax 889 66 51</p> <p>032 919 66 52 Fax 919 66 53</p> <p>143</p>
<p>NW</p>	<p>Kantonaler Rechtsdienst Nidwalden Postfach 1261 6061 Stans</p>	<p>041 618 72 63</p>
<p>OW</p>	<p>Kantonaler Sozialamt Obwalden Postfach 1261 6061 Stans</p>	

<p>SG</p>	<p>Beratungsstelle Opferhilfe der Stiftung für Opfer strafbarer Handlungen Oberer Graben 3 9000 St. Gallen</p> <p>Tag und Nacht Soforthilfe für vergewaltigte Frauen und Jugendliche, Dienst der Frauenklinik am Kantonsspital St. Gallen und der Beratungsstelle Opferhilfe St. Gallen</p>	<p>071 223 48 77 Fax 223 56 01</p> <p>079 698 95 02</p>
<p>SH</p>	<p><u>Für Frauen(여성 전용):</u> Frauenhaus Schaffenhäusen Postfach 1614 8201 Schaffenhäusen Kein E-Mail (24시간 서비스제공)</p> <p><u>Für Männer(남성 전용):</u> Sozialdienst der Stadt Schaffenhäusen Oberstadt 23 8200 Schaffenhäusen E-Mail: martin.amman@stsh.ch</p> <p><u>Für Kinder(아동 전용):</u> Kinder- und Jugendpsychiatrischer Dienst Promenadenstrasse 21 8200 Schaffenhäusen E-Mail: kjpd@schaffenhäusen.ch</p>	<p>052 624 99 00 Fax 625 60 68</p> <p>052 625 92 59 Fax 632 15 13</p> <p>052 624 99 00 Fax 625 34 62</p>
<p>SO</p>	<p>Koordinationsstelle Opferhilfe Departement des Innern Wenigstrasse 17 4500 Solothurn</p> <p>Beratungsstelle für Sexualitäts-, Ehe- und Lebensfragen Bettlachstrasse 8 2540 Grenchen</p> <p>Beratungsstelle für Sexualitäts-, Ehe- und Lebensfragen Bielstrasse 12 4500 Solothurn</p> <p>Beratungsstelle bei Sexualitäts-, Ehe- und Lebensfragen Hammerallee 19 4600 Olten</p> <p>Beratungsstelle bei Sexualitäts-, Ehe- und Lebensfragen Friedhofstrasse 2, 4226 Breitenbach</p> <p>Dargobotene Hand Postfach 2645 5001 Aarau</p> <p>Telehilfe Basel Beratungsstelle Opferhilfe beider Basel Schwarzwaldallee 171</p>	<p>031 627 22 80 Fax 627 22 95</p> <p>032 652 19 22</p> <p>032 622 44 33</p> <p>062 212 61 61</p> <p>061 781 34 49</p> <p>056/062/064/067 143</p> <p>143</p>

18. 진행과정

SZ	<p><u>Beratungen und Büroadresse im inneren Kantonsteil(칸톤 내의 자문기구 주소) :</u> Gotthardstrasse 61a 6410 Goldau</p>	<p>0848 821 282 Fax 041 857 07 43</p>
	<p><u>Beratungen im äusseren Kantonsteil (칸톤 외부 자문기구):</u> Gwattstrasse 1 8808 Pfäffikon</p> <p>Montag(월) ~ Freitag(금) : 09:00-11:30 Montag(월) ~ Donnerstag(목) : 14:00-16:30 E-Mail : opferhilfes@datacomm.ch</p>	<p>0848 821 282 Fax 041 857 07 43</p>
TG	<p>Beratungsstelle Opferhilfe Begegnungszentrum Gublerhaus Frauenfelderstrassen 37 8570 Weinfelden</p>	<p>071 626 58 46 Fax 626 58 49</p>
	<p>Beratungsstelle für Frauen bei Kindersmisshandlung Frauenfeldstrasse 37 8570 Weinfelden</p>	<p>071 626 58 44</p>
TI	<p>Unità di intervento regionale (UIR) del Bellinzone e Valli Viale Stazione 21 6500 Bellinzona</p>	<p>091 814 31 73 Fax 825 01 08</p>
	<p>Unità di intervento regionale (UIR) del Locarnese Via Antonio Ciseri 5 6600 Locarno</p>	<p>091 751 19 31 Fax 752 35 58</p>
	<p>Unità di intervento regionale (UIR) del Luganese Via Rinaldo Simen 10 6904 Lugano</p>	<p>091 922 61 43 Fax 922 62 27</p>
	<p>Unità di intervento regionale (UIR) del Mendrisiotto Via Giorgio Bernasconi 16 6850 Mendrisio</p>	<p>091 646 90 60 Fax 646 90 62</p>
UR	<p>Verein Ehr-, Familien- und Lebensberatung Uri Opferhilfe Beratungsstelle URI Frau Annelies Aschwanden Studen 10 6462 Seedorf</p>	<p>041 21 20</p>
VD	<p>Centre LAVI Aide de conseil aux victims d'infractions 2, place Bel-Air 1003 Lausanne</p>	<p>021 320 32 00 021 320 32 23</p>

VS	Commission cantonale d'aide aux victims d'infractions Av. de la Gare 21 1950 Sion 희생자지원관련 모든 문제는 칸톤 차원에서 협조와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027 323 88 85 Fax 323 88 86
	Centre consultation LAVI Avenue de la Gare 21 1950 Sion	027 323 15 14
	Centre consultation LAVI Avenue de France 6 1870 Monthey	024 472 45 67
	OHG-Beratungsstelle Visp St. Martiniplatz 1 3930 Visp	027 946 85 32
ZG	Opferberatung der Frauenzentrale des Kantons Zug Tirolerweg 8 6300 Zug	041 725 26 50 Fax 725 26 41
	Fachstelle für Suchtfragen und Prävention Aegeristrasse 56 6300 Zug	041 728 39 39
	triangel Beratungsstelle der evag.ref Kirchgemeinde des Kantons Zug Gotthardstrass 14 6300 Zug	041 728 80 75
ZH	<u>Allgemeine Beratungsstelle(일반자문기구)</u> Opferhilfe-Beratungsstelle der Dargebotenen Hand Härigstrasse 20 Postfach 124 8025 Zürich 긴급 사태인 경우만 143번으로 통화.	01 251 82 00

18. 진행과정

	<p><u>Beratungsstelle für Kinder und Jugendliche</u>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문기구) CASTAGNA Universitätsstrasse 86 8006 Zürich</p> <p>SCHLUPFHUUS Schönbühlstrasse 8 8032 Zürich</p> <p>Kinderschutzgruppe des Kinderspitals Zürich Steinwiestrasse 75 8032 Zürich</p> <p>Fachstelle für Kinderschutz und Opferhilfeberatung, Winterthur Zeughausstrasse 76 8402 Winterthur</p> <p><u>Beratungsstelle für Mädchen und Junge Frau</u> (청소년기의 여성과 젊은 여성을 위한 자문기구) Beratungsstelle des Mädchenhauses Zürich Quellenstrasse 25 8005 Zürich</p> <p><u>Beratungsstelle für weibliche Opfer von Sexualdelikten(성관련 불법행 위에 의한 여성 피해자를 위한 자문기구)</u></p> <p>Nottelefon und Beratungsstelle für Frauen - gegen sexuelle Gewalt, Zürich Postfach 8760 8036 Zürich</p> <p>Frauen-Nottelefon, Beratungsstelle gegen sexuelle Gewalt Technikumstrasse 38 Postfach 2036 8401 Winterthur</p>	<p>01 364 49 49</p> <p>01 251 06 11 Help-O-fon: 157 00 57 Sorgentelefon: 01 261 21 21</p> <p>01 266 76 46 Fax 266 71 71 01 444 86 85 (24 시간 연결)</p> <p>052 267 63 62 077 72 55 40 (24 시간 연결)</p> <p>01 341 49 45 (24 시간 연결)</p> <p>01 291 46 46</p> <p>052 213 61 61 Fax 213 61 63</p>
--	--	--

18. 진행과정

	<p>Beratungsstelle für männliche Opfer(남성피해자를 위한 자문기구)</p> <p>Beratungsstelle für gewaltbetroffen Jungen und Männer Hallwyrstrasse 78 8004 Zürich</p>	<p>01 291 23 80</p>
	<p>Beratungsstelle für Strassenverkehrsoffer(교통사고피해자를 위한 자문기구)</p> <p>Opferhilfe vfs Baumackerstrasse 53 8050 Zürich</p>	<p>01 310 13 13 Fax 310 13 12</p>